

주요국의 통관제도

— 미국 편 —

2014. 9

연구자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김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서 언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FTA의 확대로 무역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역과 관련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절차가 원활한 교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관과정에 있어 국가별 차이는 실제 교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한 것에 비해 수출 상대국가의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의 문제를 메우기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가였으며 최근 중국 및 유럽과의 교역 확대로 순위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교역량이 많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다. 세계경제환경과 국제교역체제가 변화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는 항상 수많은 현안들이 존재해 왔으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경제적 측면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경제개관이나 통관행정조직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시작으로 관세법률, 관세율, 관세감면 및 환급 절차, 수출입요건, 미국의 AEO제도인 C-TPAT, 자유무역지역(FTZ) 등 통관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수출입통관절차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미국의 통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 간 무역 원활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활용 가치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와 원내 김수영, 이민선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원내 정재호 박사와

이상엽 박사, 그리고 원내 세미나 및 마무리 단계에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관세청 국제협력팀에 감사하고 있
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
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목 차

제1편 개 관	17
I. 일반 개황	17
II. 경제 개황	19
1. 주요 경제지표	19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 규모	23
3. 외국인 투자동향	29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33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37
1.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37
가. 주요 자유무역협정	38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42
2. 추진 중인 지역무역협정	44
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44
나.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46

제2편 통관제도	49
I. 통관행정 조직	49
1. 정부조직 개관	49
2. 통관행정 관련 조직	51
가. 국토안보부(DHS)	51
나. 관세국경보호청(CBP)	53
3. 통관관련 법률	56
II.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61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61
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	62
나. 동일 물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64
다. 공제가격(제4방법)	65
라. 산정가격(제5방법)	65
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제6방법)	66
2.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67
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67
나. 수수료	67
III. 관세율 제도	69
1. HS 품목분류 체계	69
2. 관세율 체계	70
가. 관세율 수준	70
나. 관세율의 적용	73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83

IV. 감면과 환급	87
1. 관세감면제도	87
가. 일시담보수입면세(TIB)	88
나. 감면 대상 물품(제98류)	89
다. 일시 세율 변경 물품(제99류)	90
라. 일시적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법안(MTB)	91
마. 일시수입 통관증서(A.T.A. Carnet)	92
2. 관세환급(Drawback) 제도	94
가. 관세환급의 형태	94
나. 관세환급 절차	96
V. 수출입 요건과 승인	100
1. 개요	100
2. 수출입규제제도	102
가. 수출입금지	102
나.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	103
다. 기타	115
3. 원산지 및 품질표시제도	116
가. 원산지 표시제도	116
나. 품질표시(인증)제도	120
VI. 기타	125
1. C-TPAT	125
가. 개요	125
나. 공인대상 및 방법	126
다. 공인 혜택	127
2.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s)	128
3.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s)	131

가. 개요	131
나. FTZ의 종류	132
다. FTZ의 설치	133
라. FTZ의 물품 취급	134
마. FTZ의 관리·감독	134
바. FTZ의 장점	135
4. 관세당국의 제재 사항	135
가. 개요	135
나.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ies)	136
다. 물품 압수/ 몰수(Forfeiture)	137
라.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138
마. 기타	139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140
I. 수입 통관 절차	140
1. 개요	140
가. 통관항(Ports of Entry)	141
나. 수입 통관의 종류	142
다. 수입 통관절차의 특례	143
2. 신고인	146
가. 수입자에 의한 신고	146
나. 기타 당사자에 의한 신고	146
다. 위임장	147
3. 수입통관절차	149
가. 미국 수입통관절차의 특징	149
나. 수입통관절차	150
4.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162

가. 수입신고(Entry) 서류	163
나. 납세신고(Entry Summery) 서류	168
다. 서류 보관(Record Keeping)	170
5. 세관의 심사 및 검사	170
6. 통관 경비	172
7. 기타	173
가. 보세운송	173
나. 미통관 물품(Unentered Goods)	175
다. 이의신청	175
라. 한-미 FTA 원산지검증	178
II. 수출 통관 절차	181
1. 개요	181
2.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	182
3. 수출신고인	185
가. 수출자(USPPI: U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185
나. 수출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185
다. 외국의 수입자(FPPI: Foreign Principal Party in Interest)로부터 위임받은 미국 대리인	186
4. 수출통관절차	186
가. 수출신고 대상 화물 및 신고가격	186
나. 수출신고방법	187
다. 수출신고방식	187
라. 운송인의 적하목록 제출	189
5. 수출에 필요한 서류	189
가. 공통 수출 서류	190
나. 운송 서류	191
다. 수출규제 준수서류	191

라.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s of Origin)	192
마. 기타 관련 증명서류	192
6. 미국의 수출통제 (Export Control)	193
가. 개요	193
나. 부처별 수출규제	194
다. 미국 수출관리규정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97
라. 수출허가 신청	200
마. 수출통제시스템 (Export Control System)	203
바.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동향	203
 참고문헌	 205
 부록	 208

표 목차

제1편

<표 1-Ⅱ-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추이: GDP	19
<표 1-Ⅱ-2> 미국 GDP 대비 산업별 비중	20
<표 1-Ⅱ-3> 미국의 대내 경제 추이	21
<표 1-Ⅱ-4>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22
<표 1-Ⅱ-5> 미국 금융 산업의 규모 및 비중	22
<표 1-Ⅱ-6> 미국의 교역 추이	24
<표 1-Ⅱ-7> 미국의 상위 10위권 교역국 및 교역 규모	25
<표 1-Ⅱ-8> 미국의 수출 교역 상위 20개국 및 수출 현황	26
<표 1-Ⅱ-9> 미국의 수입 교역 상위 20개국 및 수입 현황	27
<표 1-Ⅱ-10> 미국의 품목별 수출	28
<표 1-Ⅱ-11> 미국의 품목별 수입	29
<표 1-Ⅱ-12> 미국 내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30
<표 1-Ⅲ-1>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33
<표 1-Ⅲ-2>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출 품목	34
<표 1-Ⅲ-3>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입 품목	35
<표 1-Ⅲ-4> 한-미 산업별 수출입 현황	36
<표 1-Ⅳ-1> 미국의 FTA 체결 현황	38
<표 1-Ⅳ-2> 한미 FTA에 따른 상품관세철폐 계획	43
<표 1-Ⅳ-3> TPP 협상 분야	44
<표 1-Ⅳ-4> TTIP 협상 안건	47

제2편

<표 2-I-1> 미국 U.S.Code Title 19 수록법령	56
<표 2-I-2>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의 구성	58
<표 2-I-3> 미국 C.F.R Title 19의 구성	59
<표 2-II-1> 거래가격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63
<표 2-III-1> 미국의 MFN 세율 및 협정세율 분석(2012년)	71
<표 2-III-2> 품목군별 관세율 및 수입	72
<표 2-III-3> 미국의 관세율 분포(2013년 기준)	73
<표 2-III-4> 특별 관세율(Special Rate of Duty)종류	75
<표 2-III-5> GSP 혜택 국가	77
<표 2-III-6>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현황	85
<표 2-IV-1> TIB 대상 물품(HTSUS 9813)	89
<표 2-V-1> 미국 수입규제 품목 일람표	103
<표 2-V-2> 미국 수입규제 품목별 관련기관 및 근거법령	114
<표 2-VI-1> 벌금부과의 사유 및 금액	136
<표 2-VI-2> 손해배상의 사유	138

제3편

<표 3-I-1> 2,500달러 한도 적용 예외물품	144
<표 3-I-2> 운송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151
<표 3-I-3> 10+2 Rule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152
<표 3-I-4> 즉시반출 대상 물품	153
<표 3-I-5> 상당주의 의무 체크리스트(Reasonable Care Checklist)	154

<표 3-I-6> 검사 항목	155
<표 3-I-7> 미국의 통관 절차	162
<표 3-I-8> 미국의 상업송장에 기입해야 할 항목	166
<표 3-I-9> 수입검사팀 운영현황	172
<표 3-I-10> 보세운송의 종류	173
<표 3-II-1> EAR 조항 및 내용	199
<부표 1> 미국 관세청 지역 사무소 및 통관항 코드	208
<부표 2> 미국의 관세 규정 목차	215
<부표 3> 해외 CBP 사무소	219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미국 개관	18
[그림 1-II-1]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0
[그림 1-II-2]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8개국 현황	31
[그림 1-II-3] 미국 내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32

제2편

[그림 2-I-1] 미국의 중앙 행정부처	50
[그림 2-I-2] 미국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52
[그림 2-I-3] 미국 CBP 조직도	55
[그림 2-III-1] 미국의 관세율표(예시)	74
[그림 2-IV-1] A.T.A.Carnet 서식	93
[그림 2-IV-2] 환급 신청서(CBP Form 7551)	98
[그림 2-IV-3] 제조 및 인수 증명서(CBP Form 7552)	99
[그림 2-V-1] 미국 수입 관련 몰수 현황	101
[그림 2-VI-1] 사전심사 결정서신 예	129
[그림 2-VI-2] 미국 Cross-Ruling 사이트	130
[그림 2-VI-3] 미국 FTZ의 재수출액	132

제3편

[그림 3-I-1] 위임장 기본 양식	148
[그림 3-I-2] 위임장 양식(CBP Form 5297)	148
[그림 3-I-3]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흐름	150
[그림 3-I-4] 검사 절차	156
[그림 3-I-5] 통관본드(CBP Form 301)	160
[그림 3-I-6] 수입적하목록(CBP Form 7533)	164
[그림 3-I-7] 화물반입신고 및 반출허가신청서(CBP Form 3461)	165
[그림 3-I-8]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169
[그림 3-I-9] CBP Form 7512(Transportation Entry and Manifest of Goods Subject to CBP Inspection and Permit)	174
[그림 3-I-10] 이의신청서(CBP Form 19)	177
[그림 3-I-11]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180
[그림 3-II-1] AESDirect	184
[그림 3-II-2] BIS-711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202

제1편 개 관

I. 일반 개황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로서, 총면적은 약 9,826,675km²으로 한반도의 40배가 넘으며,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 째로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다. 본토는 수도구인 워싱턴 D.C와 50개 주(州)로 이루어져 있으며, 푸에르토리코, 괌섬, 사모아 제도 등 해외 속령을 두고 있다. 총인구는 2011년 현재 3억 1,385만명으로 1위 중국, 2위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아메리칸 인디언(원주민)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이민국이다.

미국은 US달러(USD)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편이지만 국민의 50% 이상이 개신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에 카톨릭, 유대교, 몰몬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연방공화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은 임기 4년에서 중임이 가능하며 현재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이다.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상원은 50개의 주에서 각각 두 명씩 선발되고 하원은 인구에 비례하여 총 450여 명이 선출된다.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GDP 규모 세계 1위의 최대 경제권인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 분야와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등에 있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광역적인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무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부존 자원이 풍부하며 각종 기술 및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경제적인 강점이 있으나, 반면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소 크다는 점이 경제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1-1-1] 미국 개관

	일반	위치	북아메리카,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
		면적	9,826,675km ²
		수도	워싱턴 D.C
		인구	3억 1385만명 (2012년)
		인구밀도	34명/km ² (2012년)
		민족	백인(79.96%), 흑인(12.85%), 아시아인(4.43%), 인디언 및 알래스카인(0.97%), 하와이 원주(0.18%), 다민족(1.61%)
		언어	영어
		종교	개신교(51.3%), 가톨릭교(23.9%), 불문교(1.7%), 기타 기독교(1.6%), 유대교(1.7%), 불교(0.7%), 이슬람교(0.6%), 기타(18.5%)
	정치	건국일	1776년 7월 4일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국가원수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의회	상하원 양원제
	경제	화폐단위	US달러(USD)
		1인당 GDP	51,704달러(2012년)
		산업구조	서비스업(79.7%), 제조업(19.2%), 농업(1.1%) (2012년)
수출규모		15,612억달러(2012년)	
수입규모		23,027억달러(2012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국가개황, 두산백과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지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는 명목 GDP와 실질 GDP 모두 2008년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7월에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2.6% 감소되었다가 2010년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2012년 15조 6천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1위, 1인당 GDP는 세계 10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GDP 증가율은 2010년 이후 2%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표 1-II-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추이: GDP

(단위: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명목GDP	142,915억	139,389억	145,265억	150,940억	156,096억
실질GDP (증가율)	131,619억 (-0.3)	127,031억 (-3.5)	130,879억 (3.0)	133,150억 (1.7)	135,957억 (2.1)
1인당 GDP	48,308	46,907	48,294	49,797	51,703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www.imf.org)

2013년 미국 GDP(Value Added 기준) 대비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산업 구조는 농업·광업 등의 1차 산업 및 건설업·제조업 등 2차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며,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DP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0%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부 부문 비중은 13.0%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따라 정부 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¹⁾

〈표 1-11-2〉 미국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민간 부문	86.4	85.7	85.7	86.1	86.5	87.0
농업, 어업, 수렵	1.1	1.0	1.1	1.3	1.2	1.6
광업	2.7	2.0	2.2	2.6	2.6	2.7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	1.6	1.8	1.8	1.8	1.7	1.7
건설	4.4	4.0	3.6	3.5	3.6	3.6
제조업	12.3	11.9	12.2	12.4	12.5	12.4
도매업	6.0	5.7	5.8	5.9	5.9	5.9
소매업	5.8	5.9	5.8	5.8	5.7	5.7
운송, 물류 유통	2.9	2.8	2.9	2.9	2.9	2.9
정보	4.9	4.9	4.8	4.8	4.8	4.8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19.1	19.9	19.7	19.4	19.5	19.6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11.9	11.5	11.5	11.7	11.9	11.9
교육, 헬스 케어, 사회 복지	7.8	8.4	8.3	8.3	8.2	8.3
예술, 공연, 음식, 숙박	3.6	3.6	3.6	3.6	3.7	3.7
기타 서비스	2.3	2.3	2.2	2.2	2.2	2.1
공공 부문	13.6	14.3	14.3	13.9	13.5	13.0

자료: KOTRA,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매년 0.2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 국채 수익률(long-term interest rate on government bond)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 KOTRA, 미국 국가정보, 주요산업동향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하락했던 주가지수는 2008년 이후부터는 꾸준한 회복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는 2009년 감소 후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다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어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9%대까지 급증했던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8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²⁾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생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의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생산 역시 점차 금융위기로부터 점차 회복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11-3〉 미국의 대내 경제 추이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 Rate)	0.25	0.25	0.25	0.25	0.25	-
장기 국채 수익률	3.67	3.26	3.21	2.79	1.80	2.35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2	-0.32	1.64	3.14	2.07	1.39
주가지수(다우존스지수)	8,776.4	10,428.1	11,577.5	12,217.6	13,104.1	-
산업생산지수(2010년=100)	106.7	94.6	100.0	103.3	107.2	110.3
실업률	5.8	9.3	9.6	8.9	8.1	7.6 ¹⁾

주: 1) IMF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IMF, OECD

미국의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관찰해 보면, 금융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이 2010년부터 회복되어 2~3%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미국의 201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9 성장의 부진을 보였으나, 부진의 원인이 2014년 초 미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 등 기상 악화

2) 경제활동 참가율: 66.0%(2007년 12월), 62.8%(2014년 5월), 고용률: 62.7%(2007년 12월), 58.9%(2014년 5월)

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설비투자, 생산활동, 주택건설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위축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마저 부진을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³⁾ 따라서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2014년 미국 경제가 2013년도 1.9%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1-4〉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
성장률	-2.8	2.5	1.8	2.8	1.9	-2.9

주: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자료: KOTRA 미국 국가정보

미국은 영국과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다. 미국의 금융 산업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기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다.⁴⁾

2013년 기준 미국의 금융 산업 규모는 1조 1,146억달러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이며, 미국 GDP에서 금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6.6%에 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미국 금융 산업은 2009년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 1-11-5〉 미국 금융 산업의 규모 및 비중

(단위: 억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규모 ¹⁾	10,407	9,090	9,708	10,046	10,116	10,782	11,146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7.2	6.2	6.7	6.7	6.5	6.6	6.6

주: 1) Finance and Insurance 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작성
자료: KOTRA 미국 국가정보 주요산업동향

3) KOTRA 미국 국가정보 경제동향 및 전망

4) KOTRA 미국 국가정보 주요산업동향

미국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 컴퓨터 산업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의 중심 국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컴퓨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기술 표준화 및 모듈화에 따라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천하면서 미국의 컴퓨터 산업의 직접 생산 활동은 축소되고 생산 기지를 중국,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해 OEM, ODM 방식의 아웃소싱과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기업을 이용한 외주 생산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지식과 자본 집약적 첨단 기술 산업으로, 미국 산업의 핵심 경쟁 우위 산업으로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미국 소비가전, 통신장비, 컴퓨터 등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GPS 장치나 실내 환경조절장치 등 신기술 도입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소비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공급국인 동시에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산업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산업 분야이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와 전력 기술을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고, 두 번째로 큰 석탄 생산국이며, 대부분의 천연가스 수요를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양의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이며 현재 104개의 원자로에서 미국 전력의 2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 규모

2012년 기준 미국의 총교역 규모는 3조 8,646억달러로, 그 중 수출은 1조 5,619억 달러, 수입은 2조 3천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수출 규모보다 수입 규모가 더 큰 관계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1-6〉 미국의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무역	수출 (증가율)	13,088 (12.3)	10,703 (-18.2)	12,892 (19.4)	14,964 (16.1)	15,619 (4.4)
	수입 (증가율)	21,513 (7.8)	15,800 (-26.2)	19,390 (22.7)	22,340 (15.5)	23,027 (2.8)
	상품수지	-8,425	-5,097	-6,498	-7,376	-7,408
경상수지		-6,770	-3,770	-4,710	-4,730	-

자료: World Bank

무역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이며, 교역 규모 3위인 멕시코와의 교역액은 4위인 일본의 교역액과 2배 이상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미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와 활발한 교역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상위 교역 상대 국가와 미국의 교역 규모는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의 제6위의 교역상대국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까지 6위 교역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표 1-11-7〉 미국의 상위 10위권 교역국 및 교역 규모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1	캐나다	597,166	616,476	632,323
2	중국	503,365	536,063	562,450
3	멕시코	460,943	493,451	506,609
4	일본	194,614	216,347	203,679
5	독일	147,835	157,505	162,086
6	대한민국	100,061	101,180	103,783
7	영국	107,128	109,813	99,973
8	프랑스	67,851	72,556	77,287
9	브라질	74,675	75,929	71,669
10	사우디아라비아	61,303	73,639	70,788

주: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순위임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미 상무부(www.trade.gov)

최근 3년간 미국이 수출 및 수입 교역을 하고 있는 주요 상위 20개국과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로 가장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캐나다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그 부분품(87류), 전기기기·기계류와 부분품(84·85류), 석유 및 관련 생산품(27류) 등이었다.

수입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크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전기기기·기계류와 부분품(84·85류), 가구와 조명기구(94류), 완구와 운동용구(95류), 신발(64류)과 의류(61·62류)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브라질 등 일부 주요 교역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상위 교역국가, 즉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과의 교역에 있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11-8〉 미국의 수출 교역 상위 20개국 및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¹⁾	국가(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²⁾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캐나다	281,292	12.9	292,540	4.0	300,245	2.6
2	멕시코	198,069	21.0	215,931	9.0	226,153	4.7
3	중국	103,986	13.1	110,484	6.2	122,016	10.4
4	일본	65,686	8.6	69,955	6.5	65,145	-6.9
5	독일	49,147	2.1	48,797	-0.7	47,442	-2.8
6	영국	55,866	15.4	54,851	-1.8	47,355	-13.7
7	브라질	42,938	21.2	43,806	2.0	44,116	0.7
8	네덜란드	42,159	21.4	40,627	-3.6	42,654	5.0
9	홍콩	36,345	36.8	37,461	3.1	42,450	13.3
10	대한민국	43,400	11.8	42,284	-2.6	41,555	-1.7
11	프랑스	27,802	3.1	30,806	10.8	31,969	3.8
12	벨기에	29,914	17.5	29,449	-1.6	31,727	7.7
13	싱가포르	31,221	7.6	30,525	-2.2	30,724	0.7
14	스위스	24,369	17.7	26,390	8.3	26,980	2.2
15	호주	27,545	26.3	31,151	13.1	26,047	-16.4
16	대만	25,885	-0.6	24,349	-5.9	25,639	5.3
17	아랍에미리트	15,900	36.3	22,546	41.8	24,607	9.1
18	인도	21,504	11.7	22,105	2.8	21,875	-1.0
19	사우디 아라비아	13,827	20.2	17,972	30.0	18,988	5.7
20	콜롬비아	14,321	18.7	16,355	14.2	18,606	13.8

주: 1) 201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순위임

2) 전년도 금액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미 상무부(www.trade.gov)

국가별로 살펴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의 수출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이나 독일, 영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 면에서 독일,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여

서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1-9〉 미국의 수입 교역 상위 20개국 및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¹⁾	국가(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²⁾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399,379	9.4	425,579	6.6	440,434	3.5
2	캐나다	315,874	13.6	323,936	2.7	332,078	2.5
3	멕시코	262,874	14.3	277,520	5.6	280,456	1.0
4	일본	128,928	6.9	146,392	13.5	138,534	-5.4
5	독일	98,688	19.7	108,708	10.2	114,644	5.5
6	대한민국	56,661	15.9	58,896	3.9	62,228	5.7
7	영국	51,262	2.9	54,962	7.2	52,618	-4.3
8	사우디 아라비아	47,476	51.1	55,667	17.3	51,800	-6.9
9	프랑스	40,049	4.4	41,750	4.2	45,318	8.5
10	인도	36,156	22.4	40,514	12.1	41,829	3.2
11	이탈리아	33,977	19.2	36,939	8.7	38,658	4.7
12	대만	41,406	15.5	38,858	-6.2	37,931	-2.4
13	베네수엘라	43,257	32.3	38,724	-10.5	31,997	-17.4
14	아일랜드	39,375	16.3	33,327	-15.4	31,582	-5.2
15	스위스	24,362	27.3	25,673	5.4	28,268	10.1
16	브라질	31,737	32.5	32,123	1.2	27,553	-14.2
17	말레이시아	25,777	-0.5	25,933	0.6	27,286	5.2
18	러시아	34,619	34.8	29,381	-15.4	26,961	-8.2
19	태국	24,832	9.4	26,108	5.1	26,169	0.2
20	베트남	17,488	17.6	20,266	15.9	24,649	21.6

주: 1) 201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순위임

2) 전년도 금액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미 상무부(www.trade.gov)

미국의 상품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8년 이후 감소되었던 수출입 금액은 2010년 이후로 회복하여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음료품과 산업 부품 및 자재(Industrial supplies and materials)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 금액이 더 크며, 민간 항공기의 경우에는 미국이 수출하는 금액이 수입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자동차와 그 부분품, 컴퓨터의 경우 수입이 수출 금액의 2배 가까이 많으며, 음식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중 특히 비(非)내구재의 경우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3배 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11-10〉 미국의 품목별 수출

(단위: 십억달러)

품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식·음료품	108.3	93.9	107.7	126.2	132.9	136.2
산업 부품 및 자재	386.9	293.5	388.6	485.3	482.4	492.1
- 내구재	128.6	96.0	125.1	143.4	140.3	136.9
- 비(非)내구재	258.3	197.6	263.4	341.8	342.1	355.1
자본재(자동차 제외)	457.7	391.5	447.8	494.2	527.5	534.6
- 민간항공기, 엔진, 부분품	74.0	74.8	71.9	80.4	94.3	105.0
- 컴퓨터, 주변장치, 부분품	43.9	37.7	43.8	48.5	49.3	48.1
- 기타	339.8	279.0	332.1	365.4	383.9	381.5
자동차, 엔진, 부분품	121.5	81.7	112.0	133.0	146.2	152.6
소비재(음식 및 자동차 제외)	161.2	149.3	164.9	174.7	181.0	188.4
- 내구재	90.6	75.3	87.4	96.9	98.7	104.0
- 비(非내)구재	70.6	74.0	77.5	77.8	82.3	84.4
기타	63.3	55.2	58.6	53.4	57.2	59.1
총계	1,298.8	1,065.1	1,279.6	1,466.9	1,527.2	1,562.8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표 1-11-11〉 미국의 품목별 수입

(단위: 십억달러)

품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식·음료품	90.4	82.9	92.5	108.3	111.1	116.0
산업 부품 및 자재 (석유와 그 제품 제외)	318.7	196.6	249.4	292.7	288.9	291.2
- 내구재	161.5	95.5	125.2	149.6	150.4	150.9
- 비(非)내구재	157.2	101.1	124.3	143.1	138.4	140.3
석유 및 그 제품	476.1	267.7	353.6	462.1	434.3	387.6
자본재(자동차 제외)	458.7	374.1	450.4	513.4	551.8	557.8
- 민간항공기, 엔진, 부분품	35.5	30.7	31.3	35.5	40.1	46.9
- 컴퓨터, 주변장치, 부분품	101.2	94.2	117.3	119.7	122.3	121.2
- 기타	322.0	249.2	301.9	358.2	389.4	389.7
자동차, 엔진, 부분품	233.2	159.2	225.6	255.2	298.5	309.6
소비재(음식 및 자동차 제외)	485.7	429.9	485.1	515.9	518.8	533.9
- 내구재	266.3	225.0	259.2	271.9	276.6	289.2
- 비(非)내구재	219.4	204.8	226.0	244.0	242.2	244.7
기타	86.5	80.0	93.1	97.1	102.6	106.1
총계	2,149.4	1,590.3	1,949.8	2,244.7	2,306.0	2,302.3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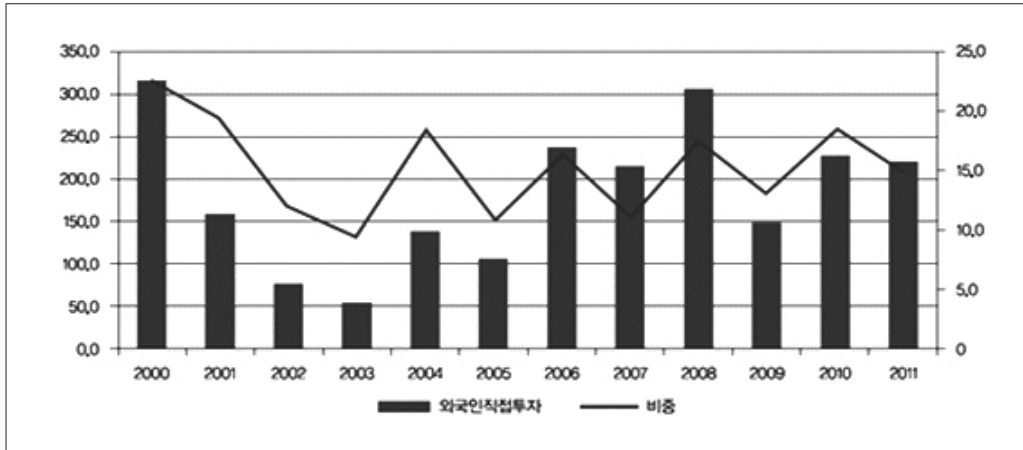
3 외국인 투자동향⁵⁾

2000년 이후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2000년대 초반 감소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FDI 총액 대비 비중과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본 절에서 나타난 그림과 표는 유혜정, 「2011년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자본시장 Weekly (2012.04)을 준용하지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저자의 의견을 활용함

[그림 1-11-1]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



주: 전 세계 FDI 총액 대비 비중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UNCTAD

미국에 대한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거대 경제권인 유럽의 투자액 비중이 높으나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에서의 투자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로 인해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투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중동의 경우 2010년 투자액 회수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투자가 증가하였다.

<표 1-11-12> 미국 내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2010	10,488 (4.6)	173,220 (75.9)	8,637 (3.8)	846 (0.4)	-234 (-0.1)	35,292 (15.5)
2011	15,809 (7.2)	142,067 (64.6)	16,305 (7.4)	2,244 (1.0)	2,777 (1.3)	40,754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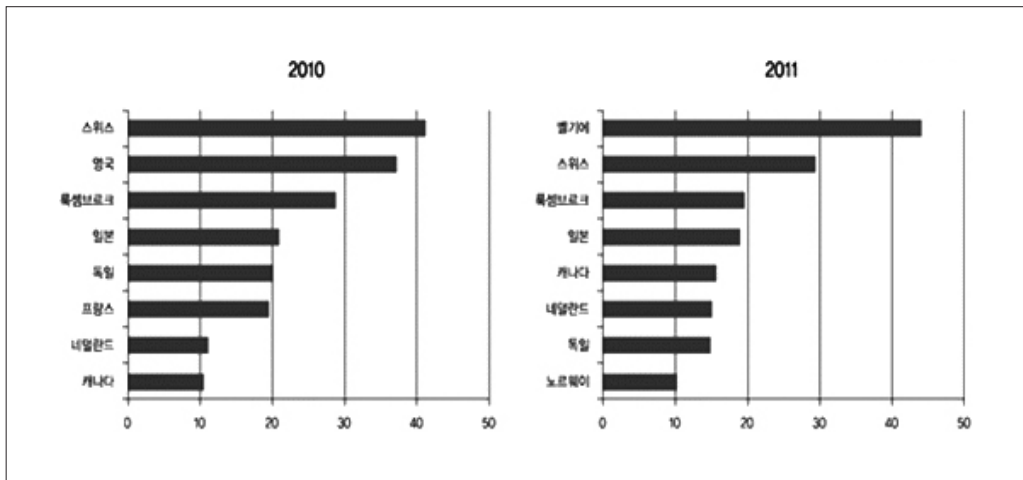
주: () 안은 비중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서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8개국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투자가 대폭 감소하여 상위 8개국에서 제외되었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독일, 일본의 투자가 감소하였다.

반면,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투자액이 증가하며 벨기에가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1위, 노르웨이가 8위 국가로 진입하였다.

[그림 1-11-2]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8개국 현황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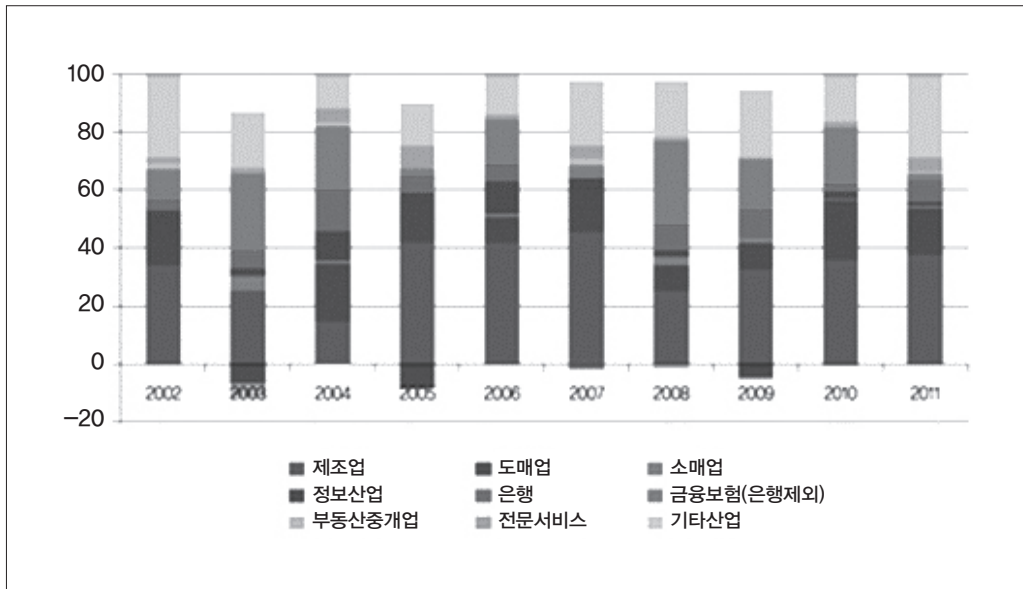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산업별로는 2011년 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상당 비중 감소(18.4% → 3.3%)하였으며, 도매업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 1-11-3] 미국 내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우리나라의 제2대 수출국인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035억달러로, 우리는 미국에 620억달러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415억달러 수입하였다.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이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수출 증가로 인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흑자의 폭이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표 1-Ⅲ-1〉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4	42,849	25.2	28,783	16	14,067
2005	41,343	-3.5	30,586	6.3	10,757
2006	43,184	4.5	33,654	10	9,529
2007	45,766	6	37,219	10.6	8,547
2008	46,377	1.3	38,365	3.1	8,012
2009	37,650	-18.8	29,039	-24.3	8,610
2010	49,816	32.3	40,403	39.1	9,413
2011	56,208	12.8	44,569	10.3	11,639
2012	58,525	4.1	43,341	-2.8	15,184
2013	62,052	6	41,512	-4.2	20,541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양국 간 교역에 있어 최근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무선 전화기, 집적회로 반도체, 승용차순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이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품목에 대해 수출 의존도와 집중도가 상당히 높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 수출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도에 수출이 주춤했던 무선 전화기의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무선 통신기기 부품의 수출 증가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진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높은 증가세로 제트유 및 등유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로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와 집중도가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인다.

〈표 1-Ⅲ-2〉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¹⁾	수출품목 ²⁾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³⁾	증가율 ⁴⁾	금액	비중	증가율
1	승용차	10,313	17.6	19.5	12,113	19.5	17.5
2	자동차 부품	5,642	9.6	12.4	6,163	9.9	9.2
3	무선전화기	4,440	7.6	-45.1	5,881	9.5	32.5
4	집적회로 반도체	2,093	3.6	-13	2,586	4.2	23.6
5	제트유 및 등유	1,885	3.2	22	2,553	4.1	35.4
6	철강관	1,763	3.0	20.3	1,724	2.8	-2.2
7	타이어	1,611	2.8	7.9	1,304	2.1	-19.1
8	냉장고	1,046	1.8	4.1	1,104	1.8	5.5
9	건설 중장비	1,149	2.0	43.9	980	1.6	-14.7
10	무선 통신기기 부품	586	1.0	27.4	975	1.6	66.3
계	소계	30,528	52.2	-	35,383	57.0	-
	전체	58,525	100	4.1	62,052	100	6.0

주: 1) 201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순위임

2) MTI 4단위 기준

3)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전년 대비 금액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과 미국 간 교역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 항공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합성수지, 정밀 화학제품 등이며, 2013년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집적회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비중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금액은 전년 대비 각 1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반도체 관련 품목 이외에도 항공기 및 고철 등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상당히 감소했으나, 반면 합성수지 및 의약품의 수입액은 이전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수입액에서 10대 수입 품목의 수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비해 품목의 집중도와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

〈표 1-Ⅲ-3〉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¹⁾	수입품목 ²⁾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³⁾	증가율 ⁴⁾	금액	비중	증가율
1	집적회로 반도체	4,272	9.9	11.3	3,830	9.2	-10.3
2	항공기부품	1,402	3.2	3.2	1,477	3.6	5.4
3	반도체 제조용 장비	2,178	5.0	-4.4	1,475	3.6	-32.3
4	항공기	1,744	4.0	16.3	1,228	3.0	-29.6
5	합성수지	892	2.1	10.1	971	2.3	8.9
6	기타정밀 화학제품	875	2.0	4.8	933	2.2	6.6
7	기타정밀 화학원료	1,022	2.4	-0.1	899	2.2	-12
8	가축 육류	914	2.1	-21.4	891	2.1	-2.4
9	의약품	746	1.7	21.5	881	2.1	18.1
10	고철	1,187	2.7	-16.4	836	2.0	-29.6
계	소계	15,232	35.1	-	13,421	32.3	-
	전체	43,341	100	-2.8	41,512	100	-4.2

주: 1) 201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순위임

2) MTI 4단위 기준

3) 전체 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전년 대비 금액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양국 간 수출입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 중 99% 가까이 공산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품의 수출은 1%대로 미미한 실정이다. 공산품 중에서도 중화학 제품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는 1차 산품의 비중이 약 20%에 가까우며, 수입에 있어서도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공산품 중 약 70%가 내수용으로, 나머지 약 30% 가량은 수출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표 1-III-4〉 한-미 산업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2				201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계	58,525	100	43,341	100	62,052	100	41,512	100
1차 산품	673	1.1	8,882	20.5	748	1.2	7,820	18.8
공산품	57,852	98.9	34,459	79.5	61,305	98.8	33,692	81.2
- 경공업제품	4,937	8.4	1,767	4.1	4,847	7.8	1,937	4.7
- 중화학제품	52,915	90.4	32,692	75.4	56,457	91.0	31,754	76.5
... IT 제품	10,569	18.1	5,909	13.6	12,607	20.3	5,394	13.0
... 기타	42,346	72.4	26,783	61.8	43,851	70.7	26,360	63.5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미국은 현재 총 14개의 FTA를 발효 중에 있으며, 현재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미국은 지역 간, 양자 간 FTA의 체결을 통해 통상 이익의 극대화 및 전략적·외교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수출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참여하고 있다.

〈표 1-Ⅳ-1〉 미국의 FTA 체결 현황

기체결된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FTA	발효일			
1	미국-이스라엘 FTA	1985.08.19	미국 TPP FTA 미국-말레이시아 FTA (TPP에 통합) 미국-태국 FTA(협상중단) 미국-FTAA(협상중단) 미국-아랍에미리트 FTA (협상중단) 미국-SACU FTA(협상중단) 미국-에콰도르 FTA (협상중단)	TAFTA 미국-뉴질랜드 FTA(TPP로 통합) 미국-대만 FTA 미국-베트남 FTA 미국-이집트 FTA 미국-쿠웨이트 FTA 미국-파키스탄 FTA
2	미국-NAFTA FTA	1994.01		
3	미국-요르단 FTA	2002.12.17		
4	미국-칠레 FTA	2004.01.01		
5	미국-싱가포르 FTA	2004.01.01		
6	미국-호주 FTA	2005.01.01		
7	미국-모로코 FTA	2006.01.01		
8	미국-CAFTA-DR FTA	2006.03.01 ¹⁾		
9	미국-바레인 FTA	2006.08.01		
10	미국-오만 FTA	2009.01.01		
11	미국-페루 FTA	2009.02.01		
12	미국-한국 FTA	2012.03.15		
13	미국-콜롬비아 FTA	2012.05		
14	미국-파나마 FTA	2012.10		

주: 1) 전체 발효는 2009.01.01

자료: okfta.kita.net, 2014년 9월 기준

미국은 1985년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ILFTA) 발효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다. 특히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을 통해 대규모 경제연합체를 형성하였다.

가. 주요 자유무역협정

1)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ILFT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ILFTA)는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1985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후 ILFTA 이행 조항은 1996년 10월 2일에 개정되어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 자격을 갖춘 산업단지(QIZs)에서의 제품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세가 허용된다.⁶⁾ 그 외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스라엘과 이집트 영토의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 정부에 의해 관세나 소비세를 지불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국연방정부의 공보(Federal Register)에 게재 확인된 상태로 미국 무역 대표부가 QIZ로 지정한 경우도 QIZ로 인정이 가능하다.

ILFTA는 통일 관세에 나열된 관세 품목의 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특별 열에서 'IL'로 식별된다.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이스라엘 제품으로 처리받는 경우는 (1) 상품이 이스라엘에서 전체적인 제조되거나 다른 물품으로 변환된 경우, (2) 제품이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 또는 QIZs에서 미국의 관세 영역으로 직수입된 경우이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발효된 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107 Stat. 2057, P.L. 103-182)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NAFTA는 2003년 1월까지 캐나다 및 미국 사이에 거래되는 거의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민감한 상품 거래는 5년의 추가적인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였다. NAFTA 401조는 해당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와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였다. 하지만,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하거나 동 국가들에서 최소한의 가공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NAFTA 401조에서 '원산지'는 4가지로 정의되는데 (1) NAFTA 지역에서 타지역의 생산요소 투입 없이 완전히 생산된 경우, (2) 상품 원산지에서 독점적으로 NAFTA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으나 일부 외국에서 가공된 생산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3) Annex 401조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4) 세번변경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 거래 방법을 사용하여 60% 혹은 순비용방법으로 50%를 만족시키는 경우로 해석된다.⁷⁾

6) 통일 관세율표의 General Note 3(a) (v) (G)는 해당지역을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s)로 지정하였다.

7) NAFTA의 부록 401 (Annex 401 of NAFTA) 통일 관세의 일반 주 12 (T)에 성문화되어 미국의 일

민감한 분야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NAFTA 부속서 401-원산지 기준(The NAFTA Annex 401-origin criteria)이 있고, 이는 대부분의 섬유 및 의류 관련된 생산이 북미에서만 일어나도록 한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의 기본 규칙은 일반적으로 ‘yarn forward’를 사용하는데 이는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실이 NAFTA 지역에서 추출되었고, 섬유의 모든 후속 처리는 북미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인력으로 만든 필라멘트 섬유나 관련 의류의 경우에는 더 제한적인 ‘fiber forward’ 규칙을 따른다. 일부 의류 제품은 ‘visible lining’ 규칙을 적용하여 북미에서 만들어진 것만 인정하기도 한다.

3)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역협정(JFTA)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역협정(JFTA)은 2001년 12월 17일 발효된 것으로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JFTA의 대상 품목은 통일관세율표에 나열되며, 특별 칼럼에서 ‘JO’로 식별된다. JFTA 자격을 얻는 기본 요건으로 외국의 투입 없이 전적으로 요르단에서 생산된 것이나, (1) 요르단에서 생산된 재료비용과 (2) 미국과 거래했을 당시 요르단에서 진행된 직접가공비용이 물품의 평가금액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며 현재 부가가치가 15%를 넘지 않는 제품의 경우는 최대 35%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물품은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어야 한다. 단, 섬유 및 의류 물품은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변환기준’과 ‘35%’의 가치를 포함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General Note 18(d) 참조). JFTA는 QIZ에서 들어온 상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상품들은 계속해서 JFTA가 아닌 QIZ하에 수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입업자들은 특혜 권리로 인해, 상품이 계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입자는 미국 관세청에 신고서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 물품의 생산 혹은 제조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로 시작하며, 신고서에 기반한 모든 서류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 정보는 5년 동안 보관되며 증거 제공용으로 쓰인다. 그러나 상품 처리 비용의 지불을 면제하

는 것은 아니다.

4)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S-CFTA)

미국-칠레자유무역협정(US-CFTA)은 2004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US-CFTA 시행령(P. L.108-77; 117 Stat. 909) 또한 함께 제정되었다.⁸⁾ US-CFTA는 12년의 과도기를 거쳐 양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한다.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85%의 칠레산 상품이 즉각적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외 상품에 대한 관세 또한 4년, 8년, 10년 혹은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칠레와 미국이 이러한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칠레와 미국산 상품은 관세율표 일반 주 26의 국내 규제 및 협정에 따라 무료 또는 감축된 관세가 적용된다. 이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칠레를 통한 환적품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US-SFTA)

미국-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US-SFTA)은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행법(공법 108-78; 117 Stat. 948; 19 USC 3805 note)이 200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US-SFTA을 반영한 관세율표는 일반 주 25(General note 25)를 포함하였다. US-SFTA는 10년간 이루어진 양국 원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해 즉각적인 또는 단계적인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를 가져왔다.

US-SFTA 이행법률안 제202조에 따라, 비섬유 상품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싱가포르산 제품’으로 특혜 관세 우대를 받게 된다. (1) 싱가포르나 미국 내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되는 제품, (2) 수입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원재료로, 싱가포르로 수입되어 통일 관세율표의 일반 주 25(o)에 적용되는 변경이 싱가포르나 미국, 혹은 양국에서 발생한 경우, (3) 수입된 제품이 일반 주 25(o)에 열거되

8) 대통령 선언 7746, US-CFTA의 공식 발표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발간 3652 참조할 수 있음. 발간 3652는 HTS 일반 주 26를 추가하여 관세 규정을 수정, 19절의 연방 규정 코드 또한 US-CFTA 시행을 위해 수정되었음

어 있는 품목으로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ISI방식(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인 경우는 싱가포르의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그 밖에, 섬유 및 의류 제품이 US-SFTA 하에서 특혜관세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 25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⁹⁾

2006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시작한 이후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 2007년 4월 말에 협상이 타결된 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FTA 비준이 지연되어 왔으나, 201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에서 비준이 완료되면서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FTA이다. 한-미 FTA를 통해 세계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관세 등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통상 마찰을 완화하며, 생산 및 고용,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확대로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산업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등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쌀을 제외한 양국 간 모든 교역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협정의 발효 후 5년 내에 전체 품목의 94%에 대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우리의 민감 상품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도입(포도, 칩용 감자 등), 농산물 셰이프 가드(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 15년 이상의 관세 존속기간(사과, 배, 소고기, 고추, 양파, 인삼 등)을 두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9) www.okfta.kita.net,
KOTRA, 미국, 국가정보, 한국과의 주요이슈
KOTRA, 『한미 FTA 발효 2년 對美 수출 성과 분석』, 『Global Market Report 14-006』, KOTRA, 2014.03.

〈표 1-IV-2〉 한미 FTA에 따른 상품관세철폐 계획¹⁾

(단위: 억달러, %)

구분	우리 측				미국 측				
	품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7,218	85.6	200.0	80.6	6,176	87.0	331.0	87.2	
3년 균등	719	8.5	33.2	13.4	360	5.1	28.2	7.4	
5년 균등	168	2.0	3.8	1.5	196	2.8	8.7	2.3	
10년	균등	301	3.6	10.7	4.3	333	4.7	11.5	3.0
	비선형	24 ²⁾	0.3	0.3	0.0	12	0.2	0.1	0.0
12년	비선형	1 ³⁾	0.0	-	0.0	17	0.2	0.02	0.0
	TRQ	2 ³⁾	0.0	0.03	0.0				
15년(TRQ)	1 ³⁾	0.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	7,094	100	379.6	100	

주: 1) 추가협상결과 미반영

2) 기타 게(Crab) 가운데 Dungeness Crab은 3차에 걸쳐 3년 내 철폐예정

3) 12년(비선형): 고등어

12년(TRQ): 민어, 기타 넙치

15년(TRQ): 명태

자료: www.globalwindow.org

한-미 FTA 협정에 의한 특혜 관세율은 미국 관세율표의 관세율(Rates of Duty) 중 Column 1의 Special 란에 게재하고 있으며,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특혜 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 간의 수출 성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11년 567억 달러에서 2013년 622억 달러로 9.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대 세계 수출증가율인 0.8% 및 대 중국 수출증가율 8.7% 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FTA 수혜품목의 경우 2년 간 수출이 28.3%가 증가하였으며, 비수혜 품목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7.9%에 머물렀는데, 타이어와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혜 품목의 대 미국 수출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추진 중인 지역무역협정

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¹⁰⁾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광범위한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한다. 즉, TPP는 기존 FTA의 기본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 무역 이외에도 비관세 분야인 투자, 경쟁, 지적권 등과 새로운 분야인 노동 및 환경 등의 분야를 포괄한다.

〈표 1-N-3〉 TPP 협상 분야

분야	구분	세부 내용		
전통적 FTA	1	상품시장 접근	상품 교역 시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	
	2	원산지규정	관세 감면의 대상인 '원산지 품목' 인정 기준과 증명 제도 등	
	3	무역 원활화	무역규칙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4	서비스	서비스 교역	서비스 교역 시의 수량규제 금지, 무차별 원칙 등을 제정
	5		상용관계자의 이동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체제 절차의 간소화
	6		금융서비스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룰
	7		전기·통신 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 부여
비관세 분야	8	위생식물검역(SPS)	식품 안정 확보와 동식물의 질병 방지조치 관련 규정 마련	
	9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정	
	10	무역 구제조치(trade remedies)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 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셰이프가드 발동 조건	
	11	정부조달	공공사업 발주 규칙	
	12	지식재산권	모방품, 해적판 단속	

10)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2014.08
KOTRA 국가정보, 미국,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표 1-Ⅳ-3〉의 계속

분야	구분	세부 내용	
비관세 분야	13	경쟁 정책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법, 정책의 강화, 정부 간 협력 등
	1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환경 및 물 정비를 위한 원칙 등
	15	투자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무차별 원칙, 투자 분쟁해결 절차 등
신분야	16	환경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규제완화 금지
	17	노동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 규제완화 금지
	18	제도적 사항	협정운용 관련 기관 설치 및 기간의 권한 등
	19	분쟁해결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따른 체결국 간의 분쟁해결 절차
	20	협력	협정 합의 사항의 이행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21	협상분야 간 포괄사항	복수의 협상 분야에 포괄되는 규제에 인한 무역 장애 방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2014.08.

P4 협정으로 시작된 본 협정은 2005년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서명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지역무역협정이었던 P4는 2010년 3월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TPP로 확대됐다.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의 협상 참여 이후, 말레이시아가 9번째 참가국으로 합류했고, 2012년에는 캐나다, 멕시코도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 일본을 마지막으로 현재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¹¹⁾

미국은 TPP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미국을 높은 수준으로 연결시켜 무역기회를 확대,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TPP 참여국의 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GDP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된다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TPP는 협상 참가국 중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미-일 FTA로 평가되기도 한다.

11)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 의사를 표명하긴 하였으나 참여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임(2014년 9월 기준)

협상 주도국인 미국은 2013년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협상 참가국 간 분야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간 농축산물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2014년 9월 현재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미국 주도인 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은 2025년까지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개 모든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FTAAP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TPP보다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¹²⁾

세계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상으로 미-EU FTA로 불리기도 하는 TTIP는 2013년 2월 협상의 시작을 선언하며 이를 공식화하였다. 현재 EU와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 가량인 47%이며, 양측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본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2011년 말에 FTA Z협상을 위한 실무 그룹을 출범시켰음에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였으나, 양측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13년 7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로, 2014년 7월 브뤼셀에서의 6차 협상까지 현재 총 6회의 공식 협상이 진행된 상황이다.

EU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및 중국 견제를 위해 EU와의 경제 협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도 도하 라운드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서의 주도권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견제, 글로벌 통상 규범의 수립 의도 등이 양측이 TTI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12) KOTRA 국가정보, 미국,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전혜원, 「EU·미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주요국 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03.

유새별, 「TTIP(미·EU FTA)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상 동향과 주요 쟁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08 No.10, 2014.04.

TTIP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비관세장벽,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포괄적인 FTA로,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규제 정합성(regulatory convergence), 규범(rules),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안건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장 접근 측면에서는 관세의 철폐, 서비스, 공공조달 부문을 논의 중이며, 규제(비관세장벽)와 관련하여서는 규제의 조화 및 정합성,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식품 및 동식물의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EU는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각 국가마다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 제도의 차이가 무역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보고 기술규제, 제품표준, 시험 및 인증과 같은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규제의 정합성 향상은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양측의 상호 조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규범과 관련하여서는 노동 및 환경 분야, 에너지 및 희귀자원,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해 협상에서 다루고 있다

〈표 1-IV-4〉 TTIP 협상 안건

협상 안건			
1. 농업	- 위생검역조치 (SPS) -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8. 지적재산권	- 지리적 표시 - 저작권 보호 - 특허 - 기업기밀
2.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시청각 서비스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우	9. 산업 규제 및 기준	- 무역상 기술장벽 (TBT) - 표준화 수립 - 범대서양 규제 협력
3. 디지털 거래 및 전자상거래	- 디지털 정보 흐름 - 정보 보호	10. 상품 및 농업에 대한 관세	
4. 정부조달		11. 현지화 무역장벽	
5. 투자		12. 국영기업	
6. 노동 및 환경		13. 중소기업	
7. 무역원활화		14. 분쟁해결	

자료: 유새별, 「TTIP(미·EU FTA)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상 동향과 주요 쟁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08 No.10, 2014.04.

미국과 EU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농업 부문이 최대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1998년 미국과 EU의 FTA 협상 논의가 좌절된 것도 농업 부문 때문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자국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는 관세 인하 문제뿐만 아니라 농산물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EU는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규제와 관련하여 EU가 유전자 변형 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염소 처리 가공류, 성장 호르몬 쇠고기의 유통을 금지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TTIP의 출범은 EU와 미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세계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 당사자 간 관계의 재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다자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WTO 체제를 무력화하여 DDA 협상의 의미가 퇴색, RTA 중심 체제로 글로벌 무역 체제가 개편되거나, 오히려 TTIP로 인해 EU와 미국 공동의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DD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양측의 성공적인 규제 협력 시 국제 표준이 EU와 미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무역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행정 조직

1 정부조직 개관¹³⁾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로, 각 주(州)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776년 13개 주로 구성된 독립국가로 출발, 19~20세기에 37개 주를 추가하여 오늘날 정치·경제 대국이 된 미국은 1789년 발효된 헌법에 기초한 연방공화제 국가로서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 다수의 자치령이 있다.

연방정부는 삼권분립원칙에 의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독립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 통수권,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명권, 특사권 등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2,000개 이상으로 매우 많으며, 부(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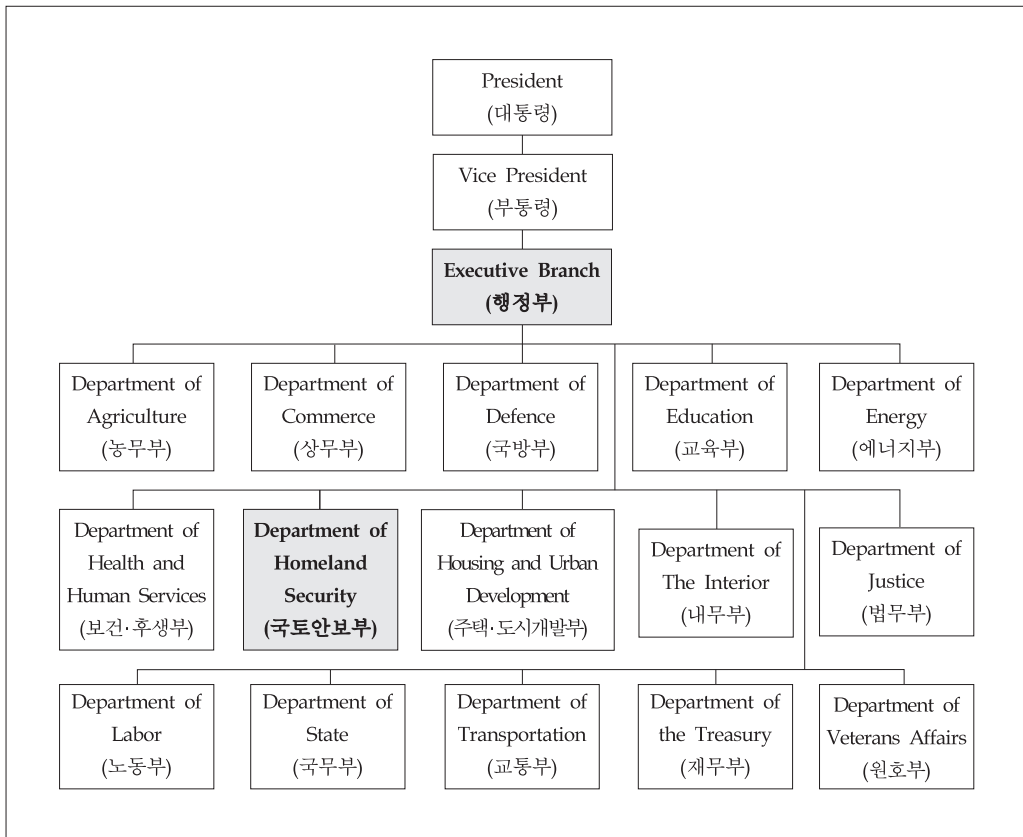
13)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 2009.10.
외교부, 『미국개황』, 2009,
KOTRA 국가정보, 『미국-정치사회동향』, 2014.08.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내각에는 15개의 부가 존재하며, 연방정부의 집행기능의 주축을 이룬다. 각 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이며 내각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부장관(Deputy Secretary), 차관(Under Secretary),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장관을 보좌하며, 부의 하부조직으로는 국, 실, 청(Service/Administration) 등이 있다.

연방정부의 조직은 크게 부(department), 독립관청(independent agencies),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관청은 부와 유사하나 항공우주국(NASA), 중앙정보국(CIA) 등 업무영역이 보다 좁으며, 주로 규제기능보다는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독립관청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그림 2-1-1] 미국의 중앙 행정부처



입법부인 의회는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The Senate)과 435명으로 구성된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각 주(state)에서 2명씩 6년 임기로 매년 3분의 1이 선거로 선출되며,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되며 임기는 2년이고,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원이 다시 선출된다. 상원과 하원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된다. 법안 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가 되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으로 연방국가인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다른 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청구액 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의 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 11개의 항소법원, 91개의 지방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개의 특별법원도 별도로 두고 있다.

2 통관행정 관련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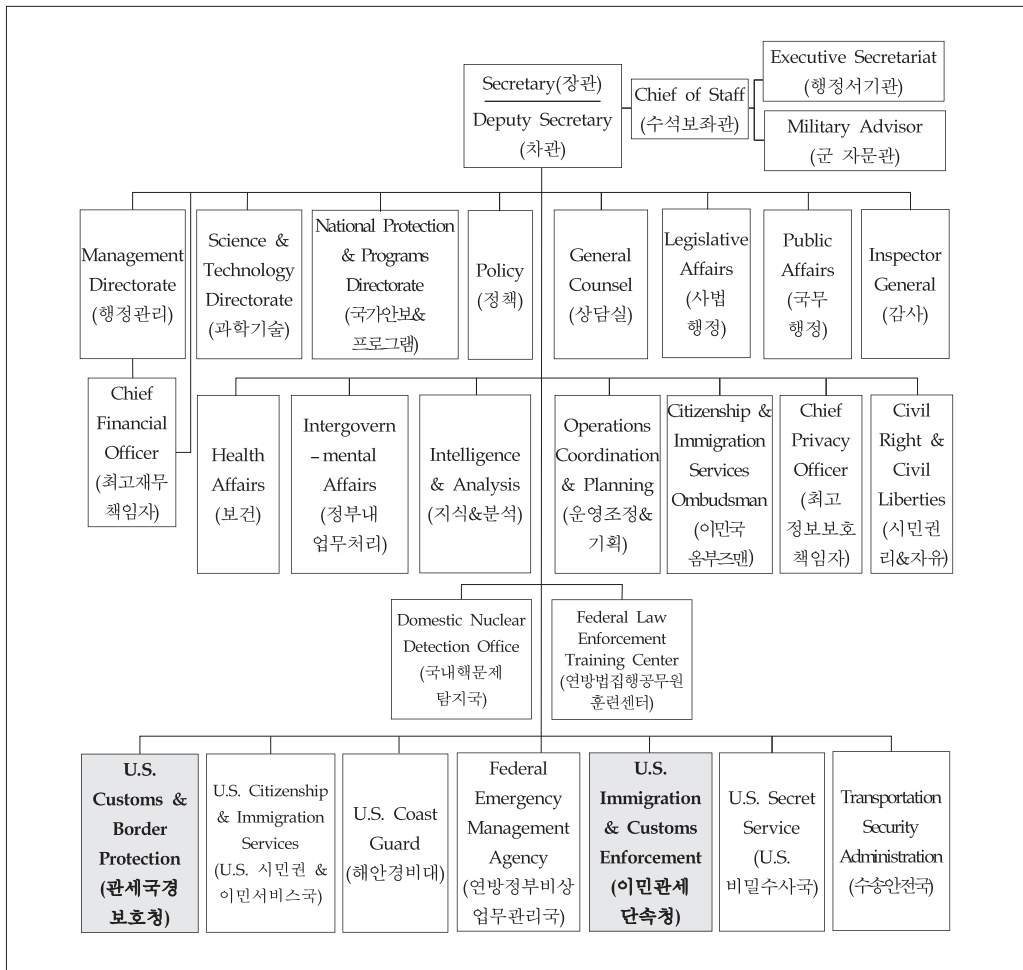
가. 국토안보부(DHS)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로 미국 내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2002년 11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의 국토안보국을 격상시킨 것으로 기존 22개 국내 안보 관련 조직들을 통합한 것이다. 즉, 기존의 법무부, 해안경비대, 관세청, 이민국, 국경순찰대, 비밀경호국, 연방비상계획처 등의 대(對) 테러리즘 업무담당 부서가 모두 편입되었으나, FBI(연방수사국)와 CIA(중앙정보국)는 흡수에서 제외되었다.

국토안보부가 창설되면서 산하기관으로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과 이민관세단속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이 설립되었다.

ICE는 이민과 관세에 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CBP는 세관 서비스 외에 이민 및 귀화 서비스, 국경 순찰대, 동물 및 식물 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군의 화물, 밀수품, 비안전 물품에 대한 미국의 국경 안전을 보호하고 다양한 변동사항에 대해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2-1-2] 미국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나. 관세국경보호청(CBP)

1) 기능과 주요 임무

CBP는 주로 국제 무역과 통관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주세(state tax) 등으로 이루어진 미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수입을 보호하고, 미국 내 관세법 및 관계법령을 집행하며, 선적과 적하 조사에 대한 권한과 업무 수행 중 무력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CBP는 테러방지와 무기의 수입 금지, 불법 의약품 및 위조품의 거래 금지, 유해 폐스트나 질병으로부터 미국 농업 및 경제 보호, 미국 산업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이전 미국 관세 서비스는 1930 관세관법을 준용하는 것이 주요한 책임이었으나 9.11 사태 이후 세관이 국경 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2년 국토안보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수입품을 감시, 검출, 조사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CBP는 국경 보호기관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이외에도 사람들의 움직임, 즉 불법 입국자를 통제·감시·감독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특히 독성물질, 유해물질 등이 미국 내 반입되는 것을 막아 미국의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며, 불법적인 약물, 밀수 혹은 다른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불법 노동자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미국 내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CBP는 표적자동화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과 수출자동화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의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 화물을 적발하고 있다.

그 외에 CBP는 국경의 보안과, 합법적인 무역, 여행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업무의 수행과 미래 환경을 위한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지니고 있다.

2) 부서별 소관 업무

CBP의 청장(Commissioner)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장은 CBP의 인력을 감독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잠재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무역과 여객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차장(Deputy Commissioner)은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CBP의 인력 업무 운영 감독 및 운영 예산을 관리하며, 테러범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연방과 주, 지역, 해외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테러 무기를 신속히 처리한다. 불법 의약품 및 밀입국자 단속, 무역과 여객 보호 및 편의 도모, 안전한 식자원 공급 및 해중과 질병으로부터 농업 보호, 기타 국경 관련 직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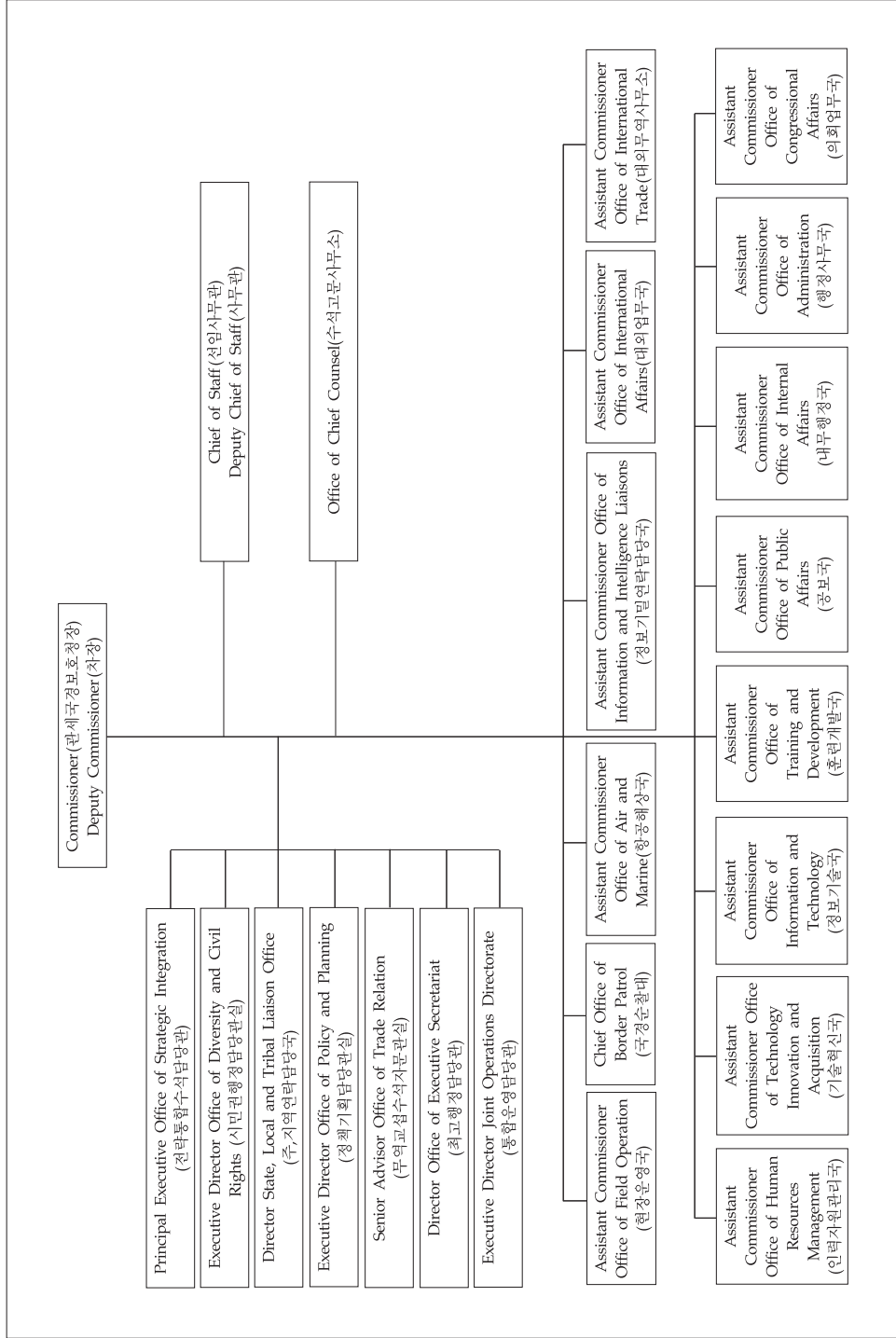
2012년 기준 21,000명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경순찰대(Office of Border Patrol, USBP)는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 항구에서 테러 진입을 금지하며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대외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OT)에서는 CBP의 무역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법 준수 기능을 통합 관리하며, 국제 파트너 및 미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오염된 농식품 수입의 금지를 위한 규정 집행과 자유무역협정의 적격한 집행을 지휘한다.

공보국(Office of Public Affairs)에서는 CBP의 임무와 운영의 원활성 확보를 주요 직무로 하며, 미디어 및 공공의식 캠페인을 통해 이해관계자, 민간에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CBP는 20개의 미국 내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OFO)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운영국은 미국 국경의 327개의 통관항과, 캐나다와 캐리비안 내 15개 사전허가사무소(preclearance office)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1-3] 미국 CBP 조직도



3 통관관련 법률

관세의 부과와 통관절차에 있어 기본법적 역할을 하는 법은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¹⁴⁾으로, 이는 U.S.Code(연방법전) Title 19-Customs Duties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최초의 관세법은 독립 후 10여 년이 경과한 1789년 7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은 대공황 발생 직후에 제정되어 평균 48%가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관세율뿐 아니라 수많은 조문 개정을 거쳐 왔으며, 1933년 농업조정법, 1974년 무역법, 1993년 세관 현대화법을 비롯하여, 2002년 국토안보부법, 2006년 항만보안법 등 다른 법의 영향을 받았다.

〈표 2-1-1〉 미국 U.S.Code Title 19 수록법령

chapter	수록법령(조항)
1	Collection Districts, Ports, and Officers (§§1-70)
1A	Foreign Trade Zones (§§81a-81u)
2	The Tariff Commission [Repealed or Omitted] (§§91, 92-107)
3	The Tariff and Related Provisions (§§121-580)
4	Tariff Act of 1930 (§§1202-1683g)
5	Smuggling (§§1701-1711)
6	Trade Fair Program (§§1751-1756)
7	Trade Expansion Program (§§1801-1991)
8	Automotive Products (§§2001-2033)
9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2051-2052)
10	Customs Service (§§2071-2083)

14) 스무트-홀리 관세법(The 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으로도 불림

〈표 2-1-1〉의 계속

chapter	수록법령(조항)
11	Importation of Pre-Columbian Monumental or Architectural Sculpture or Murals (§§2091-2095)
12	Trade Act of 1974 (§§2101-2497b)
13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2501-2582)
14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2601-2613)
15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2701-2707)
16	Wine Trade (§§2801-2806)
17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2901-2906)
18	Implementation of Harmonized Tariff Schedule (§§3001-3012)
19	Telecommunications Trade (§§3101-3111)
20	Andean Trade Preference (§§3201-3206)
21	North American Free Trade (§§3301-3473)
22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3501-3624)
23	Extension of Certain Trade Benefits to Sub-Saharan Africa (§§3701-3741)
24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3801-3813)
25	Clean Diamond Trade (§§3901-3913)
26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4001-4112)

자료: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www.law.cornell.edu

통관과 관련하여서 관세법 외에도 여러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 U.S.Code 중 Title 7(Agriculture), Title 15(Commerce and Trade), Title 16(Conservation), Title 17(Copyrights),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Title 21(Food and Drugs) 등이 대표적이다.

U.S.Code Title 19에는 26개 장에 걸쳐 관세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4장(Chapter 4) 관세법 내에서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 U.S.Code §1401a에서는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와 관련된 규정을, 19 U.S.Code §1481~1529에서는 수입통관 관련 규정을, 19 U.S.Code §1671과 §1673에서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표 2-1-2〉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의 구성

절 (Subtitle)	관 (Part)	조항의 구성	주요 내용
제 I 절	-	제1202조	관세율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 II 절	제1관	제1301조~제1323조	수입금지물품
	제2관	제1330조~제1341조	미국국제통상위원회
	제3관	제1351조~제1367조	국제통상의 진흥
제 III 절	제1관	제1401조~제1414조	통관 및 과세의 정의
	제2관	제1431조~제1467조	외국무역선(기) 등의 입출항
	제3관	제1481조~제1529조	수입통관과 과세 및 납세절차
	제4관	제1551조~제1565조	보세화물의 운송과 장치
	제5관	제1581조~제1631조	불법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치
	제6관	제1641조~제1654조	관세사와 수출신고요건 등
제 IV 절	제1관	제1671조~제1671h조	상계관세의 부과
	제2관	제1673조~제1673i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3관	제1675조~제1676a조	산업피해구제
	제4관	제1677조~제1677n조	산업구제 관련 기타 일반사항
제 V 절	-	제1681조~제1681b조	담배의 수입요건
제 VI 절	-	제1683조~제1683g조	연질 목재 (softwood lumber)

자료: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www.law.cornell.edu

U.S.Code의 하위 규정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규정집)에서는 Title 19-Customs Duties에서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U.S.Code 보다 세부적이며 실무적인 상세 조항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세법 시행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즉, U.S.Code Title 19 내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C.F.R Title 19 내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C.F.R Title 19는 총 3개의 장, 하위 360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 및 관련 규정의 확인이 가능하다.

〈표 2-1-3〉 미국 C.F.R Title 19의 구성

Chapter		Part(조항)	주요 조항 별 내용 ¹⁾	
I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Part 0~192 (§§0.1~192.14)	101.0~101.9	일반 규정
			113.0~113.75	관세 담보(Customs bonds)
			159.0~159.64	관세 청산(Liquidation)
			162.0~162.96	검사, 조사 및 압수
			171.0~171.64	벌금, 벌칙 및 몰수
			191.0~191.195	환급(Drawback)
II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Part 200~213 (§§200.735~213.6)	202.1~202.6	물품 가격 조사
			204.1~204.5	농업 프로그램(agricultural program)에 미치는 수입의 영향 조사
			213.1~213.6	무역구제(trade remedy) 지원
III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Part 351~360 (§§351.101~360.108)	351.101~351.702	반덤핑 및 상계관세
			354.1~354.19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행정보호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위반 시 제재 부과

주: C.F.R.의 전체 조항은 '부록 2'를 참고할 것
자료: www.law.cornell.edu

한편, 미국은 FTA의 이행 등과 관련한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국가로 U.S.Code Title 19 및 C.F.R Title 19에 각 FTA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FT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한 수출입 시의 요건, 원산지 규정, 벌칙 사항 등을 각 FTA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NAFTA와 관련된 제반 규정은 19 U.S.Code §§3301~3473과 19 C.F.R §§181.0~181.132에서,¹⁵⁾ 기타 대부분의 FTA와 관련하여서는 19 C.F.R Part 10 내 Subpart A 내지 T(§§10.1~10.3034)에서 정하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19 C.F.R Part 10 Subpart R(§§10.1001~10.1034)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9 CFR에서 Parts 10, 12, 123, 134, 162, 174, 177, 178가 개정되었고, 새로이 part 102, 181을 추가되면서 미국 관세 규정에 NAFTA와 관련된 조항들이 도입됨

그러나 FTA 관련 규정 외에 일반 규정 내에서도 각 FTA와 관련된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 U.S.Code §1508-자료보관(Recordkeeping) 규정 내에는 각 FTA 체결국별로 보관해야 하는 수출입 관련 자료의 종류와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관련 법률 체계에 있어 독특한 점은 관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 처벌과 형사 처벌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세 관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민사 처벌과 그 대상은 U.S.Code Title 19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은 우리나라의 형법과 유사한 성격의 U.S.Code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을 따르고 있다.

미국은 관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면 관세법 외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벌금과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관세법에 규정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Ⅱ.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하며, 관세평가는 과세 가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관세율과 더불어 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WTO에서는 관세평가협정¹⁶⁾을 통해, 상품 가치 평가에 있어 자의적·임의적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해 과세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평가 협정의 기본 원칙은 수입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 표준을 측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무역 거래에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 관계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하여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19 U.S.Code §1401a (Value)에 두고 있으며 이를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가격은 당해 수입 물품(imported merchandise)의 거래가격이며,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물품(identical merchandise)의 거래가격, 유사물품(similar merchandise)의 거래가격, 공제가격(deductive value), 산정가격(computed value),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순으로 순차 적용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제가격 적용보다 산정가격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6) 정식명칭은 GATT 1994 VII조 이행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임

다만, 과세 가격에 있어 미국의 경우 그 기준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금액으로 하므로, 수출국에서 계약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까지만 고려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에 관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¹⁷⁾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을 과세 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으로, 본 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요소와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다. 가산해야 하는 요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 물품의 포장비용, 판매 수수료, 생산지원 비용(assist) 등이 있으며, 공제 요소로는 수출국에서 미국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해상 보험료, 수입 이후에 발생한 운송 비용 및 경비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들 수 있다.

가산 요소 중 생산지원비용(assist)이란,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되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¹⁸⁾

- 수입물품에 결합(incorporated)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mold),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artwork), 디자인 등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된 것

17) 19 U.S.Code §1401a (b), 19 CFR §152.103

18) 19 U.S.Code §152.102 (a)

〈표 2-II-1〉 거래가격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가산요소	공제요소 ¹⁾
① 수입 물품의 포장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 ③ 생산지원비용(assist) ④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⑤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①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 ② 해상화재 보험료 ③ 미국으로 수입 후 발생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④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주: 1) 미국은 과세 기준 가격을 FOB로 하므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이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않고 공제요소에 포함됨

자료: 19 U.S.Code §1401a, www.kotra.or.kr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해 관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수입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대해 제한이 없어야 함
- 해당 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해당 물품의 수입 후 발행한 전매, 처분, 사용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함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not related), 만약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일지라도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특수관계자(related persons)란 수입자와 수출자 간 다음의 7가지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¹⁹⁾

- ① 친족 관계(형제·자매, 배우자, 존속 및 직계 비속 포함)
- ② 한 조직의 어느 임원 또는 관리자, 그리고 그 조직
- ③ 한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이며 다른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각 개인이 또 다른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④ 동업자(partners) 관계

19) 19 CFR §152.102(g)

- ⑤ 고용주 또는 고용인 관계
- ⑥ 특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 ⑦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지배하거나, 제3자로부터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지배 하에 있는 경우

나. 동일 물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²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동일 물품(identical merchandise)의 거래가격을, 수입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없거나 적용 가능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사 물품(similar merchandise)의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동일 물품’이란 당해 수입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으로,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달라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 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 요소를 지닌 물품,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조건을 충족하며, 생산자가 다른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유사 물품 판단 시 품질과 평판(reputation), 상표 존재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한 거래 단계,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adjustment)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조정하며, 그 정보는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만일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0) 19 U.S.Code §1401a (c)

다. 공제가격(제4방법)²¹⁾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동일 상품이나 유사 상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격(deductive value)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수입업자가 산정가격(computed Value)에 의한 가격을 관세평가 기준으로 먼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수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방법인 공제가격보다 제5방법인 산정가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산정가격을 우선 적용하였으나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공제가격이 다시 관세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제가격은 미국으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종·동류 물품의 판매 가격(물품의 단가)에서 특정 요소를 추가(additions)하고 공제(deductions)함으로써 결정되는 가격이다.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재료비는 공제가격 결정 시 더해야 하는 요소로써 수입자와 구매자 중 누가 발생시킨 비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산하며, 판매 가격에서 공제해야 하는 요소들은 ①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 ②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료 및 보험료, ③ 관세 및 연방 세금, ④ 수입 후 이루어지는 추가 가공 비용이다.

라. 산정가격(제5방법)²²⁾

과세 평가에 있어 다음으로 적용되는 것은 산정가격(computed value)이다. 앞서 고려된 가격으로 관세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관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수입자의 요청의 의해 공제가격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산정가격은 수입 물품 생산에 필요한 ① 재료비, 제조 및 기타 가공 비용, ② 이윤과 일반 경비, ③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지원 비용(assist), 그리고 ④ 포장 비용을 합산한 가격이다.

이윤과 일반 경비는 수출국 내에서 동종 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미국에 수출하기

21) 19 U.S.Code §1401a (d)

22) 19 U.S.Code §1401a (e)

위해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과 비용에 기초한다.

물품의 생산에 있어 사용된 지원 비용(assist)이 제조자의 재료비, 제조비, 가공비, 일반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 비용을 안분 비례한 가격을 산정가격에 가산하며, 용기 및 포장과 관련된 노무비와 재료비도 산정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제6방법)²³⁾

상기 다섯 가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섯 가지의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단, 본 마지막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의한 가격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
-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가격
- 수출국 내 판매가격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산정가격(computed value)의 가격 결정 기준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 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 미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 가격
- 최저과세 기준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본 마지막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외국 시장의 가격(foreign market value)의 확인, 결정, 추정 또는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19 U.S.Code §1401a (f)

2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에 해당되는 세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의 과세 시에는 종가세(ad valorem rates), 종량세(specific rates), 복합세(compound rates)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가세는 가장 흔히 적용되는 유형의 과세로 구입 가격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고, 종량세는 무게나 양의 단위당 일정량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며,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조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소비세의 부과 대상 품목은 맥주, 와인, 발효주 등의 주류와 담배 제품이다. CBP는 소비세 대상 물품의 수입 시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를 대신하여 소비세를 부과한다.²⁴⁾

미국은 주(state) 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나. 수수료

1) 항만유지비(HMF, Harbor Maintenance Fee)

항만유지비는 해상 수입 화물의 가격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모든 국가의 화물에 적용된다. 이는 수입,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s) 반입 허가, 국내 운송, 승객 수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이다.

종가세로 부과되는 본 수수료는 FOB 가격의 0.125%를 징수하고 분기별로 납부되

24) CBP는 연방 기관을 대신하여 연방 세금(federal tax)과 수수료를 징수하나, 주(state)를 대신하여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지불하게 된다.

2)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세관에서 취급 수수료(processing fee)로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로 해상 및 항공 화물에 모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2,000달러가 넘는 신고 건에 대해 FOB 가격의 0.3464%²⁵⁾를 본 수수료로 부과하며, 건당 최소 25달러, 최대 485달러까지 징수한다.

2,500달러 미만의 약식(informal) 수입신고 건의 경우, 자동신고 건에 2달러를, 수기(manual)신고 건에 대해 CBP에 의해 준비된 경우는 9달러, 그렇지 않은 경우 6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본 수수료가 면제되며,²⁶⁾ 한-미 FTA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통해 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로코 및 요르단은 본 수수료의 면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FTA 체결국가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기타 특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5) 기존 0.21%였던 수수료율이 2011.10 부터 인상되었음

26) 근거규정 19 C.F.R 24.23(c) 등

Ⅲ. 관세율 제도

1 HS 품목분류 체계

HS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하여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에 의해 체결국은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HS 201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HS 협약에 따라 품목의 분류를 21부(section), 97류(chapter), 1,224호(heading), 5,205호(sub-heading)로 세분하고 있으며, 77류, 98류와 99류는 유보하고 있다.

HS 코드의 앞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하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하여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현행 HS 분류코드의 명칭은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²⁷⁾로 관세율표상 세율 표기에 있어 8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 목적으로 10단위 코드까지 사용하여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미국 HTSUS의 특징 중 하나는 HS 협약상의 유보류 중 98류(9801~9822)를 관세 감면 용도, 99류(9901~9920)를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 부과 용도 등으로 22부(특별분류규정)에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HS 코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관세

27) 과거에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으나,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로 개편됨

율표²⁸⁾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자는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s)를 이용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Tariff Classification Ruling)를 위해 품목 관련 정보와 샘플을 제출하여 CBP의 결정 세 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²⁹⁾

2 관세율 체계

가. 관세율 수준

미국에 관한 WTO의 2012년도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TSUS 8단위 기준 총 10,511개 세 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7%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전체 품목의 37%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³⁰⁾

28) 미국 품목별 관세율, <http://hts.usitc.gov>

29) 관련 내용은 제2편 통관제도개요 V. 기타 1. 사전심사제도 참고

30) 외교통상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2013.12.

〈표 2-Ⅲ-1〉 미국의 MFN 세율 및 협정세율 분석(2012년)

(단위: 개, %)

구분	품목 수	세율 범위 (%)	평균 세율 (%)	FTA 세율 (%)		
				한-미	미-콜롬비아	
전체	10,511	0~350	4.7	1.8	0.8	
HS별	HS 01~24류	1,873	0~350	7.8	6.1	4.2
	HS 25~97류	8,638	0~57.7	4.1	0.8	0.1
WTO 카테고리	농산물	1,690	0~350	8.5	6.5	4.7
	비농산물(석유포함)	8,821	0~57.7	4.0	0.8	0.1
ISIC ¹⁾ 부문	농산수산업	580	0~350	5.6	4.2	3.1
	광산업	115	0~10.5	0.4	0.1	0.0
	제조업	9,815	0~350	4.7	1.6	0.7
가공 정도	1차 가공 단계	1,101	0~350	3.7	2.6	1.7
	반가공 제품	3,444	0~50.29	4.2	1.1	0.1
	완제품	5,966	0~350	5.2	2.0	1.1

주: 1)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UN 국제표준산업분류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 2012.11.

또한,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미국은 WTO 양허 단순평균 관세율은 3.5%이며, GSP와 기타 특혜세율까지 감안한 가중평균 실행세율은 1.34%이었다. 2011년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의 70% 가까이 무관세로 수입되었다.³¹⁾

31) WTO,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 2012.11.

〈표 2-III-2〉 품목군별 관세율 및 수입

품목군	최종 양허세율				MFN 적용세율			수입	
	평균 세율	무세 ¹⁾	최고 세율	양허 ²⁾	평균 세율	무세 ¹⁾	최고 세율	비중 ³⁾	무세 ¹⁾
동물성 생산품	2.4	31.0	26	100	2.2	30.8	26	0.4	26.2
낙농품	19.8	0.3	96	100	19.9	0.3	95	0.1	13.5
과일, 야채, 식물	4.7	23.3	132	100	4.7	20.9	132	1.2	27.3
커피, 차	3.3	53.5	42	100	3.3	53.5	42	0.6	79.3
시리얼, 조제식료품	3.5	20.8	51	100	3.1	20.1	51	0.6	32.8
채유용 종자, 지방, 오일	4.2	27.6	164	100	4.8	25.9	164	0.4	37.9
설탕과 과자류	11.2	2.9	38	100	14.4	2.7	38	0.2	4.6
음료수, 담배	15.0	27.8	350	100	14.0	26.2	350	1.0	50.1
면(cotton)	4.4	38.3	16	100	4.1	38.3	15	0.0	73.8
기타 농업 생산품	1.1	62.0	67	100	1.1	61.0	67	0.3	65.7
생선 및 생선 제품	1.0	80.5	35	100	0.8	84.6	35	0.8	91.2
광물과 금속	1.7	59.9	38	100	1.7	61.1	38	13.4	75.8
석유	1.3	25.0	7	80.0	1.1	16.7	7	16.4	0.0
화학	2.8	40.0	7	100	2.8	40.8	7	10.1	66.8
목재, 종이 등	0.4	91.8	14	100	0.5	89.8	16	3.2	93.0
섬유	7.9	16.0	38	100	7.9	15.2	38	1.9	11.3
의류	11.4	3.4	32	100	11.6	2.8	32	3.7	0.8
가죽, 신발 등	4.3	38.4	55	100	3.8	39.1	55	2.5	23.3
비전기 기계류	1.2	66.3	10	100	1.2	65.2	10	13.6	80.6
전기 기계류	1.7	48.8	15	100	1.7	78.9	15	12.6	68.1
운송 장비	3.1	54.8	25	100	3.1	55.3	25	10.7	14.0
제품(manufactures)	2.1	49.6	32	100	2.4	44.9	32	6.3	72.0

주: 1) 양허품목 중 무세품의 비율

2)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한 관세 양허품목의 존재 비율

3) 전체 수입에서 본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World Tariff Profiles 2013

미국의 주요 관세율별 분포를 살펴보면, MFN 세율³²⁾은 해당 세율 적용 대상품목 중 36%의 관세율이 면제되며, 35%의 품목에 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GSP 세율은 68%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반면 MFN 세율이나 GSP, FTA 관세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 관세율의 경우 38%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35%를 초과한다.³³⁾

〈표 2-Ⅲ-3〉 미국의 관세율 분포(2013년 기준)

(단위: %)

관세율 구간	MFN 관세율 (WTO회원국)	일반(General) 관세율	GSP 세율	한-미 FTA 세율
무관세	36	8	68	85
0% 초과 5% 이하	35	1	11	9
5% 초과 10% 이하	19	3	11	4
10% 초과 15% 이하	6	2	5	1
15% 초과 20% 이하	2	7	2	0
20% 초과 25% 이하	1	13	1	0
25% 초과 30% 이하	1	8	1	0
30% 초과 35% 이하	0	20	0	0
35% 초과	1	38	1	0
N.A.	0	23	0	4

자료: www.wto.org

나. 관세율의 적용

미국 관세율표에서는 Column 1과 Column 2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관세율을 계기하고 있으며, 품목과 수입국에 따라 관세율의 적용이 달라진다. 미국 관세율표상 관

32)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관세 과세 등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WTO 회원국으로부터 해당물품의 수입 시 실제 부과하는 관세율임

33) 2013년도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세율의 종류와 적용 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림 2-III-1] 미국의 관세율표(예시)

1-2 Heading/ Subheading	Stat Suf- 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General	2 Special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0101.2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No.	Free	Free	
	10	Males.....	No.			
	20	Females.....	No.			
0101.29.00		Other.....	No.	Free	20%	
	10	Imported for immediate slaughter.....	No.			
	90	Other.....	No.			
0101.30.00		Asses.....	No.	6.8%	Free (A+ .AU,BH, CA,CL,CO,D,E, IL,JO,MA,MX, OM,P,PA,PE,SG) 2.7% (KR)	15%
0101.90		Other:				
0101.90.30	00	Imported for immediate slaughter.....	No.	Free	Free	
0101.90.40	00	Other.....	No.	4.5%	Free (A+ .AU,BH, CA,CL,CO,D,E, IL,JO,KR,MA, MX,OM,P,PA,PE, SG)	20%
0102		Live bovine animals:				
		Cattle:				
0102.2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No.	Free	Free	
	10	Dairy:				
	20	Male.....	No.			
		Female.....	No.			
	30	Other:				
	50	Male.....	No.			
		Female.....	No.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 HTS Online Reference Tool(<http://hts.usitx.gov/>)

1) Column 1(NTR 및 특혜관세율)

미국 관세율표상 관세율(Rates of Duty)의 Column 1은 일반(General)과 특별(Special) 관세율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 일반(General) 관세율은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³⁴에 있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세율로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는 ‘특별(Special)’ 난에 속한 국가들과 Column 2에 속하는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Column 1의 특별(Special) 관세율은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혜관세(GSP)와 미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협정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기

34) 종전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s, MFN)

타 특정 법령이나 협정 등에 의해 적용되는 특혜세율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해 일반관세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상 특혜를 제공하며, UN 경제이사회에 의해 선정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한-미 FTA 협정 세율을 포함해 NAFTA, 미국-호주 FTA, 미국-칠레 FTA 등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세율 및 미국-파나마 TPA, 미국-페루 TPA 등 무역촉진협정 세율은 특별 관세율로 적용되고 있다.

〈표 2-Ⅲ-4〉 특별 관세율(Special Rate of Duty)종류

코드	세율 종류
A, A*, or A+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 : 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A* : 특정 HTS 및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GSP 관세율 A+ : 최빈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AU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특별관세 조치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미국-바레인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에 따른 무관세조치 적용물품
CA	북미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물품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미국-콜롬비아 무역촉진협정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D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에 따라 특혜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물품
E or E*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물품 E : 시계 및 시계부분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E* : 특정물품 및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관세율
IL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이행에 관한 1985년 법률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of 1985)
J, J* or J+	안데스 무역특혜관세물품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eference and Drug Eradication Act)

〈표 2-III-4〉의 계속

코드	세율 종류
JO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역 이행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K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
KR	미국-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염료 중간체(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MX	북미자유무역협정, 멕시코 물품(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OM	미국-오만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 이행법(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미국-파나마 무역촉진협정(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미국-페루 무역촉진협정(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카리브연안무역협력법(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에 따른 특혜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물품
SG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자료: 미국관세율표 2014, www.clhs.co.kr

2)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일반특혜원산지규정(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은 수혜자로 지정된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해주는 특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4년 무역법(19 U.S.C. §2461)으로 승인, 1976년 발효되어, 저개발국가의 경제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된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으로 바로 수입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관세율표 상 'A'로 기재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표 2-Ⅲ-5〉 GSP 혜택 국가

구분	해당 국가 또는 지역
GSP 혜택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엔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브라자)콩고, (킨샤사),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지부티,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그루지야, 아프리카서의공화국,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레소토,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르도바, 몽골리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과푸아뉴기니, 과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사모아상투 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리남, 스위질란드,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발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비독립적인 GSP 적용지역	앙골라, 영국령인도양지역, 크리스마스섬(호주), 코코스섬 국제도, 포클랜드제도(말 비나)지브롤터 허드섬 및 맥도널드 제도, 몬트세라트, 니우에섬, 노퍽섬, 핏케언섬, 세인트헬레나, 토켈 라우터크스, 케이커스제도, 영국령버진군도, 윌리스푸투나제도, 웨스트 뱅크, 가자지구, 서부 사하라

3) 기타 법률

(1) 캐리비안분지 이니셔티브(CBI)와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CBERA)

카리브해분지 이니셔티브(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는 지정된 수혜자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상품의 면세를 허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카리브해분지 경제복구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에 의해 1984년 1월 1일 미국에 의해 시작·발효되었으며 정해진 만기일은 없다.

수혜 국가는 엔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몬트 세 라트,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령 버진 군도가 포함된다.

CBI 수혜자 국가의 대부분의 제품은 CBI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세율표에서 'E' 또는 'E*'로 식별된다. CBI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경우, 분류된 물품은 면세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CBI 프로그램의 지속시간에 따라 상품의 지정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수혜 국가의 목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CBI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국에서 제조, 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상품, 수혜국에서 상업적 측면에서 다른 제품이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상품은 수혜국에서 미국의 관세 지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고, 공식적인 통관이 요구되는 상업 선적인 경우에는 CBI하에 적합한 관세율이 요구되며, 원산지가 지정된 수혜국가임을 표시하거나 미국 관세청 양식 7501에 따른 관세 스케줄에 따라 해당 접두사로 문자 'E'를 삽입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부가가치 중 최소 35%가 수혜국에서 제조 시 원료의 가치 혹은 생산과정의 직접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푸에르토리코연방 또는 버진 아일랜드는 이런 요구의 수혜국으로 지정된 나라인데, 동 국가들에서 창출 가치도 또한 포함된다. 푸에르토리코가 아닌 미국의 관세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나 비용은 35%에 달하는 부가가치 요구사항에 계산될 수 있으나 수입된 제품의 감정 가액의 최대 15%까지 계산될 수 있다. 제품이 1차 가공으로 상업적 용도에 있어서 재생산되거나 다른 제품이 되는 경우, 비수혜국으로부터 수혜국으로 수입된 재료의 비용이나 가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35%의 부가가치원칙이 적용된다.

앞서 열거된 기존의 수칙에 더해 1990년 the Customs and Trade Act는 CBI 면세 자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였다. CBI 수혜국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조, 생산된 제품들이 그 후에도 면세 처리를 받으려면 제품들은 수혜국에서 미국의 관세 영역으로 직수입되어야 하고, 수혜국에서의 가공으로 가치가 향상되거나 상태가 개선되어야 하며, 수혜국의 제품에 쓰인 재료는 반드시 미국이나 수혜국의 제품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외 수혜국에서의 자재나 원료(물 제외)가 미국에서 조립되고 전반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제품은 면세로 수입될 수 있다. 면세대우는 자재나 원료가 수혜국으로 직수출되어 완제품이 미국의 세관지역으로 직수입되면 적용된다. 캐리비안분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근거 규정은 19 C.F.R §10.191-10.198에 두고 있다.

(2) 안데스무역특혜법(ATPA)/안데스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ATPDEA)

안데스무역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 ATPA)은 지정된 수혜 국가의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면세를 적용한다. 미국에서는 1991년 12월 4일에 ATPA를 제정했으며 2001년 12월 4일에 만료되었다. 이후 Trade Act of 2002가 2001년 12월 4일에 법으로 지정되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ATPA가 갱신되었고, 새로운 안데스무역촉진및마약퇴치법(ATPDEA)이 소개되었다. ATPDEA는 ATPA 수혜 국가에서 섬유에 대한 몇 가지 무역 혜택을 확대하였다. 첫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가 ATPA/ATPDEA 수혜국으로 지정되었다. 둘째, ATPA가 갱신되었을 때, 법의 일부는 이전 ATPA에서 제외했던 상품에 대한 특혜를 ATPDEA에서 확장했다. 가죽 소재, 시계 및 시계 부품, 석유 및 석유 파생상품, 호일이나 유연한 포장재로 포장된 참치, 일부 신발, 특정 섬유 및 의류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특정 섬유 및 의류, 립주, 태피아슬과 같은 많은 제품은 특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참치 캔, 시럽, 설탕 및 설탕 제품 등의 농산물에는 관세율 쿠티를 적용한다.

모든 ATPA 국가들에서의 비섬유 제품은 관세율표에서 'J'로 표기된다. 일부 ATPA 국가들의 제품들은 'J*'로, 확장된 안데스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의 우대대우를 취득한 상품들은 'J+'로 표기된다.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은 면세 또는 제약 없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특혜 자격이 있는 섬유 및 의류 상품의 종류는 관세율표 XXI, 98장에 나열되어 있다.

비섬유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만 ATPA/ATPDEA법 면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혜국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혹은 다른 물품으로 변환되거나, 수혜국에서 미국의 관세 지역으로 직수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품의 감정가액의 최소 35%는 ATPA 또는 CBI에 소속된 수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용(또는 가치)이나, 생산과정에 드는 비용에 해당되어야 한다. 푸에르토리코 연방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이 경우 수혜국에 해당된다. 미국(푸에르토리코 연방은 해당하지 않음)의 세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나 비용은 35%의 요구부가가치에 계산되지만, 이는 수입제품의 감정가액에 최대 15%까지만 적용된다.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될 수 있다. 특혜를 받는 섬유 및 의류 상품의 종류는 통일관세율표 XXI, 98장에 나

열되어 있다.

(3)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GSP(일반관세특혜제도)하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특정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GSP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이다. 2000년 5월 18일 제정된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P.L. 106-200, 114 Stat. 251)의 Title I 으로, AGOA는 2000년 10월 1일 발효되었고, 그 후 Trade Act of 2002로 개정되었다. 확대된 GSP 대우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유효하다. AGO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섬유 및 의류 수입물품에 면세와 수량 제한면제가 제공된다. 단, 이러한 특혜 적용대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비섬유, 비의류 제품에 대한 AGOA의 세율은 관세율표상 'D'로 표기되어 있다. 섬유와 의류에 관한 요구는 98장 품목번호를 입력한다. 세부 사항은 HTS 98장 하위항목 XIX에서 찾을 수 있다. 수혜대상국은 (1)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수혜국가, (2)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저개발 아프리카 수혜국가, (3) 섬유 및 의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수혜국가다. 의장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재 또는 앞으로의 수혜국 자격여부를 매년 관찰, 검토하므로, 해당 국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지정 내용은 관세율표의 General Note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AGOA 수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관세율표의 General Note 16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저개발 아프리카 수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HTS 98장, 하위항목 XIX, U.S. Note 2(d)에, 섬유 및 의류 수입 비자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은 해당품목을 HTS 98장, 하위항목 XIX, U.S. Note 1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장된 GSP 실행으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Trade Act of 1974)은 대통령에게 GSP 제도하에 기존에 배제된 특정 물품에 대해 면세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시계 및 손목시계, 특정 전자제품, 특정 철강 및 금속, 특정 반제품 및 반제조 유리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수혜국가를 위해 면세처리 가능제품으로 지정되었다.³⁵⁾

35) AGOA하에 면세 자격이 부여된 전체 제품목록은 홈페이지(www.ago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수입 면세 대우를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1)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수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 된 제품, (2) 해당 국가로부터 미국 관세 영역까지 직수입된 것, (3) 부가가치 요건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4) 대통령이 해당제품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수혜국에서 수입된 수입 민감 품목임이 아니라 판단한 경우이다.

AGOA하에서 섬유 또는 의류 물품이 특혜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수혜국이 섬유/의류 수혜자로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국가의 불법 환적(유효 비자 시스템을 포함)과 절차와 요구의 이행 준수를 위한 AGOA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뤄진다. 미국 통상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특혜대우 자격이 있는 국가를 선정하면, 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해 게재한다.³⁶⁾

AGOA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섬유와 의류 수입품에 대해 면세 및 할당량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 이러한 혜택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의류의 총량과 무관하게 적용가능하다. 특혜를 받는 섬유와 의류의 여섯 가지 부류는 HTS 98장, 하위항목 XIX에 제시되어 있다.

AGOA에 관한 규정은 19 C.F.R. §10.211-10.217에 두고 있다.

(4) 미국-카리브해분지 무역파트너십법(CBTPA)

미국-카리브해분지 무역파트너십법(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은 CBERA하의 카리브해 및 중앙아메리카 국가들로 무역의 혜택을 확대한다. CBTPA하에서는 특정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으로 관세와 수량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CBTPA는 NAFTA 세계 기준 또한 확대하여 CBERA 무관세 수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섬유 물품까지 포함한다. CBTPA의 무역 혜택은 2000년 10월 1일을 시작으로 적용된다. 미국 대통령은 The Trade Act of 2002 무역법을 통해 CBTPA 213절 (b)의 단락(2) (A) 섬유 및 의류 공급 부분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CBTPA의 수혜국가 명단은 프로그램이 지속

36) 이 정보는 www.ustr.gov에서와 www.agoa.gov에서 확인가능하다.

되는 동안 변경 가능하며, 수혜국가로 지정받은 현 국가 명단은 관세율표 주(General Note) 17 내용에 나타나 있다. CBTPA 지정 수혜국은 보다 향상된 무역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CBTPA 혜택을 얻기 위해서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른 특정 서류 및 절차, 그리고 요구 조건이 필히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섬유 및 의류 물품은 미국에 관세 및 수량제한 없이 수입 가능한데 이를 위해 CBTPA 국가들은 NAFTA 5장의 요구사항 및 관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한다.³⁷⁾ 이를 위해 사전에 미국 관세청 규정 및 관세율표 일반 주 17의 내용을 상품 수입 전에 참고하여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섬유 및 의류 물품을 제외하고, 이전 CBI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상품들에 대해 CBTPA에 따른 NAFTA 관세 우대를 허용한다. 따라서 신발, 통조림 참치, 수입 석유 및 석유 제품, 시계 및 시계 부품, 핸드백, 가방, 플랫 상품, 작업용 장갑 및 가죽 의류 등이 수입될 때, CBTPA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면 NAFTA에 따라 시행되는 멕시코 제품의 관세율 인하와 동일한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 CBTPA 우대 물품들은 HTS 1장 97상에서 하위 열에 나타나는 관세율 표기가 'R'인 물품인 경우로 이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무관세' 이외의 관세율, 즉 'E'나 'E*'로 표기된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정 주류 및 주정음료에 대해서는 CBTPA 무관세 우대를 적용한다. 이때 대상 주류는 캐나다 영토, CBTPA 수혜국, 혹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지역 내에서 재배, 제조된 럼주여야 한다. 그 밖의 CBTPA에 대한 규제 및 규정은 19 C.F.R. §10.221-10.228 그리고 §10.231-10.237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Column 2(Non-NTR)

Column 2의 세율은 테러 국가 등 적성 국가에 적용이 되며, 현재는 북한, 쿠바, 라오스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본 세율이 적용된다.

본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Tariff Classification Act of 1962의 section 401,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section 231 또는 257(e)(2), Trade Act of 1974의

37) 특혜대상 섬유 및 의류 물품 목록은 HTS 98장 하위 XX장 참조

section 404(a) 또는 그 밖의 법 혹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

Column 2의 세율은 Column 1의 일반 관세율과 동일한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관세율보다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AD, Antidumping Duty)는 수출자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인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계 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에서 자국의 수출 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한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미국 CBP는 부당하게 가격이 낮거나,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되어 판매되는 제품을 찾아 단계별로 확인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면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며,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무역위원회(ITC),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각각 반덤핑과 상계 관세와 관련하여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상무부는 상품이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치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그 과세율을 책정한다. ITC는 제품이 미국 산업에 특정 피해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미국 CBP는 상무부가 평가한 특정 수입재로 인한 산업피해 정도에 기초하여 실제 의무 관세부과율을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설정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우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는 일반적으로 상무부의 청원 과정을 통해 시작된다. 상무부는 국내 산업 또는 노동조합 또는 산업 협회 등의 이해 관계자의 청원에 의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ITC의 피해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필히 조사 청원과 동일 날짜에 해당 평가요청을 상무부와 ITC에 제기해야 한다. 만일 청원

이 필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무부와 ITC는 독립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예비 및 최종 결정을 산출한다.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 판정을 내리며, 적정 과세를 책정한다. 그 밖에,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평가가 요청되는 경우, ITC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최초, 예비 결정을 내린다. 결과가 음성인 경우, ITC에 의한 추가 조사나 조치는 없다. 그러나 양성인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판매 및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상무부의 추가검토나 공공 분석이 이루어진 후, 상무부는 최종과세명령을 내리며, 양성 결과인 경우, 조사와 덤핑 수익(공정 시장 가치와 미국 가격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현금 예금 및 채권을 요구하기 위해 상품의 입고를 중지시키도록 CBP에 지시한다. 이 단계 후 ITC의 최종 피해 결정이 내려지며, 이 또한 양성 결과인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 명령을 내린다. 이때 상무부는 미국 CBP에 징수를 지시하는데, 새로운 화주, 추정 관세에 해당하는 현금 예금에 대한 매우 제한된 예외를 둔다. 그리고 상무부나 ITC의 최종 음성 결정으로 조사가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두 기관은 조사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결정 사항을 행정 관보에 알린다.

매년 반덤핑, 상계관세 명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관계된 개별 생산자나 재판매자와 명령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 이 검토는 일반적으로 명령 이전 12개월에 해당하며, 첫 검토의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혐의가 있는 전 기간을 포함한다. 연례 검토가 요청되지 않는다 해도 상무부는 현금 및 상품에 대한 과세를 압수하도록 CBP에 지시한다. 입항일 기준 현금 및 채권율에 기초하며, 지속적으로 추후 입항에 대한 부과율도 요구한다. 연례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상무부는 기존 조사와 유사한 검토를 지휘한다. 과세와 예금에 대해 수정된 부과율을 발부할 수 있으며, 관세청이 최종 검토 결과에 따른 관세를 징수하도록 지시한다.

〈표 2-Ⅲ-6〉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현황

	HS 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6.30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AD (규제중)	1991.10.04
2	7306.40	스테인리스 용접강관(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AD (규제중)	1991.11.01
3	7221.00	스텐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AD (규제중)	1997.08.26
4	7219.31, 32, 33, 34 외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AD/CVD (규제중)	1998.06.30
5	7208.40, 51, 52, 53, 90 /7210.70, 90, 7211.13, 14, 90 /7212.40, 50/7225.40, 50, 99/7226.91, 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AD/CVD (규제중)	1999.03.16
6	5503.20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	AD (규제중)	1999.04.30
7	3905.30	폴리비닐 알코올(PVA: Polyvinyl Alcohol)	AD (규제중)	2002.09.26
8	7312.10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AD (규제중)	2003.02.27
9	8202.39	다이아몬드절삭공구(Diamond Swabblades and Parts Thereof)	AD (규제중)	2005.05.03
10	7306.61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AD (규제중)	2007.06.28
11	8504.23/90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AD (규제중)	2011.07.14
12	8450.20, 8450.11, 8450.90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AD/CVD (규제중)	2012.01.09
13	7304.29, 7305.20, 7306.29	유정용 강관(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AD (조사중)1)	2013.07.10
14	7225.50, 7225.99, 7226.92, 7226.99, 7225.19, 7226.19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AD/CVD (조사중)	2013.10.22
15	7226.11, 7225.11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AD (조사중)	2013.10.31
16	7317.00	강철 못(Steel Nail)	AD/CVD (조사중)	2014.06.19

주: 2014년 8월 22일, USITC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음
 자료: KITA 통상·수입규제(<http://antidumping.kita.net>), 2014년 8월 기준

2014년 8월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 물품에 부과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총 12건으로, 모두 반덤핑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중 3건은 상계관세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규제 대상물품의 경우 철강 분야가 다수이며, 전자제품, 화학제품 및 섬유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강관, 전기강판 및 강철못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와 관련해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IV. 감면과 환급

1 관세감면제도

각국은 자국의 산업, 경제 또는 정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특정 용도를 위해 수입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를 면제해 주는 관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관세감면제도로 일시담보수입면세(TIB)를 들 수 있으며, 본 제도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 시 담보를 제출하여 무관세 통관을 하였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물품을 수출하면 담보를 되돌려주고 있다.

그 밖에 정부 물품, 국제기구의 수입물품, 종교 용품, 교육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관세감면 물품의 품목 분류에 있어서, 해당 품목이 해당되는 HTSUS 제1류 내지 제97류에 분류하지 않고, 제98류 또는 제99류로 따로 분류하여 통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HS 협정상 제98류와 제99류는 유보류이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류임을 감안할 때, 제98류 및 제99류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관세율표 및 감면 제도상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19 C.F.R §§10.1~10.183 및 19 C.F.R §158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감면제도별 감면의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가. 일시담보수입면세(TIB)

일시담보수입면세(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이하 TIB)는 전시회용 물품 등 비판매 목적의 물품이 미국 내 소비되지 않고 추후 일정 기간 내 재수출될 것임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bond)를 제출하고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TIB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19 C.F.R. §10.31 내지 10.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B로 반입된 물품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어야 하는데, 수출은 기존 물품이 수입되었던 항구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없이 없으며, 수출 이행 기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 시 해당 물품에 대해 추정되는 관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수출 이행 시 담보 제공자에게 되돌려 준다. 단, 기한 내 수출 미 이행 시 세액의 2배를 징수한다.

TIB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HTSUS 98류(Chapter 98) 13절(Subchapter X III)에 해당되는 9813.00.05 내지 0913.00.75에 계기된 14가지의 품목으로, 여기에는 수리용 물품과 전시 및 대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물품이 포함된다. TIB 면세 적용에 있어 미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면세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IB로 물품을 수입한 자가 물품을 사용하고 난 후 기한 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그 수출 사실을 과거에 물품을 수입 통관하였던 세관에 증명해야 하며, B/L상 상품명세는 수입 시의 entry Summary(7501)상의 제품 일련번호, 기타 요소 등 상품명세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표 2-Ⅳ-1〉 TIB 대상 물품(HTSUS 9813)

	품목	HTSUS	감면 조건
1	수리용 물품	9813.00.05	수리(repair), 대체 또는 가공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2	의류 마네킹	9813.00.10	여성 의류 제조자에 의해 수입되는 의류 마네킹(model)
3	삽화 모형	9813.00.15	삽화가(illustrator) 또는 사진작가가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물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모형(model)
4	주문용 샘플	9813.00.20	상품의 주문 및 거래 유도를 위한 샘플
5	재생 검사 물품	9813.00.25	재생(reproduction) 검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그러한 검사와 재생을 위한 물품, 영화 광고 필름
6	연구용 물품	9813.00.30	실험 및 연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7	경기용 차량 등	9813.00.35	경기 및 대회참가를 위해 비거주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보트 등 탈 것
8	철로 정비용품	9813.00.40	철로의 장애물 제거, 방화, 긴급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기관차 및 기타 철로 장비 용품
9	용기 및 포장	9813.00.45	압축가스용기 및 기타 물건의 용기와 포장
10	장비, 도구	9813.00.50	비거주자의 체류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전문 장비, 도구 및 그들의 수리용 구성 부품과 캠핑 장비
11	일시 생산용품	9813.00.55	수출물품 생산 관련, 특별히 디자인된 일시 사용물품
12	대회 참가 동물	9813.00.60	전시회, 대회 참가 등을 위한 동물과 가금류 및 관련 장비
13	예술 및 과학용품	9813.00.70	전시용, 예술 또는 과학 장려용으로 수입되는 미술작품, 조각, 과학용 기재자로, 아티스트, 강의자, 과학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전시용 자동차	9813.00.75	전시 목적의 자동차, 자동차 새시 및 바디, 그들의 단면을 자른 것으로, 완성 또는 미완성 여부는 불문함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www.usitc.gov)

나. 감면 대상 물품(제98류)

미국의 관세율표는 HS 협약상 유보류인 제98류를 ‘특별 분류 규정(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으로 명명하고, 22개의 절(subchapter)로 구성하여 주로 면세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HTSUS 제9801호 내지 제9822호 내에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해 특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

으로, 외국에서 가치 향상 또는 제조 공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9801.00.10)

- 외국에 일시적으로 방목(pasturage)을 위해 나갔다가 8개월 이내에 되돌아오는 동물로, 새끼(offspring)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도 포함(9801.00.90.00)
- 미국 내 제작된 사진 필름 및 건판(dry plates)으로써 외국에서 공개될 물품. 현상 여부는 불문하며, 상업용 영화는 제외함(9802.00.20.00)
- 하자 보증을 위해 수리 또는 대체(alteration)되기 위해 수출되었던 물품 등으로 가치 향상 또는 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진 물품(9802.00.40) 단, 특별(special) 관세는 면세하나, 일반 관세는 수리 또는 대체에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과세함
-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케이스(9803.00.50)
- 개인 사용 물품(9804 내지 9807)
-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정 물품(9808), 외국 정부 물품 또는 국제기구의 수입 물품(9809), 종교, 교육, 과학 및 기타 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9810)
- 견본 상품(9811)
- 담보를 제공한 장기 전시회용 물품(9812) 등

다. 일시 세율 변경 물품(제99류)

미국에서는 제99류를 ‘일시적인 규정, 무역 협정에 따른 일시적 수정,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에 의한 기타 수입 제한’을 위한 류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즉, 임시적인 법안, 무역관련 법안에 따른 임시세율 조정 등과 관련된 관세율이 열거되어 있어, 임시적으로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무역 법안에 의한 관세율의 조정,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관련 내용이 규정된다.

99류는 2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제9901호 내지 제9920호 중 현재 제9905호 내지 제9907호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일시 규정, 대상 물품: 에틸알코올 및 ETBE(Ethyl tertiary butyl ether) 등(제9901호)

- 일시적 세율 인하 품목(제9902호)³⁸⁾
- 무역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정된 세율: 특정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육류, 햄, 치즈 등 계기된 품목에 대해 100% 또는 200%의 세율을 적용(제9903호)
- 농업 협정에 따른 셰이프가드 조치 및 농업조정법 제22조에 따른 수입 제한(제9904호)
-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 중 NAFTA를 제외한 13개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수정 관세율 계기(제9908호 내지 제9920호)

라. 일시적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법안(MTB)

미국에서는 통상정책을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자들은 국회의원에게 특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MTB(Miscellaneous Tariff (or Trade) Bill)라는 일괄 법안(Omnibus Bill)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대부분은 화학 및 원재료 또는 기타 제조업의 부분품들이다.

본 제도는 1983년 제97기 국회에서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입법화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 3년간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다만 MTB는 매 회기(2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MTB 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 중 중요한 요건으로는 관세 세수 손실이 50만달러 이하이면서, 각 MTB 조항에 대해 다른 국회의원 또는 국내 생산자들 간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MTB는 국회의원들이 수입업자들의 의견 수렴 후,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소위원회(subcommittee)는 제출된 개별 법안 발의 및 요건 검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부인 상무부, CBP 및 무역대표부의 최종 분석 및 검토를 거친다. 하나의 일괄 법안은 하원 전체의 투표를 거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경우 대통

38) 2014년 현재 적용 대상 품목 없음

령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마. 일시수입 통관증서(A.T.A. Carnet)

프랑스어와 영어의 결합 단어인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의 약자인 A.T.A.와, 프랑스어로 증서(표)라는 뜻을 지닌 carnet의 합성어인 A.T.A. Carnet는 일시 수입 통관 증서로, 임시적으로 면세 수입하는 경우 사용되는 국제적인 통관 서류이다. 본 제도는 1961년 벨기에에서 채택되어 1963년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84개국이 본 협약에 가입 중이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수입하였다가 수출될 전문 장비, 상업 견본, 광고 물품 등에 A.T.A. Carnet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이나 음식 등의 소비재, 폭발물, 처분용 물품의 수입에는 본 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

본 증서에 의해 일시 수입된 물품은 증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미국에서 A.T.A. Carnet를 발급하는 기관은 USCIB(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이다.

미국에서는 관련 규정을 19 C.F.R §§114.0~114.34에 두어, Carnet의 종류, 이용요건, 재수출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2-IV-1] A.T.A.Carnet 서식



USCIB
Issuing Association
Association émettric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CARNET A.T.A. POUR L'ADMISSION TEMPORAIRE DE MARCHANDISES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CONVENTION DOUANIÈRE SUR LE CARNET A.T.A. POUR L'ADMISSION TEMPORAIRE DE MARCHANDISES
CONVENTION ON TEMPORARY ADMISSION / CONVENTION RELATIVE À L'ADMISSION TEMPORAIRE

(Before completing the Carnet, please read Notes on cover page 3. / Avant de remplir le carnet, lire la notice en page 3 de la couverture.)



INTERNATIONAL GUARANTEE CHAIN
CHAÎNE DE GARANTIE INTERNATIONALE

A
T
A

C
A
R
N
E
T

A
T
A

<p>A. HOLDER AND ADDRESS / Titulaire et adresse</p>	<p>G. FOR ISSUING ASSOCIATION USE / Réservé à l'association émettrice FRONT COVER / Couverture</p> <p>a) A.T.A. CARNET No. US 89/08-SAMPLE Carnet A.T.A. N°</p> <p>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0 <small>Nombre de feuilles supplémentaires</small></p>
<p>B. REPRESENTED BY* / Représenté par*</p>	<p>b) ISSUED BY / Délivré par</p> <p style="text-align: center;">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p>
<p>C. INTENDED USE OF GOODS / Utilisation prévue des marchandises</p>	<p>c) VALID UNTIL / Valable jusqu'à</p> <p style="text-align: center;">year month day (inclusive) <small>année mois jour (inclus)</small></p>

*
U
S
C
I
B
A
T
E
R
N
E
T
I
S
S
U
E
D
I
N
S
E
A
T
E
R
N
A
L
C
O
U
N
T
R
I
E
S

P. This Carnet may be used in the following countries/customs territories under the guarantee of the associations listed on page 4 of the cover:
Ce carnet est valable dans les pays/territoires douaniers ci-après, sous la garantie des associations reprises en page quatre de la couverture.

<p>EUROPEAN UNION</p> <p>AUSTRIA (AT) FINLAND (FI) LATVIA (LV) ROMANIA (RO)</p> <p>BELGIUM (BE) FRANCE (FR) LITHUANIA (LT) SLOVAKIA (SK)</p> <p>BULGARIA (BG) GERMANY (DE) LUXEMBOURG (LU) SLOVENIA (SI)</p> <p>CYPRUS (CY) GREECE (GR) MALTA (MT) SPAIN (ES)</p> <p>CZECH REPUBLIC (CZ) HUNGARY (HU) NETHERLANDS (NL) SWEDEN (SE)</p> <p>DENMARK (DK) IRELAND (IE) POLAND (PL) UNITED KINGDOM (GB)</p> <p>ESTONIA (EE) ITALY (IT) PORTUGAL (PT)</p>	<p>OTHER COUNTRIES</p> <p>ALGERIA (DZ) ICELAND (IS) MAURITIUS (MU) SINGAPORE (SG)</p> <p>ANDORRA (AD) INDIA (IN) MONGOLIA (MN) SOUTH AFRICA (ZA)</p> <p>AUSTRALIA (AU) ISRAEL (IL) MOROCCO (MA) SRI LANKA (LK)</p> <p>BELARUS (BY) IVORY COAST (CI) NEW ZEALAND (NZ) SWITZERLAND (CH)</p> <p>CANADA (CA) JAPAN (JP) NORWAY (NO) THAILAND (TH)</p> <p>CHILE (CL) KOREA (KR) PAKISTAN (PK) TUNISIA (TN)</p> <p>CHINA (CN) LEBANON (LB) RUSSIA (RU) TURKEY (TR)</p> <p>CROATIA (HR) MACEDONIA (MK) SENEGAL (SN) UKRAINE (UA)</p> <p>GIBRALTAR (GI) MALAYSIA (MY) SERBIA (RS) UNITED STATES (US)</p> <p>HONG KONG, CHINA (HK)</p>
---	--

The Holder of this Carnet and his representative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customs territory of departure and the countries/customs territories of importation. / A charge pour le titulaire et son représentant de se conformer aux lois et règlements du pays/territoire douanier de départ et des pays/territoires douaniers d'importation.

H. CERTIFICATE BY CUSTOMS AT DEPARTURE
Attestation de la douane, au départ

a) Identification marks have been affixed as indicated in column 7 against the following items No(s). of the General List
Apposés les marques d'identification mentionnées dans la colonne 7 en regard du (des) numéro(s) d'ordre suivant(s) de la liste générale.

b) **GOODS EXAMINED*** / Vérifié les marchandises*
Yes / Oui No / Non

c) **Registered under Reference No.***
Enregistré sous le numéro*.

d) _____

Customs Office / Bureau de douane Place / Lieu Date (year/month/day) / Date (année/mois/jour) Signature and Stamp / Signature et timbre

I.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and issuing Association Stamp
Signature du délégué et l'Association émettrice


Curt Wilson
Signature of Association / Signature de l'Association

Place and Date of issue (year/month/day)
Lieu et date d'émission (année/mois/jour)

J. _____

X _____ X
Signature of Holder / Signature du titulaire



2 관세환급(Drawback) 제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및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789년부터 시행된 관세 환급제도는 수입 당시 관세 등을 납부하였던 수입 물품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완성품(또는 부분적 완성품)을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한 경우, 이의 수출 또는 멸각(destroy) 시 수입 시점에 납부했던 관세, 수수료, 내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면세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등에 부과된 관세금액의 99%까지를 환급해 주고 있다.³⁹⁾

관세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입 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5년 이내에 수출해야 하며, 수출 후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환급과 관련된 규정은 19 U.S.Code §1313에 두고 있으며,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19 C.F.R PART 191(§§191.0~191.195)에 규정되어 있다.

가. 관세환급의 형태

19 U.S.Code §1313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환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크게 3가지로 ① 제조품 관세환급, ② 미사용품 관세환급, ③ 인수 거절 상품의 관세환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품 관세환급(Manufacturing drawback)⁴⁰⁾

제조 과정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 또는 멸각되는 경우의 과세환급을 말한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상품 제조업자나 생산자가 상품을 수령한 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환급 대상 물품은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출되거나 멸각되어야 한다.

39) 원종학·김진수,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07, 19 U.S.Code §1313(a), (b)

40) 19 U.S. Code §1313 (a) (b), 19 C.F.R SUBPART B (§191.21~§191.28)

본 환급 제도에서는 수입 원재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대체(substitution) 사용이 가능한데, 원재료의 대체 사용이란 수출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과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미국 내 물품, 즉 동종·동질물품 혹은 HS 코드 중 8자리가 동일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사용분만큼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대체 환급 제도).

2) 미사용품 관세환급(Unused-merchandise drawback)⁴¹⁾

수입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어떤 제조 공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수출되거나 멸각된 경우 미사용품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품 관세환급에 있어서도 대체 원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수입 물품이 수입일을 기점으로 3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3) 인수 거절 상품의 관세환급(Rejected-merchandise drawback)⁴²⁾

① 샘플 또는 상품 명세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② 수취인의 동의 없이 운송된 물품, ③ 수입 시점에서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인수가 거절된 물품이 수출되거나 멸각된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물품은 세관의 관할에서 반출된 지 3년 이내에 다시 세관구역으로 반환해야만 한다.

4) 기타 환급

19 U.S.Code §1313에는 위 환급규정 이외에도 방향 추출물(Flavoring extracts), 어류 보존 처리용 수입 소금, 제트항공 엔진(Jet aircraft engines), 선박 건조 원재료, 석유제품 등에 대해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 등이 부과된 알코올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각종 방향추출물, 조제약품 또는

41) 19 U.S.Code §1313 (j), 19 C.F.R SUBPART C (§191.31~§191.38)

42) 19 C.F.R SUBPART D (§191.41~§191.44)

화장품(medicinal or toilet preparations)의 수출에 대해서는 그 사용된 알콜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 등과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산 알콜올로 향수, 화장품, 기타 물품 수출 시 미국산 알콜올에 대해 납부했던 내국세를 환급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생선 또는 육류에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해 소금 수입 후 동 생선 또는 육류 수출 시 사용 소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한다.

외국 소유 선박이나 항공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입한 원료에 대해서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출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하며, 외국에서 제작된 제트 엔진이 미국에서 수리되는 경우에 이때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존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관세환급 절차

원칙적으로 환급의 신청은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멸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세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대재해(major disaster)로 인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³⁾

관세환급의 유형별 청구인은 다음과 같다.

제조품 관세환급은 수출자(멸각자)가 특정 수출이나 멸각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제조업자, 생산자, 수입자, 중간 당사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면 환급청구의 자격은 수출자(또는 멸각자)에게 있다. 미사용품 관세환급에서는 환급 청구인이 수출자(또는 멸각자)가 된다. 인수 거절 상품의 관세환급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환급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환급청구인이 수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청구인이 수입자에 의해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환급 신청서(Drawback Entry, CBP Form 7551)
-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또는 인수증명서(certificate of delivery)

43) 19 U.S.Code §1313 (r)

- 수출 또는 멸각의 증빙
- 환급에 해당되는 수입신고 번호 등

관세환급의 방법은 환급 대상 물품에 따라 달리 규정되며, 환급 대상이 제조품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환급 규정으로 일반 제조품 환급규정(General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s)과 특별 제조품 환급규정(Specific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s)이 있다.

일반 제조품 환급규정은 19 C.F.R 191 Appendix A에 규정된 환급 방법으로, 직물 원료, 복합 부품, 아마씨(flaxseed), 모피와 모피제품, 오렌지 주스, 석유 제품, 원당(Raw Sugar), 일반 설탕, 철강, 직조품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특별 제조품 환급규정은 19 C.F.R 191 Appendix B에 규정되어 있는 환급 방법으로, 대상 제조품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 제조품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환급의 신청은 서류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공식 신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심사는 전산으로 이루어진다.

환급금의 지급방법은 신속지급(accelerated payment)과 일반지급(Manual payment)으로 구분되는데, 신속지급의 경우 청구인은 환급청구의 최종심사와 청산 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을 원하는 청구인은 관세청에 신속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액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bond type 1A)를 제공해야 한다. 환급금의 지급은 담보의 제출 시 3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심사와 청산이 종결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상대적으로 장기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서류 보관 의무와 관련, 관세환급의 신청 및 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는 관세환급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⁴⁴⁾

44) 19 C.F.R §191.15 Record keeping

[그림 2-IV-3] 제조 및 인수 증명서(CBP Form 7552)

OMB 1651-0075 Exp. 12/31/201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LIVERY CERTIFICATE FOR PURPOSES OF DRAWBACK 19 CFR 191					<input type="checkbox"/> Certificate of Delivery							
<small>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This request is in accordance with the Paperwork Reduction Act. We ask for the information in order to carry out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for refund of taxes on domestic alcohol (if applicable), and to determine the proper amount of drawback. Your response is required to obtain or retain a benefit. The estimated average burden associated with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33 minutes per respondent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Comments concerning the accuracy of this burden estimate and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directed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sset Management, Washington, DC 20226, an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perwork Reduction Project (1651-0075) Washington, DC 20503.</small>					<input type="checkbox"/> Certificate of Manufacture and Delivery		1. CM&D No.	2. Port Code	3. DBK Ruling No.			
							4. Type Code	5. ID No. of Transferor				
6. FROM TRANSFEROR: Company Name and Complete Address				7. TO TRANSFEREE: Company Name and Complete Address				RECEIVED DAT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IMPORTED DUTY PAID, DESIGNATED MERCHANDISE OR DRAWBACK PRODUCT												
8. Use	9. Import Entry or CM&D Number	10. Port Code	11. Import Date (MM/DD/YYYY)	12. CD	13. (If using 1313(b)) A. Date(s) Received B. Date(s) Used		14. Date Delivered	15. HTSUS No.	16. Description of Merchandise (Include Part/Style/Serial Numbers)	17. Quantity & Unit of Measure	18. Entered Value Per Unit	19. 100% Duty
21. Contact Name and Address							PREPARER Phone Number _____ Ext. _____ FAX Number _____			20. Total		

CBP Form 7552 (07/08)

22. Quantity & Description of Merchandise Used		23. Date(s) of Manufacture (MM/DD/YYYY)	24. Description of Articles Manufactured or Produced (Include Part/Style/Serial Numbers)		25. Quantity & Unit of Measure	26. Date Delivered
27. Duty Available on Manufacture Articles (Total of Duties in Block 20)		28. Drawback Available Per Unit of Measure on Manufactured Article		29. Factory Location		
30. Exhibits to be attached for the following: <input type="checkbox"/> Relative Value <input type="checkbox"/> Petroleum <input type="checkbox"/> Domestic Tax Paid Alcohol <input type="checkbox"/> Piece Goods <input type="checkbox"/> Waste Calculation <input type="checkbox"/> Recycled <input type="checkbox"/> Harbor Maintenance Fee <input type="checkbox"/> Merchandise Processing Fee <input type="checkbox"/> Other Taxes/Fees						
31. STATUS - Import Entries listed on this form are subject to (if CD, identify on this form; if CM&D, identify on coding sheet): <input type="checkbox"/> Reconciliation <input type="checkbox"/> 19 USC 1514, Protest <input type="checkbox"/> 19 USC 1520 (c)(1) <input type="checkbox"/> 19 USC 1520 (d)						
DECLARATIONS						
<input type="checkbox"/> The merchandise transferred on this CD is the imported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The merchandise transferred on this CD is pursuant to 19 U.S.C. 1313(j)(2) and will not be designated for any other Drawback purposes. <input type="checkbox"/> The article(s) described above were manufactured or produced and delivered as stated herein in accordance with the Drawback ruling on file with CBP and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put type="checkbox"/> This Certificate of Delivery is a subsequent transfer and the merchandise is the same as received.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statutory requirements that all records supporting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are to be retained by the issuing part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payment of the related drawback entry. Assignment of Rights is transferred when this form is prepared as a CD or CM&D. I declare that according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of the statements in this document are correct and I am fully aware of the sanctions provided in 18 U.S.C. 1001 and 18 U.S.C. 550 and 19 U.S.C. 1593a.						
<input type="checkbox"/> Member of Firm with Power of Attorney <input type="checkbox"/> Officer of Corporation <input type="checkbox"/> Broker with Power of Attorney						
Printed Name and Title				Signature and Date		

CBP Form 7552 (07/08)

V. 수출입 요건과 승인

수입 규제는 주로 소비자 보건과 안전, 국내 동식물보호를 위해 미국정부와 관련 부처가 미국 관세청과의 협력하에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통관시에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고 포장, 라벨링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통관단계에서 관세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수입금지 또는 수입승인제도와, 통관된 물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각 관련 기관에서 원산지 및 일정 수준의 품질표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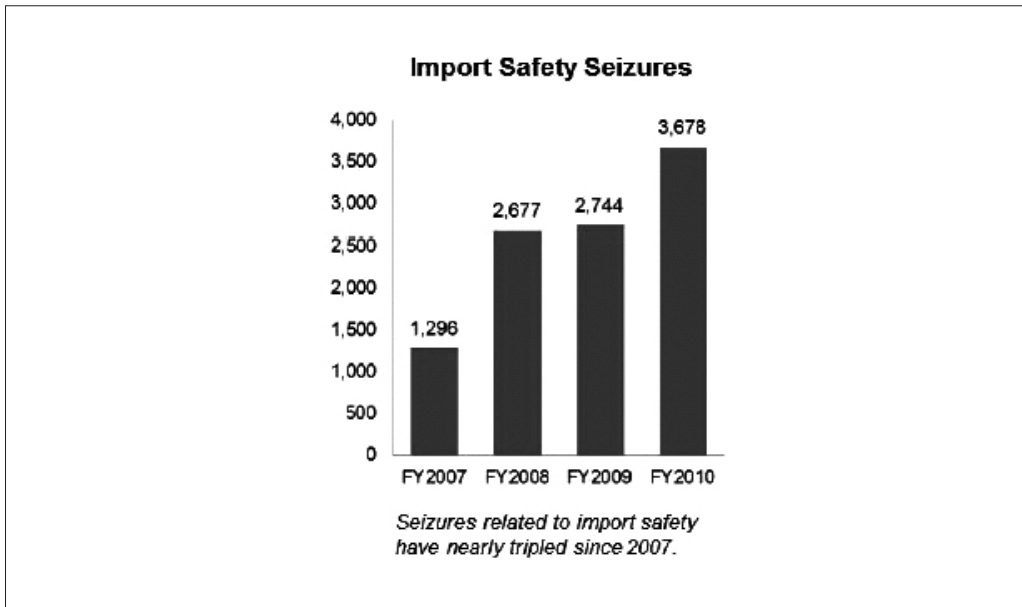
미국은 2007년부터 수입안전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2010년에 2배까지 증가하면서 불법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입안전(Import Safety)을 무역 관련 주요 현안(Priority Trade Issue)으로 삼고, 물품검사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처 간의 정보공유와 관련 정보의 조사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는 2009년 수입안전정보분석센터(the Commercial Targeting and Analysis Center, CTAC)⁴⁵⁾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는 건강과 안전을

45) <http://www.cbp.gov/trade/priority-issues/import-safety/ctac>

위협하는 수입화물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 부처 간 정보공유 협력시설로,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CBP를 포함하여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PHMSA)이 있다.⁴⁶⁾

[그림 2-V-1] 미국 수입 관련 몰수 현황

(단위: 건)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CBP는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을 대리하여 위법물품으로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고(19USC 1499), 또한 관세율법(the Tariff Act) 19USC 1595(a)에 따라 건강, 안전, 환경규제를 위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입물품의 규제법령을 관할하는 관련 기관으로는 법무부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http://www.atf.gov>)

46)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tac_safety_2.pdf

www.atf.gov/),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http://www.aphis.usda.gov/index.html>), 농무부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http://www.ams.usda.gov>), 내무부 USFWS(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ttp://www.fws.gov>)와 보건복지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www.fda.gov>) 등이 있다.

2 수출입규제제도

가. 수출입금지

영화, 사진, 서적 등 음란물(19 CFR 12.40), 전과자, 강매 또는 신탁에 의해 제작된 생산된 물품(19 CFR 12.42), 지식재산권법(18 USC)을 위배하는 모조 화폐, 주화, 기타 통화 또는 이들을 제작하기 위한 주형물 등(19 CFR 12.48), 황화인 성냥,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 고양이나 개의 털의 함유한 물품 및 코끼리 상아 등 멸종위기 동물보호법(the 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의 수출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수입되는 골동품의 수입은 금지한다.

한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입금지조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수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이란을 원산지로 하는 식료품과 카페트는 개인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이 금지되며, 시리아를 원산지로 하는 원유 또는 원유를 원료로 한 제품은 미국에서 개인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처방 또는 지정된 물품도 FDA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에서 제조되어 다시 미국의 제조자로 재수입되는 경우, FDA규정에서 승인하는 경우, 개인용으로 사용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이 밖에도 관세율법(19 U.S.C. 1337)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미국의 동종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압수 또는 몰수 대상이 된다.

나.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

관련 기관의 수입규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동식물, 유제품, 의약품, 구두, 핸드백, 가방, 골프채, 장난감 등 상표권 관련 물품, CD, DVD 및 테이프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⁴⁷⁾등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각 품목별 규제와 관련하여 CFR 19 part 12(Special classes of merchandise)에 관련 법령과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표 2-V-1〉 미국 수입규제 품목 일람표

구분	대상	관세법 관련규정
바이오테러법	식품, 약품, 화장품, 독약, 위험물질, 부식성 위험물질	19CFR §12.1~§12.5
	동물용 병원체 등	19CFR §12.17~§12.20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병원체 등	19CFR §12.21~§12.23
농산물	EU산 치즈	19CFR §12.6
	우유 및 크림	19CFR §12.7
	육류 및 육류가공품	19CFR §12.8, §12.9
	식물 및 식물성제품	19CFR §12.10~§12.15
	농업용 또는 식물용 종자	19CFR §12.16
	차류	19CFR §12.33
동물	동물, 동물제품 및 가축용 사료	19CFR §12.24
	야생동물, 조류, 곤충	19CFR §12.26~§12.32
무기	무기총탄과 폭발물 등의 전략물자, 방사성 물질 원자로	
에너지 기준	가전제품,	
	산업 및 상업설비	

47)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97/noIntercept/1

〈표 2-V-1〉의 계속

구분	대상	관세법 관련규정
전자제품	방사선과 초음파 방사선 제품, 무선기기	§12.90~§12.91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완구, 도장용 납, 자전거 헬멧, 불꽃놀이 용품, 가연성 직물, 미술용품, 시가 라이터, 다목적 라이터 등	
운송수단	승용차, 차량용 엔진 등	§12.73~§12.74
	차량용품	§12.80
	보트와 장비	§12.85
유해물질	농약 등	§12.110~§12.117
	화학물질	§12.118~§12.127
화폐대체품	금, 은, 모조지폐 등	§12.48
분쟁지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기타	성냥	§12.34
	마약	§12.36
	주류	§12.37~§12.38
	불공정무역거래	§12.39
	음란물	§12.40~§12.41
	강제노동에 의한 물품	§12.42~§12.45
	물개 또는 수달 가죽	§12.60~§12.63
	스위치블레이드칼	§12.95~§12.103
	문화재	§12.104
	미국 역사 이전의 벽화 등	§12.105~§12.109
	목재	§12.140~§12.142
	철강제품	§12.145
	금융제재대상(외국자산관리국)	§12.150~§12.151

자료: 미국 관세규정 19 CFR Part 12, (<http://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2>)

1) 자동차, 엔진, 차량용품, 연료 등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은 환경오염 규제를 집행한다. 자동차와 엔진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관련 용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EPA에서는 연료와 연료첨가제에 대해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전에 EPA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 시에 물품의 화학적 설명과 기술적, 마케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출하여 연소 또는 폭발 물질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성분과 물리적 성질에 관한 법규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또한 규제대상 오존층파괴물질로 제조한 물품의 판매나 유통을 제한한다.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연방차량안전기준(the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을 정하는 곳으로 주행용 차량과 차량 부품(타이어, 조명등, 헬멧, 유아용 좌석 등)의 최소 안전시스템과 부속품의 요건을 마련한다.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 감독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관련 결함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한다.

2) 살충제

살충제에 대해서는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따라 Administra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에 규정된 위험물질 및 규제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해당 규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EPA의 허용기준에 승인된 물품에 한하여 이 법에 규정된 등록요건과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요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수입 및 국내 유통 또는 판매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 사용의 정지와 주문 취소, 몰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3) 식품

FFDCA법에 따라 EPA에서 수입 및 국내판매용 식품에 잔류농약성분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약성분의 허용치(잔여물 최대치)를 정한다. FDA와 USDA에서 EPA가 농약성분 허용치에 대한 시행 여부를 감독 및 집행한다. 또한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성분검사를 마쳐야 한다.

가) 관할기관

FDA는 육류, 가금류와 가공란 제품을 제외하고 영양보충제를 포함한 모든 식품을 규제한다. 일반적으로 FDA는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즉 불순물 첨가 여부, 상표의 적정 여부를 주로 규제하는데 보존제 및 착색제의 허용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나아가 조제분유, 식품접촉물질, 영양보충제에 첨가되는 첨가제 등에 대해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저산성식품은 요건충족 여부에 대해 FDA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은 식품 공급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에 「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이하 ‘The Bioterrorism Act’)를 제정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⁸⁾ 이 법에 의하여 2003년부터 국내 및 수입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FDA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장, 소매판매용 시설 및 식당 등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이 법의 발효로 인하여 2004년부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가 의무화되었는데, 물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4시간 전(항공 또는 해상운송) 또는 육로운송인 경우 2시간 전에 FDA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물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으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다시 재수출하는 물품 및 USDA관할 물품(육류, 가금류 및 가공란제품)은 예외로 한다.

USDA의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에서는 육류, 가금류와 가공란 제품을 규제하는데 수입식품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절차

48) <http://www.cbp.gov/trade/priority-issues/import-safety/bioterrorism>

와 표준에 따라야 한다. 식품안전절차와 표준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건강상 유익하고 불순물을 섞지 않고 적절히 원산지와 영양성분이 표기되었는지 여부와 포장상태의 적정여부를 규율한다. FSIS는 육류, 가금류와 가공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식품규제시스템을 평가하기도 한다. 식품수입절차는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동물검역을 위해 CBP에 수입신고를 시작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FSIS의 검역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수입이 거부되고, FDA의 승인을 받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변경되어 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된다.

마지막으로 상무부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과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에서는 식품규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산물의 자발적인 검역시스템을 운영한다.

나) 품목별 규제

(1) 낙농제품

EU 회원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증명서(affidavit)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B/L상에 EU 국가의 원산지임이 확인되고, EU 회원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우유와 크림은 the Federal Import Milk Act에 따라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허가(permit)를 받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입 또는 미국에서 환적될 수 없다. 당해 허가서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갱신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제품은 허가서와 함께 송하인이 제품의 유형(raw milk, pasteurized milk, raw cream, or pasteurized cream), 송하인 성명과 주소, 허가번호 등을 나타내는 tag을 각 운송용기에 적절히 부착하여야 하는데, 운송차량이 적절히 봉인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tag이 적절히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육류 및 육류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이란 소, 돼지, 양, 염소 등을 도축한 육류 및 혼합하여 제조한 가공품을 포함하되, 의약용 장기, 추출물 등은 제외한다. 이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7 U.S.C. 8301)에 따라 Secretary of Agriculture 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CBP의 감시하에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검사관의 육류 및 가공육 검사를 마쳐야 한다. 세관장이 농무부에 당해 물품의 반출허가를 통지한 후에야 수하인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3) 농산물

식물검역허가가 필요한 식물 및 식물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수입하는 항의 세관장에게 도착통지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받은 도착통지서와 선적서류를 비교하여 이를 농무부에 송부한다. 도착통지서가 제출된 후에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검역관의 검사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물품의 이동, 보관 또는 폐기가 금지된다. Secretary of Agriculture의 검역결과 통관금지로 통보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수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을 즉시 농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이 금지되는 식물 또는 식물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된다.

농업용 또는 식물용종자는 재무부와 Secretary of Agriculture의 공동 규정인 Federal Seed Act(7 CFR part 201)에 따라 해당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세관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종자 시험을 받아야 한다.

4) 화학물질

EPA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폐기와 관련하여 안전을 규제하는 주된 기관이다. EPA는 제조 이전에 신제품을 검토하고, 위험관리를 위하여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화학실험을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폐기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범규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5) 소비재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은 약 15,000여 개 이상의 소비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Consumer Product Safety Act(CPSA)는 일반적으로 식품, 마약, 화장품, 의료기기, 담배, 무기류, 자동차, 살충제, 항공기 및 놀이기구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개인용 또는 상업용으로 학교, 가정 등에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 또는 부분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CPSA에 따라 CPSC가 소비재물품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CPSA는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물품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회수명령에 대한 권한을 CPSC에 부여하고 있다.

CPSA에는 수입과 관련한 조항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소비자물품의 안전기준을 위배하는 물품을 상업용으로 판매, 유통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수입 및 국내유통되는 소비재물품은 CPSA와 기타 CPSC 관한 법령의 소비자물품 안전기준(consumer product safety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6) CPSC 위해물질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FHSA)에서는 가정용 물품 가운데 특정 위해물질(hazardous substances)은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잠재적 위험과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표기를 부착하도록 요구한다. 독극물, 부식성, 화염성, 가연성, 자극성을 가진 물질이나 분해, 가열 등을 통해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아이들이 섭취하거나 사용 또는 취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취급주의를 알리는 표시를 붙여야 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해 CPSC는 당해 물품이 너무 위험하여 취급주의 표기로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등의 물품이 기계적, 전기적 또는 발열위험이 있는 경우 수입 또는 유통을 금지하는데 유아용 침대, 고무 젓꼭지, 자전거, 장난감 등에 대해 유통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FHSA에는 수입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위험물질이나 수입금지 위해물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CPSA의 안전증명요건은 FHSA에 규제되는 물품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7) 가연성 직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직물 및 의류제품은 각 품목마다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 제조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라면 품목별 생산수량과 각 제조자 정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송장에는 섬유조성 비율과 짜임, 여성의 류인지 남성의류인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CBP는 2005년 미국 관세율표(HT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직물 및 의류제품에 대해 제조자 고유부호(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MID)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제조자 및 송하인 또는 수출자에 대한 MID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류에 해당하는 직물 및 의류 제품이 아니더라도 직물로 분류되는 호에 해당하는 물품 대해서도 MID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Textile Visa’는 송장이나 수출허가서에 인장의 형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국에서 송하인에 의해 발행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직물 및 직물제품에 사용된다. 세관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쿼터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수입물량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훼손된 직물의 샘플 등으로서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textile visa 신고가 면제되고 쿼터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Flammable Fabrics Act(FFA)에서는 레이온 스웨터, 유아용 카우보이 바지, 인테리어 제품, 화장지, 플라스틱 등 의류 또는 인테리어 제품 가운데 가연위험이 높은 제품에 대해 CPSC에서 정한 인화성 물질의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가연성 직물, 의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닐필름, 카펫, 발판, 유아용 잠옷, 매트리스 등에 대해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FFA에서 정한 발열기준을 위배하는 물품, 직물 또는 재료를 판매목적으로 한 생산 또는 미국으로의 수입은 이 법을 위배하게 된다. CPSA의 안전증명요건은 FHSA에 규제되는 물품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8) 특정 가정용품

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PPPA)은 특정 가정용품에 대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는 화장품, 구강청결제, 의약품, 영양보충제 등이 포함된다. PPPA에 의해 요구되는 포장기준은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포장을 열기에 상당히 어려워야 하되, 일반인들은 손쉽게 열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CPSC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포장이 요구되는 물품과 포장방법이 효율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규칙을 공지한다. 이들 물품에도 CPSA의 안전증명요건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9) 화장품

화장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성분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당해 물품을 폐기처분한다.

FDA는 당해 물품의 불순물 포함 여부와 브랜드 표기 적정 여부를 규제한다. 일반적으로 FDA는 착색제에 대해서만 사전승인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후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성분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제조업자들은 본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원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10) 의약품(drugs) 및 의료기기

FDA는 인간 및 동물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표기를 했는지 여부를 규제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FDA의 요건 즉, 의약품등록, 제품등록, 신약승인, 표기 및 불순물포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FDA에서는 의약품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유통 전의 사전조사와 생산검사(Goods Manufacturing Practices)를 실시한다.

FDA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는 설립등록, 기기등록, 품질시스템 규정에 따른 생산 여부, 부작용 보고, 사전승인 등을 포함한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의 위

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FDA에서 사전조사와 품질시스템규제(Quality Systems Regulations)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FDA는 레이저, 엑스레이 시스템, 전기오븐, 컬러 텔레비전 등 방사선 방출 전기제품(의료용 및 일반용)의 안전성을 규제한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규제요건은 성능기준, 품질표시, 방사선 안전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11) 혈액, 백신 등

동물에 사용되기 위해 수입하는 병원체, 혈청, 독소는 농무부에서 정하는 허가(permit)를 받기 전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고 농무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당해물품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농무부에서 통관을 불허하는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당해 물품을 폐기처분하거나 재수출하여야 한다.

인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예방,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하는 병원체, 혈청, 독소, 항독성 혈청은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제조에 관한 허가(license)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을 조사 또는 판매, 교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님을 Food, Drug, and Cosmetic Act Regulations(21 CFR 312.1)에 따른 신고서(Notice of Claimed Investigational Exemption for a New Drug)를 제출하거나 Public Health Service Regulations(42 CFR 601.22)에 의한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가능하다.

FDA는 혈액, 백신, 조직 및 유전자 치료용품 등 생물학적 물품을 규제한다. 이들 물품은 안전성, 순도와 강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생산설비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또한 FFDCA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에 대한 규제는 일반안전성 시험, 무균 시험, 순도 시험 등을 포함한다. FDA의 인간 조직에 대한 규제는 생산설비 등록, 기증자 자격요건, 부작용 보고, 생산 편차, 품질표기, 수입, 검사 등이 포함된다.

12) 멸종위기 동물 및 동물용 사료

야생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연체동물, 갑각류와 멸종위기 동물은 지정된 항구로 수입되어야 하며,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의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허가서(import permit) 없이는 수입이 금지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분되며,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를 위한 통관보류 또는 처분을 위해 기타 관련기관에 이송된다.

동물, 동물로 만든 제품 및 동물용 사료는 농무부와 세관의 검역을 거쳐 수입되어야 한다. 수입되는 모든 말, 양, 소, 기타 가축류는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Veterinary Services의 검역을 거친 후에 수입되어야 한다.

FDA의 동물용 사료에 대한 규제는 식품에 대한 규제와 유사하다. 의료용이 아닌 동물용 사료 또는 식품은 사전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식품 또는 착색제는 FDA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13) 배관설비

Safe Drinking Water Act(SDWA)에서는 인간의 식용수에 납이 검출되지 않도록 식수 공급용 배관에 파이프, 배관용 피팅, 납땀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SDWA는 EPA와 협업하여 무연(lead-free) 배관설비 설치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표 2-V-2〉 미국 수입규제 품목별 관련기관 및 근거법령

대상	주관기관	근거법령
모든 수입물품	CBP	Tariff Act of 1930, Trade Act of 2002, and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SAFE) Port Act of 2006
엔진 및 차량 (고속 및 off-load)/ 차량 (on-road) 및 차량용품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Clean Air Act (CA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연료 및 연료첨가제	EPA	CAA
오존층 파괴물질	EPA	CAA
농약	EP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식품	EP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
	FD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 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Act)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
	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PPIA) Egg Products Inspection Act (EPIA)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Agricultural Marketing Act
화학물질	EP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소비재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
유해물질	CPSC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발화성 직물	CPSC	Flammable Fabrics Act (FFA)

〈표 2-V-2〉의 계속

대상	주관기관	근거법령
특정 가정용품 Certain Household Substances	CPSC	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PPPA)
화장품	FDA	FFDCA
마약	FDA	FFDCA
의료기기 및 방사능 방출기기	FDA	FFDCA
생물의약품, 혈액, 백신	FDA	FFDCA, PHS Act
멸종위기 동물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동물용 사료 및 원료	FDA	FFDCA, PHS Act
배관용 물품	EPA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주: 2014년 5월 기준

자료: 미국 FDA, Guidance for Industry—Good Importer Practices (Draft Guidance),
(<http://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ucm125805.htm>)

다. 기타

1) 쿼터제도

쿼터제도(Import Quota 또는 Absolute Quotas)는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특정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된 쿼터가 소진되면 남은 쿼터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수입 또는 유통이 불가능하다.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s)은 쿼터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정해진 양만큼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쿼터가 초과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설탕, 섬유제품 등이 있다. CBP 사이트에서 매년 대상품목을 조회할 수 있다.⁴⁹⁾

49) <http://www.cbp.gov/trade/quota/bulletins>

2) 불공정 무역거래 제재

불공정 무역거래로 인하여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및 수입과징금(19 USC 2132)과 셰이프가드(19 USC 1671)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상품,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상법 301(19 USC 2411), 스페셜 301조(19 USC 2242) 등의 수입제한 법규를 두고 있다.

3 원산지 및 품질표시제도

가. 원산지 표시제도

1) 개요

미국 관세율법(19 USC 1304)에 따라 제3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수입되는 때에 최종 구매자가 읽기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미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3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서 재포장되는 물품,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이 아니라 조작(manipulate)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구성 및 가시성의 정도는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는 이상 최종 구매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유통,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쉽게 원산지 표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과 다음의 물품이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면제한다(19 CFR subpart D). (1) 수입업자에 의해 사용목적으로 수입되어, 수입관

매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 (2) 원산지를 은닉 또는 원산지 표기를 영구적으로 은폐, 파괴, 또는 지우려는 유사 행위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며, 이외 목적으로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처리된 상품, (3) 물품의 성질상 미국의 최종 구매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물품으로, 물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것, 4)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한 물품, 5) 선적 전에 물품을 손상하지 않고 표기가 불가능한 물품, 6) 용기에 표기된 내용이 충분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경우, 7) 수입시점으로부터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예술물품, 구슬, 단추, 계란, 꽃, 유리, 종이 등 ‘J-list’에 열거된 원산지 표시 예외품목에 대해서도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만 포장용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원산지 표시방법(19 USC 1304, 19 CFR 134)

각인(die stamping), 식각(etching), 제판(engraving), 주형으로 글자를 주조하거나(cast-in-the-mold lettering), 직물 라벨(cloth label) 등 19 USC 1304(a)에서 정하는 특정한 원산지 표기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지한다.

가) 특정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방법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NAFTA 회원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으로 관세율법에서 특정 원산지 표기방법을 요구하는 물품인 가위, 식칼, 면도날, 수술용 기구, 치과용품, 과학 및 연구실 용품 등은 각인, 식각, 제판, 주조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시계, 시계제품(19 USC 1202), 가정용품, 의약조제품, 향수, 담배, 담배제품, 증류주, 와인, 기타 주류제품(27CFR,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모피제품, 직물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한다(16CFR, Federal Trade Commission).

전통적인 미국 원주민의 디자인에서 모티프를 따온 보석류의 원재료 또는 건조물과 도자기, 인형, 깔개, 바구니 등 전통적인 미국 원주민 스타일의 예술품 및 공예품은 절삭(cutting), 다이싱킹, 제판, 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여

야 한다. 한편, 물품이 조립(assemble)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경우 원산지는 최종 조립이 수행된 국가로 한다.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는 1) Assembled in(최종조립국) 2) Assembled in (최종조립국) from components of (모든 부품의 원산지 또는 원산지 국가들) 또는 3) Made in, or product of (최종조립국)으로 표기한다. 위의 방법 이외에도 원산지가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게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된다면 방법 또는 위치는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래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와 함께 수입 이후에 수행된 공정이 이루어진 원산지는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 이후 라벨 부착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와는 별도로 ‘Label made (or printed) in (name of country)’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

원산지 국가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에서 원산지 국가의 영문명을 별도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원산지 국가의 전체 영문 이름을 표기한다. 기타 원산지 표기방법과 최종구매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원산지 표기방법은 관세청 게시판과 관보에 공지되어야 한다. NAFTA 회원국의 물품은 영문,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원산지 국가를 표시할 수 있다. 국가명의 약어, 예를 들어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Luxembourg’를 ‘Luxembg’로 표시하는 등의 표기방식과 형용사 형식의 국가명 표기도 허용된다. 다만, 트레이드마크와 함께 표기되는 경우, 기념품에 표기되는 경우 및 수입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국가명(‘U.S.A.’ 또는 ‘American’ 또는 ‘United States’) 또는 미국의 지역 이름만을 표기하는 것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오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명 또는 지역 이름 앞에 ‘Made in’ 또는 ‘Product of’ 또는 이와 비슷한 문구를 비슷한 크기로 근접한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원산지 표시 위반 제재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배한 물품 또는 컨테이너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물품 또는 컨테이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통지하거나 반출된 모든 물품을 세관 관할 구역으로 원산지 표기, 수출 또는 폐기처분을 위해 재반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의 수출, 폐기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며 세관의 감독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정요건을 위반한 물품을 수입신고의 정산(liquidation of entry) 전까지 세관의 감독하에 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영어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문구나 단어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여 원산지 표기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CBP의 검사, 조사 또는 심사를 받기 위해 통관이 보류된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적절히 표기하거나 상기의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출될 수 없다.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가 세관관서에서 이루어진 경우 수입신고일, 수입자의 작업장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표기를 위해 세관 관할구역으로 재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로 원산지를 삭제, 훼손, 파손 또는 변조한 경우와 이를 은폐할 목적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19 USC 1304(h)에 따라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진다.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한 경우 19 USC 1592에 따라 당해 물품은 몰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당해 위법행위가 고의로 인한 사기로 적발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18 USC 1001을 위반하게 되어 1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이 적용된다

Section 42의 상표법(15 U.S.C. 1124)은 다른 수입되지 않은 외부 제품 중에서 그 이름이나 상표가 대중들이 미국, 혹은 다른 외부 국가 및 지역에서 제조되었다고 간주하도록 유도하는 품목은 미국 세관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 제조된 지역과 무관하다. 많은 경우에 외부의 수입물품 혹은 그것의 컨테이너에 표기된 'United

States', 'USA' 또는, 미국의 지역 및 도시 이름은 대중들이 그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 되었다고 믿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된다. 원산지의 이름이 국내원산지 이름 과 근접한 경우를 제외한다.

혹여나 원산지 상표 누락이 조건부 허용된 이후 발견된 상품은 미국 관세청 관할 로 되돌려 보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배송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 상금은 미국 관세청 채권으로 과해질 수 있다(19 CFR 141.113[a]; cf., 19 CFR Part 172 and 미국 관세청 양식 464 참고).

상표법 제42조에 의해 금지된 이름이나 상표를 포함한 수입품은 몰수의 대상이 다. 그러나 물품의 최종처분에 앞서 수입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관세 청 항구 관리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상표를 제거하거나 올바르게 정정할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항구 관리자는 미국 관세청의 감독하에, 정부에 비 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당 상품을 수출하거나 파기를 허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43조 (Section 43 of the Trademark Act of 1946(15 U.S.C. 1125))는 상품 원산지 혹은 상품설명이 허위로 표시되거나 분류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단어나 상징부호가 허위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의의 삭제, 포함, 또는 미국 관세청 보호관할 해제 후 원산지 상표 변경 또한 벌금 및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⁵⁰⁾

나. 품질표시(인증)제도⁵¹⁾

1) 인증의 종류

미국에서는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자체 인증으로 제조제품이 기 수립된 안 전이나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체선언)이나 산업협회별 자발인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정부 차원의 강제 인증은 드물게 사용된다.

미 정부는 제품이 강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자나 공급자 및 유

50) 미국 관세청 구금(custody)에서 출범된 이후, 국가의 원산지 표시도 벌금과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 범 죄임(19 U.S.C. 1304[]).

51) KOTRA, 「미국의 주요 인증제도」, 20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국제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

통 업체에 제재 조치를 취하며, 산업별 협회의 자발적 인증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만 제품의 강제요건 준수 판정에 직접 관여한다. 미 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특정 연방기관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 당해 연방기관이 공공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동 규정과 함께 인증제도도 도입되는 것이 보편적이다.⁵²⁾

가) 연방정부의 인증

일반인 또는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공호흡장치나 기타 호흡보조기구에 대한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및 기타 잠재 위험기기에 대한 광산안전보건청(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 국방부(Dept. of Defense)의 군에서 사용되는 부품, 자재 등에 대한 적격제품 목록(QPL; Qualified Products Listing), 미 농무부(USDA, U.S. Dept. of Agriculture)의 육제품에 대한 등급부여 및 인증제도 등이 있다.

나)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기구의 인증

연방정부는 직접 주관하는 인증제도와 함께 민간기구의 인증을 인정(accreditation)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을 들 수 있다. 법령에 의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미 산업안전보건청이 인가한 국가공인 시험 소인 NRTL에서 인증(테스트 통과 업체로 등재 혹은 레이블 부착)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된 UL마크도 NRTL로 인가된 민간 기구인 미 보험협회안전시험소(UL;

52) KOTRA, 「미국의 주요 인증제도」, 2010.

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한 민간 인증마크이다.⁵³⁾

2) 주요 인증 취득절차

한국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정부부처, 행정기관,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 강제인증제도는 134개, 자율인증제도는 1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제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부처에서 85개, 연방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49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율인증 제도는 연방정부부처에서 42개, 행정기관에서 12개,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124개를 운영하고 있다.⁵⁴⁾

가) FDA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으며 대상품목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 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의무 또는 임의로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식품에 대해서는 시판전 검사 및 사전승인 품목과 사후검사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시판전 검사 및 사전승인품목에는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acidified & low-acid canned foods), 음식물 시설(Food Facility) 등이 포함된다. 사전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물 시설 등록 또는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후검사 품목은 동물용 사료, 화장품, 일반 식품류 등으로 사전승인 및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제품시설이나 제품의 정기검사, 샘플분석 등을 통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제품은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비처방약과 의료인으로부터 처방전을 얻은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는 처방약으로 구분하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시판 승인을 얻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능 확인에 필요한 규제수준을 일반규제, 일반규제 및 특별규제, 일반규제 및 시판 전 허가 등의 3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규제내용을 달리한다. 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행하는 경우, 적어도 90일 전에 F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53) KOTRA, 「미국의 주요 인증제도」, 2010.

54) KOTRA, 「미국의 주요 인증제도」, 2010.

수입검사와 시장감시를 통해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사용과 부적절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부정생산), 허위사실표시(부정표시) 등이 적발될 시 제품회수, 압수 또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

승인획득에는 해당품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상이한데 사전승인 대상제품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⁵⁵⁾

나) FCC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로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와 전구의료기기,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한다.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인증기관을 확인해야 하며 검증과 적합성 선언은 제품시험만 실시된다. 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FCC 지정시험소에서 시험 후 성적서를 수령하여 FCC Registration Number (FRN)를 획득하고 기기승인을 받은 후에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FCC는 법적규제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합법적 마케팅(수입, 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 행위가 불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⁵⁶⁾

다)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⁵⁷⁾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 연방정부의 강제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다.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인증 대상품목은 가전기기, 냉동공조기기, 산업용 제어기기, 소방기기, 오디오/비

5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제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

5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제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

57) www.ul.com

디오, 의료기/계측기, 전선 및 케이블, 정보통신기기, 플라스틱, PWB, 기계류, EMC 등 1만 9천 여종의 제품을 시험 또는 인증한다. 제품 관련정보, 계약서(신청서), 예치금, 샘플제품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며, 인증을 받게 되면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연회비 납부 및 공장심사 등의 사후관리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⁵⁸⁾

5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제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

Ⅵ. 기타

1 C-TPAT

가. 개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테러 민간파트너십)은 민-관, 즉 무역 관련 당사자와 CBP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법규 및 보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수출입 물류보안 프로그램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경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AEO와 유사한 제도인 미국의 C-TPAT은 2001년 11월 시작되었다. 이는 수입화물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며 시작되었으나, 2014년에는 수출업체도 공인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2006년 항만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WCO SAFE Framework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C-TPAT 공인 업체는 10,732개로, 수입자 4,337개, 운송업체 3,125개, 관세사 858명, 외국 제조업체 1,400개, 화물혼재업자 952개, 항만터미널운영업자 60개이고, 그중 Tier 3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334개이다.⁵⁹⁾

59) www.cbp.gov, 2014년 6월 기준

나. 공인대상 및 방법

C-TPAT은 모든 공급망에 적용되며 공인 대상은 12개, 즉 수입업자, 수출업자, 항공운송업자, 화물혼재업자(항공운송 혼재업자, 해양운송 중개인, 무선박 운송인(NVOCC), 관세사, 외국 제조업자, 고속도로 운송업자,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철도 운송업자, 해상 운송업자, 제3자 물류업자이다.

C-TPAT 제도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 및 보안 가이드(Security Criteria) 라인을 제시하고 본 기준에 맞는 당사자에게는 관세당국에서 공인함으로써 공인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충족해야 하는 보안 항목으로는 물리적 접근 통제, 절차적 보안, 직원의 보안, 컨테이너 보안, 정보기술 보안 등이며, 보안 항목별로 정해진 세부 보안 지침을 이행하여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접근통제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물건이나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진입 지점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명확히하기 위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진이 부착된 방문자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우편물과 배달 화물에 대한 판매자 확인 및 화물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직원 보안에 있어서는 고용 예정자와 현재 피고용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고용 예정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고, 고용 후에도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재조사를 시행한다. 계약이 끝난 직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접근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리적 보안의 경우에는 화물의 처리 및 저장 시설이 권한 없는 접근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업자들은 장벽치기, 출입구, 주차 시설, 빌딩구조, 잠금장치 및 열쇠통제, 조명, 경고 시스템 및 비디오 감시카메라 등 물리적 보안 지침을 실행해야 한다. 알람 시스템과 감시 비디오 카메라 등이 하역과 저장 공간에 설치되어 비허가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기술 보안에서는 컴퓨터 등 자동화된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할당된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어야 하고, IT 보안 정책, 절차, 기준과 관련된 훈련이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적절한 접

근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C-TPAT의 신청은 현재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며, 각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정보(Security Profile)를 입력하면 관세당국에서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 후, 현장 검증과 실사를 거쳐 C-TPAT의 승인 여부가 결정하며, 최초 검증 후 3년 이내에 재검증을 실행하고 있다.

다. 공인 혜택

미국은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3단계 즉, Tier 1, Tier 2, Tier 3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Tier 3의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Tier 1의 경우 CBP에 의해 인증되면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 점수⁶⁰⁾가 낮아지고, CBP에 의한 화물검사가 감소하며, 정밀 재검사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FAST(Free and Secure Trade) Lane⁶¹⁾ 절차를 통한 신속한 수입 화물의 처리가 가능하며, 수입자 자기평가(Importer Self Assessment, ISA) 프로그램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 (Status Verification Interface, SVI)을 통한 C-TPAT 구성원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강화된 물리적 컨테이너 보안 및 개선된 보안 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으로 인한 도난 감소효과가 있다.

따라서 공급망 투명도 및 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인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고객의 신뢰를 증가시키는 간접적 혜택이 있다.

Tier 2의 경우 Tier 1의 모든 혜택을 부여 받으며 Tier 1 업체들보다 화물 검사의 횟수가 적다. 화물 검사 시에도 Tier 3 다음으로 먼저 검사를 받게 되며, 반입 항구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특권이 있다.

Tier 3는 Tier 1, Tier 2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 받게 되는데, 더 낮은 ATS 점수로 인해 화물 검사가 감소되며,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

60)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대신 CBP는 위험을 보유한 컨테이너를 선별하기 위해 이 점수를 이용함. 위험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낮음

61)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 기업 중에서 CBP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통관제도. 출처-김진규·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 49권, 2011.2, pp.167~188.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협 수준이 발생하면 미국 항구에서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Green Lane’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시 가장 우선시되어 복구되는 무역경로이며 물품선적 시 검사 절차를 없애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s)⁶²⁾

사전심사(Advance Ruling)는 수출입물품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결정, 품목, 관세 관련 사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사전에 질의하는 제도로 미국 관세청은 198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⁶³⁾ 이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등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세관의 관할업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출입 전에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평가, 환급, 수입절차, 운송수단, 지적재산권(IPR) 등에 대한 사항은 본청 소속 법규국(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 OR&R, 워싱턴 D.C)에서 담당하며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기, FTA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상품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뉴욕)에서 담당하고 있다.⁶⁴⁾

사전심사 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⁶⁵⁾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다.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⁶⁶⁾을 기재한 서면(letter)을 증빙서류의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관련 사항에 따라 OR&R 또는 NCSD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62) 이상엽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2014. 7, pp. 27~38.

63) 미 관세법 시행령 177장에서 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64) OR&R 주소: The Commissioner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tention :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Washington, DC 20229, NCSD 주소: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tn : CIE/Ruling Request, One Penn Plaza-10th Floor, New York, NY 10119

65) 2005년 12월부터 전자사전심사(e-Ruling) 실시

66) 신청자 인적사항, 반입예정 항구명, 심사신청 종류, 거래 내용 등

지⁶⁷⁾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거래관련 사실을 기재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청과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대 5개까지의 파일을 총 3.7MB까지 업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NCSD에서 30일 내에 심사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되며, OR&R로 신청한 서면심사의 경우 90일 내 우편으로 심사결정이 발송된다.

심사 결정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심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근거한 ‘사실관계(facts), 심사 신청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issue)’, 검토된 법률 및 이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법률검토·분석(law and analysis)’ 및 최종 결론에 대한 ‘결정사항(holding)’으로 구성된 레터형식이다.

[그림 2-VI-1] 사전심사 결정서신 예

N205394
 March 22, 2012
 CLA-2-38:OT:RR:NC:2:239
 CATEGORY: Classification
 TARIFF NO.: 3824.90.9290
 Mr. Glenn M. Carberry Praxair, Inc.
 175 East Park Drive Tonawanda, NY 1415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ompressed gas mixture from South Korea

Dear Mr. Carberry:

In your letter dated February 21, 2012, you requested a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The subject product is a compressed gas mixture of fluorine and nitrogen. You state that the product will be imported in a cylinder and will be used to passivate steel and stainless steel piping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applicable subheading will be 3824.90.929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including those consisting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 Other: Other: Other. The rate of duty will be 5 percent ad valorem.

Duty rates are provided for your convenience and are subject to change. The text of the most recent HTSUS and the accompanying duty rates are provided on World Wide Web at <http://www.usitc.gov/tata/hts/>.

This ruling is being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t 177 of the Customs Regulations (19 C.F.R. 177).

A copy of the ruling or the control number indicated above should be provided with the entry documents filed at the time this merchandise is imported.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ruling, contact National Import Specialist Richard Dunkel at (646) 733-3032.

Sincerely,
 Thomas J. Russo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67) <http://apps.cbp.gov/erulings/index.asp>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심사 결정된 내용들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http://rulings.cbp.gov>)⁶⁸에 등록되어 공표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 시 재무정보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림 2-VI-2] 미국 Cross-Ruling 사이트

Date	Rank	Ruling Category/Tariff No.	Ruling Reference	Related
1/19/2007	97.0%	HO 9958453 Classification	Use of certain yarn in the assembly of garments otherwis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CAFTA-DR	References 1804772
1/5/2010	20.2%	NY 10047901 Classification 8202.41.0010 9822.05.01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coat from Dominican Republic.	
2/13/2009	20.2%	NY 10031885 Classification 8202.41.0010 9822.05.01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coat from Dominican Republic.	References 18047891
2/24/2009	20.2%	NY 10025598 Classification 8202.41.0010 9822.05.01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coat from Dominican Republic.	References 10051865
9/7/2009	15.2%	NY 10058485 Classification 8204.62.3510 9822.05.01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women's pants from Dominican Republic.	
1/11/2006	7.6%	HO 5633561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of Protest 0401-05-100117; brastorec; CBTPA; DR-CAFTA; 9822.00.80	

자료: <http://rulings.cbp.gov>

68) CROSS 사이트는 무료로 접속 가능하며, 유사품목에 대한 심사결정문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음(2013년 기준 169,000개 이상의 결정내용 게재)

3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s)⁶⁹⁾

가. 개요

미국의 자유무역지역(FTZ, Foreign Trade Zone) 제도는 국제무역 증진을 위해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내 지정된 FTZ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은 1934년 자유무역지역법(Foreign Trade Zone Act)에 의하여 도입되어 상무부 산하 자유무역지역 위원회(Foreign Trade Zone Board)에서 관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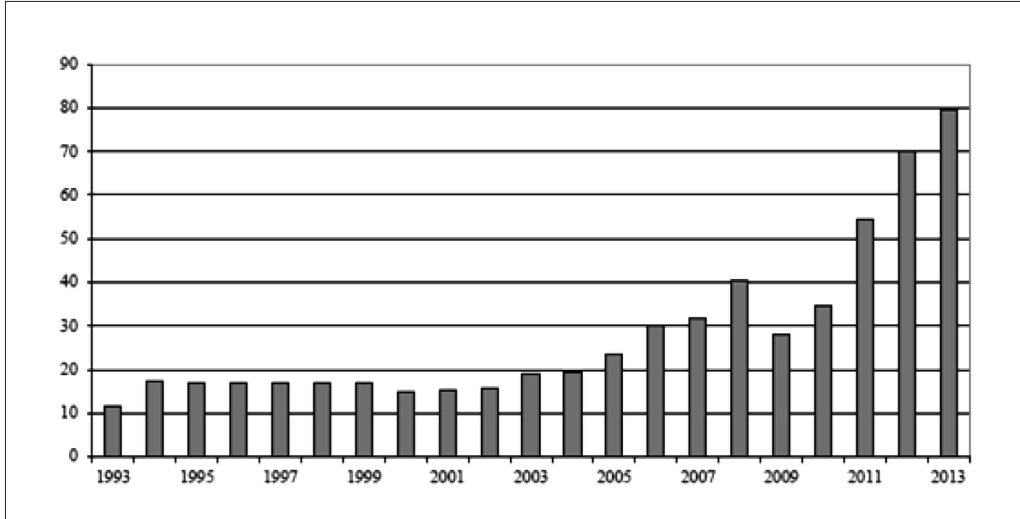
FTZ는 보세공장과는 달리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단지(Zone) 개념이며, 미국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세영역의 밖으로 인정되어 FTZ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관세법 이외의 미국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등과 같은 미국 연방법은 FTZ 내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및 제반 비용이 FTZ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거나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아예 면제되기도 한다.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FTZ에 반입된 그대로 보관하거나 조립·재포장한 형태, 제조·가공 등을 거친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도 반출 가능하다. 이곳에 물품을 무기한 보관할 수 있으며, 수입되어 가공·제조된 물품은 수출하거나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내수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물품이라면 반출 시점에서 수입 관세와 제반 비용이 발생하고 해외로 수출되면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69) 통관닷컴, 『각국의 관세환급과 그 유사제도』, 2006. 5, pp. 7~8.

[그림 2-VI-3] 미국 FTZ의 재수출액

(단위: 십억달러)



자료: 『미국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자료 연간보고서』, 2013.

나. FTZ의 종류

미국의 FTZ는 일반지역인 GP(General Purpose) Zone과 준구역인 Subzone로 구분된다. GP Zone은 전통적인 공항만 시설이나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석유정제나 자동차 제조 등의 기능은 허용되지 않지만 조립가공 등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GP Zone은 면적기준 등은 없지만 공항이나 항만으로부터 60마일 이내의 거리이거나 세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ubzone은 GP Zone과 달리 개별기업 차원에서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 공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Subzone⁷⁰⁾은 GP Zone에 유치할 수 없는 대규모 장치산업 등 일정 용도의 제한적 목적으로 공익에 부합할 때 기업 단위로 허용되는 지역이다. 특정 기업은 자동차 또는 석유화학공장 등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미국 내 또는 해외로부터 상품을 반입하여 제조, 조립가공, 혼합, 분류 등의 활동

70) 각 회사는 회사 전속 사용을 위한 Subzone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을 수행하여 국내 반입 또는 재수출할 수 있다.⁷¹⁾

현재 미국 내에는 준구역(Subzone)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의 FTZ가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 FTZ의 설치

FTZ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창고나 공장을 용도(보관 또는 제조)에 따라 관할기관⁷²⁾으로부터 지정받는 것이다. 설치장소는 주로 항만 내 또는 항만부근의 산업단지나 터미널 창고시설이다. 다만, 지역사정에 따라 거리개념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준구역(Subzone)에 대해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FTZ의 신청주체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개인에게는 통상 FTZ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항만을 관리하는 주(州)정부나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있으며, 준구역(Subzone)의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회사별로 설치하고 있다.

FTZ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설립자, 운영자,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설립자는 앞서 설명한 FTZ의 설치를 허가 받은 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며, 운영자는 설립자와 계약하여 책임수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FTZ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사용자는 실제로 FTZ 건물 등을 임대하여 제조·가공 등 경제활동을 하는 입주업체이다.⁷³⁾

FTZ로 지정받은 후 창고 및 공장부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활성화(Activation)시켜 사용할 수 있다. 활성화의 요건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과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분리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71) 백종실,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23호, 2003. 4, p. 66.

72)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와 세관

73) 장근호,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1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4, p. 158.

라. FTZ의 물품 취급⁷⁴⁾

FTZ 내로 반입되는 외국 물품은 관세 및 제반비용이 비과세되나, 생산 및 시설재, FTZ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FTZ 내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CBP Form 214)를 제출하여 항만청장의 승인을 받고 운영자가 신고서에 인수사실을 서명하고 재고장부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반입신고서와 함께 상업송장, 운송업체의 인출허가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운송신고를 통하여 동일 날짜에 동일한 신청인에게 인도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일괄신고(Blanket Admission)가 허용된다. 항만청장은 운영자의 책임 설정 등을 위해 물품조사를 할 수 있다.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내국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작업신고서(CBP Form 216)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수, 제조, 전시 혹은 폐기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신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의 변경, 상당한 생산의 증대, 원료구입처의 변경, 또는 완제품 관세율을 적용받는 부품의 변경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지속적인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1년 단위의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물품의 폐기시 상업적 잔여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은 폐기가 아닌 단순 작업으로 간주되며 FTZ 내에서 폐기가 어려운 경우 역외작업도 허용된다.

마. FTZ의 관리·감독

미국의 FTZ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며, 상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FTZ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등 지정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⁷⁵⁾

FTZ 내의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는 원칙적으로 세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세관은 FTZ 운영자의 장부기록과 FTZ의 물품 상태, 그리고 운송업체, 공급자 및 구매자의 기록을 대조하여 FTZ를 관리·감독한다. 다만, 1986년 이후부터 세관공무원의

74) 장근호,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1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4, pp. 160~162.

75) 백종실,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23호, 2003. 4, p. 66.

FTZ 직접 관리는 없어지고 운영자가 담보 책임하에 물품의 인수, 배송, 보관, 장부기록, 폐기, 제조, 처분, 보안 등을 책임지는 간접관리방식이 사용된다. 이에 따라 물품의 반입, 제조, 폐기나 반출 신청 시 FTZ 운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운영자는 FTZ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있다.

세관은 사후심사인 회계장부 심사방식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바. FTZ의 장점

FTZ 내로 반입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생산과정에 투입될 자재를 미리 FTZ로 반입하고 필요시 FTZ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생산에 투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외국 부분품으로 FTZ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분품(원료과세)과 완제품(제품과세)의 세율 중 낮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어 관세절감이 가능하고, 부분품과 완제품의 세율이 다를 경우 완제품 세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섬유제품을 제외한 기타 물품의 경우 쿼터 면제, 원산지 표시 등에서 유리하다. 또한, FTZ 내 외국물품의 반입에는 담보가 불필요하다.

4 관세당국의 제재 사항⁷⁶⁾

가. 개요

미국의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미국 연방형법 및 형사 소송법상의 형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⁷⁷⁾ 관세법에서는 관세법의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76)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http://www.tradenavi.or.kr>)

77) Chapter 27의 제541조에서 제555조 사이에 규정

민사적인 제재를 규정⁷⁸⁾하고 있다.⁷⁹⁾

관세법 및 기타 관세 행정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물품압수, 벌금 부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관세당국에 위임되어 있다. 관세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의 집행은 National Seizure and Penalties Officers(NSPOs)와 각 세관 관할의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rs(FPFO)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ies)

관세당국은 개인이 관세법 또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물품의 유치(in lieu), 압류(seizure) 또는 고발(referral for criminal prosecution) 등의 조치에 부가적으로 위반 혐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고의 또는 부주의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표 2-VI-1〉 벌금부과의 사유 및 금액

벌금 부과 사유	금액
상업적인 사기 행위 또는 과실 (관세액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	5만달러 이하의 벌금
부정 환급 (환급 청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써 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5만달러 이하의 벌금
기록 유지의무 위반 (유지의무가 있는 기록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잃는 경우 등)	기록과 관련된 물품 감정액의 75% 또는 45%
적하목록 허위기재 또는 누락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마약류, 규제 의약품의 미신고 (마약류 또는 규제 의약물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반입한 경우 등)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78) 미국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처벌을 사기, 중과실, 과실로 나누어 규정. 중과실은 위반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무모하게 이를 무시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성립하며,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 성립함

79)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32.

〈표 2-Ⅵ-1〉의 계속

벌금 부과 사유	금액
불법적인 수입에 대한 협조 (관세법 기타 관련법에 위반하는 수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행위 등)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입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http://www.tradenavi.or.kr>)

또한, 세관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⁸⁰⁾

다. 물품 압수/몰수(Forfeiture)

관세법 및 또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품은 관세당국이 점유하고 물품과 관련된 이익은 관세당국에 귀속된다.

1)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입물품의 압수

수입이 금지된 물품(규제대상 약물, 외설품, 위조품 등),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섬유쿼터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물품,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 의해 제한되는 물품,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제한되는 물품 등), 신고되지 않거나 미국으로 밀반입한 물품(미국으로 입국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여 반입하는 물품, 신고하지 않은 1만달러 이상의 통화 등), 관세법 및 기타 관련법을 위반하는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나 도구는 압수한다.

80) 19 U.S Code 1592(C) (Prior disclosure),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38.

2) 벌금(Monetary Penalty) 납부에 대한 담보로서의 물품 압류

관세법 또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관세당국은 벌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한 물품을 매각하여 벌금에 충당한다.

라.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 보세운송인, 국제운송인 등 관세와 관련된 당사자는 각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관세당국 관리하의 통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세행정예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확정 손해에 대한 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표 2-VI-2〉 손해배상의 사유

손해배상의 사유	위반의 예
Importation (or entry) bond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 예정된 관세액을 늦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일시 수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세관의 보세구역 재반입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등
Custodial bond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추가 가공하거나, 멸실·손상시키는 경우 - 수입물품이 보세운송인에 의하여 잘못 운송되거나 불법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등
International Carrier bonds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의 도착보고 규정의 위반 - 적하목록 제출 규정의 위반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http://www.tradenavi.or.kr>)

마. 기타⁸¹⁾

1) 양벌규정 및 가중처벌

미국은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물품 밀수에 있어서 미국의 법인이 밀수에 사용된 선박을 통제하고 있을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관세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 미수범, 교사범의 처벌

미국에서는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⁸²⁾하고 있으며, 교사범에 대해서도 기수범과 동이하게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다.

81)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2014.7, pp. 32~33.

82) 물품의 밀반입하려고 시도하였거나 허위 · 위조된 송장 등의 서류로 통관을 시도한 자 모두 20년이 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고 규정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I. 수입 통관 절차

1 개요

미국의 수입통관은 통관항에서 화물의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통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의해 당해 물품의 인도가 허가되고, 관세를 납부한 뒤에 법적으로 수입통관이 인정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수입자는 제반 통관준비 및 하역,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통관대상 물품 도착 후 일정 기한 내 수입물품의 반출허가 신청(Entry)을 하여야 한다. 반출허가 신청은 화물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전(물품 도착 전)에도 할 수 있다. 지정 기간 내 반출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 하역장소 장치 허용기간에 대한 지시(Lay Order)가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하에 지정된 창고에 운송되어 보관된다.

추정된 관세를 세관에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통관이 허용되며,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최종 결정(Liquidation)한다.

물품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소비목적으로 통관될 수 있고, 특정한 경우 도착항의 보세창고에 입고하여 통관될 수도 있다. 또한 수입물품은 다른 지역의 통관항으로 보세운송되어 도착항에서의 같은 조건으로 수입통관 될 수 있다. 보세운송은 수하인이나 통관대행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준비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에 입고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는다.

세관 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특정 물품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대략 60여 곳이 있다.⁸³⁾

가. 통관항(Ports of Entry)

통관항(Ports of Entry)은 매일 화물을 통관하고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징수하며, 해외에서 도착하는 여행자들의 입국수속을 처리하는 항구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관항은 미국에 입항하는 거의 모든 화물과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경에 직면에 있다. 통관항은 CBP 수출입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이민정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통관항 직원은 미국의 농작물, 가축, 애완동물 및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동식물 해충이나 질병의 잠재적 매개체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검사를 수행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의 3개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며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미국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서해안의 항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ongbeach Port, 샌프란시스코의 Oakland Port, 시애틀의 Seattle and Tacoma Port가 있는데, Longbeach는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남쪽 통로라고 하여 South Gate, Seattle은 북쪽 통로라고 하여 North Gat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⁸⁴⁾

83)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 2013. 12.

84)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 2013. 12.

나. 수입 통관의 종류⁸⁵⁾

1) 약식통관(Informal Entry)

약식통관은 소비목적으로 반입되는 개인용 및 상업용 선적 그리고 우편물에 적용하고 있고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인 경우에 대부분 약식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⁸⁶⁾ 미국산 제품으로서 다시 반입되는 화물 중 금액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관세가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⁸⁷⁾

만일 물품이 약식통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과 사후 정산절차가 생략된다.

2) 정식통관(Formal Entry)

정식통관은 일반적으로 관세 담보요건을 갖춘 상업용 물품이 대상이 되고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⁸⁸⁾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을 통해야 한다.

85)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37.

86) 섬유제품, 일부 신발, 기타 쿼터/비자 제한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임

87) 코트라 글로벌원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 2013. 12.

88) 그 이전에는 2,000달러 이상이었으나 간이신고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2013년 1월부터 2,500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다. 수입 통관절차의 특례

1) 우편 통관(Mail Entries)⁸⁹⁾

수입자는 특송서비스 외에 국제우편서비스(International postal service)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식통관이 필요 없다. 이 경우 약식통관절차에 의해 개인이 통관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 우편통관서식(CBP MAil Entry Form)⁹⁰⁾을 제시하고 수취인은 우편물에 대한 관세를 우체부에게 지불하면 소포가 전달된다. 수입우편물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취인과 가장 가까운 통관항에서 직접 정식통관을 준비하고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우편화물에는 그 내용물의 명세 및 가치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기재한 CBP 신고서를 외부 포장에 잘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고서는 전 세계 우체국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상용품의 경우에는 상업송장도 수반되어야 한다.

송장이나 가격에 대한 문서를 밀봉된 화물 내에 포함하고 있는 우편화물은 외부포장지의 주소 기재면에 ‘송장 동봉’이라고 표기하여야 하며, 화물 내 동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에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물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소포가 아닌 우편, 상용문서, 인쇄물이나 샘플 같은 것은 주소 기재면에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 Union)에서 제공되는 양식 C1을 붙이거나 세관원이 수신인에게 통보 없이 소포물을 개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배송 전 통관목적으로 개봉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 및 이와 유사한 문구가 배서되어야 한다. 양식 C1라벨이 없거나 배서되지 않은 우편물이 금지물품 또는 과세대상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물품은 몰수될 수 있다.

CBP는 세관원이 서류를 구비하는 각 과세대상 우편물에 대해 5달러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우체부는 모든 과세대상 우편물에 대해 관세 외에 이러한 소정의 수수

89)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37.

90) 세관은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우편수입에 대해 CBP 통관양식을 구비하고 있다.

료를 함께 징수한다. 우편요금 외에도 우편물에 대한 CBP 통관을 처리하고 배송하는 우편서비스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으로 국제우편협약에 의해 인증된 우편수수료가 있다.

2,500달러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표 3-I-1>에 있는 물품들의 한도금액은 섬유제품을 제외하고 250달러이다. 실제로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정식통관이 요구된다.

<표 3-I-1> 2,500달러 한도 적용 예외물품

지갑 및 납작한 제품
 깃털과 깃털 제품
 생화와 나뭇잎, 조화
 신발
 모피
 장갑
 가방
 모자
 가죽제품
 수화물
 여성용 모자 장식품
 베개 및 쿠션
 플라스틱
 원피와 생가죽
 고무
 방직용 섬유 및 제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용품
 기타 장식용품

2) 상업용 샘플 통관(Commercial Sample Importation)

물품의 주문을 위해 수입되는 상업용 샘플은 Duty-Free 통관이 가능하므로 샘플임을 표기하여 수입⁹¹⁾하거나 일시수입 면세 적용⁹²⁾ 또는 일시수입증서(ATA Carnet)를 이용한다.

91) 일반적으로 3종류까지 가능하나 HTSUS 제9811호에 해당하는 알코올 음료, 담배류, 물품가격이 1달러 미만의 샘플, 기타 수입 후에 소비되는 샘플은 해당 수량 및 쿼터 규정에 따른다.

92) 수입 후 재수출하거나 제조에 사용되어 소모된 경우

3) 일시면세수입(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서(Bonds)의 제공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재수출이나 폐기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예정관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시면세수입 대상물품에는 경주용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보트 등, 전시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압축가스의 용기, 실험용 기기·도면·사진 등, 전시번식용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동물이 있다.

4) 보세창고 통관(Entry for Warehouse)

수입물품의 반출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보세창고 통관 조건으로 CBP관할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은 수입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보관기간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 납부 없이 재수출되거나 반출일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반출될 수 있다. CBP의 감독하에 당해 물품이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보세창고 보관기간 동안 수입물품은 CBP 감독하에 세척, 선별, 재포장, 또는 제조에 준하지 않는 상태 변경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은 관세 없이 수출되거나 반출일 기준 변경된 물품 상태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납부 후 반출될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 폭발성 물질이나 수입금지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없다. 그러나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될 수 있다.

2 신고인

가. 수입자에 의한 신고

미국에 도착한 물품은 그 소유자, 구매자, 그들이 지정한 상시고용인 혹은 면허를 가진 통관대행업자⁹³⁾에 의해서 통관이 이루어진다. 면허를 가진 통관대행업자가 수입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미 세관 담당자들은 수입자에게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수입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 기타 당사자에 의한 신고

수입물품의 통관은 비거주자, 수출자의 대리인이나 미국 내 대리점을 통한 외국기업, 조합(Partnership)이나 그 기업의 임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비거주 개인이나 기업에 요구되는 CBP 본드의 보증인은 반드시 미국 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또한,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외국기업은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관항 지역에 권한이 부여된 상주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위임장에 기재된 통관대행업자는 외국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통관대행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의 지급을 담보하는 채권이 필요하다. 외국에서의 수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공증이 필요하다.

93) 통관대행업자는 통관 업무에 있어서 수입자의 대리인으로, 미국 관세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세관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신고하며, 지불해야 하는 관세를 산정한다. 또한 세관하에 있는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통관문제에 있어 수입 주체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자를 대리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통관대행업자 및 수행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다. 위임장

비거주자 개인, 조합, 혹은 외국 법인은 상시고용인, 통관대행업자, 파트너 및 기업 임원에게 미국 내에서 비거주자인 그들을 위해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은 미국 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임장은 정당하게 통관을 진행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위임장은 <표 3-I-2>의 CBP 양식 5297을 사용하거나 CBP 규정에 따라 기업의 명의를 인쇄된 서신에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서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표기법, 그리고 문서의 인증에 관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임장에 명시된 대리인은 문서의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통관항의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외국의 법이 미국법과 상이한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위임장은 다음의 서류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외국법인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 공무원의 법적 존재 증명서
- 해당 기업의 사업 범위와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정관의 일부분에 대한 사본
- 회사의 정관, 결의안, 이사회 회의록 등 위임장 서명인의 권위를 보여주는 문서의 복사본

비거주자 개인, 조합, 혹은 외국 법인은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미국 내 다른 거주자에게 위임장과 같은 것을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조합에 의해 발행된 위임장은 발행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모든 조합 원명을 기재해야 한다. 조합원의 변경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위임장은 통관 시 효력이 없으며 새로운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그림 3-1-1] 위임장 기본 양식

The X Corporation, _____
 (Address, city, and countr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_____ hereby authorizes

 (Name or names of employee or officer in United States)

 (and address or addresses)

to perform on behalf of the said corporation any and all acts specified in CBP Form 5291, Power of Attorney; to accept service of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the X Corporation; to issue powers of attorney on CBP Form 5291 authorizing a qualified resident or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to perform on behalf of the X Corporation all acts specified in CBP Form 5291; and to empower such resident or residents to accept service of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the said X Corporation.

[그림 3-1-2] 위임장 양식(CBP Form 5297)

1. THIS FORM MUST BE TYPED. 2. DO NOT ALTER THIS FORM. 3. ORIGINAL TO BE SUBMITTED TO CBP. (See Option explained in Instruction No. 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RPORATE SURETY POWER OF ATTORNEY <i>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i>				CBP No. 1001-0000 Rev. 03/12/04 CBP USE ONLY DATE RECEIVED	
<input type="checkbox"/> GRANT (Instruction No. 3a.)		<input type="checkbox"/> CHANGE to Grant on file (Instruction No. 3b.)		<input type="checkbox"/> REVOCATION. The below-described powers previously granted are hereby revoked. (Instruction No. 3c.)		EFFECTIVE DATE	
GRANTEE:		NAME <input type="checkbox"/> This is a name change SOCIAL SECURITY NUMBER		ADDRESS <input type="checkbox"/> This is an address change			
GRANTOR:		SURETY COMPANY'S CORPORATE NAME		SURETY NO.		STATE UNDER WHOSE LAWS ORGANIZED AS A SURETY	
Port code(s) for CBP port(s) in which authorized to do business and limit on any single obligation -OR- port(s) being added to the original grant.							
PORT	LIMIT	PORT	LIMIT	PORT	LIMIT	PORT	LIMIT
Grantor appoints the above-named person (Grantee) as its attorney in fact to sign its name as surety to, and to execute, seal, and acknowledge any bond so as to bind the surety corporation to the same extent as if done by a regularly elected officer, limited only to the extent shown above as to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ort and amount on any single bond obligation. This grant, or change to a grant on file, or revocation, as specified, shall become active on the effective date shown provided the CBP Form 5297 is received at a port office 5 days before the effective date shown; otherwise the specified actions will be come active at the close of business 5 working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at the port office.							
In witness whereof, the said Grantor, by virtue of authority conferred by its Board of Directors, has caused these presents to be sealed with its corporate seal and attested by any two principal officers.		Date Attested	Name and Title		Name and Title		
		Use a "business of corporate seal, and not impression seal.	Signature:		Signature:		
Distribution: 3 copies		CBP Form 5297 (06/08)					

3 수입통관절차⁹⁴⁾

가. 미국 수입통관절차의 특징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는 관세 납부시점에 따라 일반 수입통관(Entry for Consumption), 보세통관, 임시통관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수입에 적용되는 일반 수입통관은 다시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입통관단계는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Entry(화물반입신고)와 관세산정 및 통계목적의 Entry Summary(납세신고)로 구분되는데, Entry Summary는 세관이 세액결정, 통계자료 수집, 타 법령과의 합치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를 위해 ABI(Automated Brokers Interface)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등 두 가지 시스템을 병용한다. ABI는 우리나라의 EDI처럼 관세사들이 화주를 대신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관세사 전용 수입신고 프로그램이며, ACE는 우리나라의 Uni-PASS처럼 미 세관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화주들이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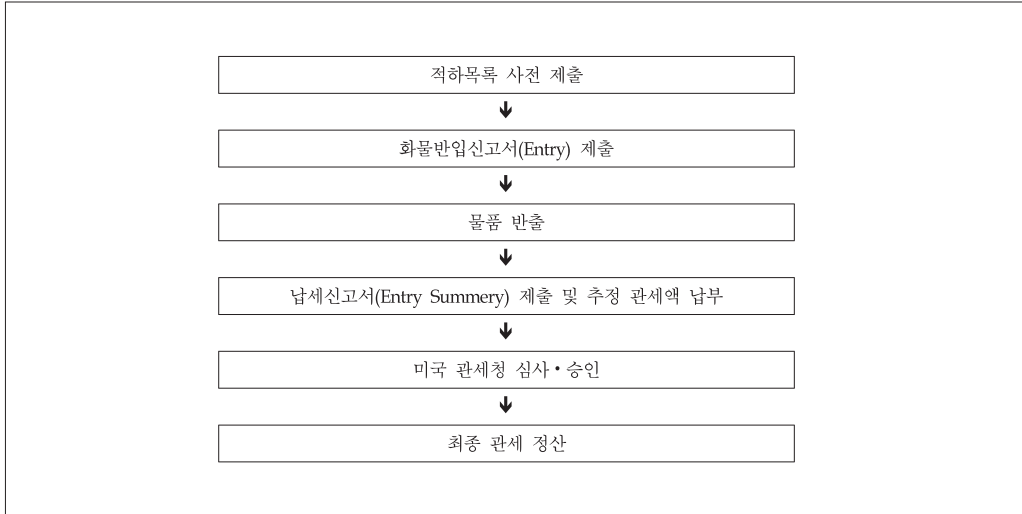
사후심사단계는 Post Entry Review(사후세액심사)와 Liquidation(정산)으로 구분된다.

수입신고서류는 분리 제출이 일반적이며 Entry 제출로 물품을 반출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한다. 이에 반해 수입하는 때 납세신고를 하는 결합제출은 주로 쿼터품목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Entry와 Entry Summary를 제출한 뒤 이를 검토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반출되는 방식이다.⁹⁵⁾

94) 정재호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p. 30~33.

95) 정재호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 29.

[그림 3-1-3]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흐름



나. 수입통관절차

1) 적하목록(Manifest) 사전 제출(24 Hour Rule)

운송인(선사 또는 항공사)은 전자적 방법(AMS⁹⁶):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적하목록을 CBP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2001년 9·11 테러발생 이후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적하목록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우범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되며 최초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0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벌금 1만달러가 부과된다.

96)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

〈표 3-1-2〉 운송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구분	세관 통보시한
해상(컨테이너 화물)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해상(벌크 화물)	미국 도착항 도착 24시간 전
해상(항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전
항공(일반적인 경우)	미국 도착항 도착 4시간 전
항공(단거리; 캐나다, 멕시코, 기타 중남미)	출발항에서 이륙하기 전
철도	미국 국경 도착 2시간 전
육로	미국 국경 도착 1시간 전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http://www.tradenavi.or.kr>)

한편, 24 Hour Rule에 의해 운송회사가 수출항에서 물품 선적 24시간 전까지 CBP에 제출하는 적하목록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테러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4 Hour Rule과 더불어 수입자는 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수출자로부터 수하인, 구매자, 제조자, 원산지, HS 코드 등 10개의 정보와 운송사가 신고할 B/L 번호 등 2가지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까지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이용하여 미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략히 10+2 Rule이라고도 하며, 미국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2009년 1월 25일 발효된 미 연방항만보안법에 따라 향후 미주항 화물의 밀수 방지와 보안 유지를 위해 제출하는 정보로 수입자가 제출하는 10개 항목은 ISF(Importer Security Filing)로도 불린다.

수입자의 10항목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1건당 5,000달러 부과(신고 1건당 최대 1만달러), 운송회사의 2항목에 대해서는 화물적재계획서 위반 시 도착편당 5만달러,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위반 시 위반 1건당 5,000달러(최대 선박도착편당 10만달러)가 부과된다.⁹⁷⁾

97)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http://www.tradenavi.or.kr>)

〈표 3-1-3〉 10+2 Rule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구분	전송 주체	제출 정보	제출 시기	비고
10	수입자(소유주, 구매자, 수하인, 관세사, 대리인)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장소 컨테이너 혼재업자 수입자 번호/자유무역지역 신청인 식별번호 수하인 번호 원산지 HS 코드	선적 24시간 전	벌크 화물: 24 Hour Rule 적용 (도착 24시간 전)
2	운송회사 (선박회사)	1. 화물적재계획서	출항 후 48시간	
		2.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선적 24시간 전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http://www.tradenavi.or.kr>)

식품 등 FDA 소관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하기 전 미국 FDA에 식품제조시설과 제품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각 물품의 종류에 따라 Import Permit 등 사전 절차도 밟아야 한다.⁹⁸⁾

이후 세관은 제출된 적하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이 장치되어 보세운송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Entry 기재 내용과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화물반입신고(Entry 제출)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로, 물품이 미국에 도착하면 수입자⁹⁹⁾는 세관양식 CBP form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통관항 세관에 화물반입신고를 해야 한다.¹⁰⁰⁾ 15일 이내에 화물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98)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여름호, p. 25

99) 수입물품의 화주, 구매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통관대리인 포함

100) 사전신고의 경우 해상화물은 본선이 미국 통관항에 도착하기 5일전부터, 항공화물은 AMS를 통하여 적하목록을 사전 제출한 이후부터 가능

우에는 세관장 명령을 발동하여 세관창고로 화물을 강제로 옮긴 후 매각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신고유형은 2,500달러를 기준으로 일반신고와 간이신고로 구분되며, 서면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과 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 Automated Broker Interface)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수입신고인은 화주 또는 통관대행업자이며 대부분 통관대행업자가 위임을 받아 신고한다.

가)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화물이 미국 통관항 도착 후 즉시 반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선적항에서 출발 후 미국에 도착하기 최대 5일 전까지 AMS를 통하여 즉시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통관항 도착 후 물품을 즉시 반출할 수 있다. 즉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납세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예정된 관세(Estimated Duty)는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표 3-1-4〉 즉시반출 대상 물품

-
-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도착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승인하고 담보가 제공된 물품
 -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도착한 신선한 과일 및 야채로서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즉시 반출되어 수입항 내 수입자 소재지에 보관하는 경우
 - 미국 정부 담당자나 기관명으로 수입하는 물품
 - 무역박람회 전시물품
 - 특정상황하에서의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물품과 절대적 할당 물품¹⁾
 - 매우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보세창고에서 10일 이내 반출되는 물품
 - CBP로부터 특별히 즉시반출 승인을 얻은 물품
-

주: 1) 절대적 할당 물품은 항상 정식통관 되어야 함

나) 사전공고 규정 자율준수(Informed Compliance)¹⁰¹⁾

Informed Compliance는 CBP와 수입자 사이에 공유되는 의무로, CBP가 수입 물품 관련 규정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미국법과 관세 관련 규정에 합치하게 수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자가 수입물품 관련사항, 절차의 준수 등에 대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로써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Informed Compliance 관련 규정의 준수는 미국 수입물품에 대한 서류 및 물품검사 비율을 낮출 수 있다.

〈표 3-1-5〉 상당주의 의무 체크리스트(Reasonable Care Checklist)

-
- 수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
: 수입과 관련한 CBP 규정 인지 여부, 수입서류의 정확한 작성 여부 등
 - 물품명세와 품목분류(HS)와 관련된 질문
: 규정에 합치되는 명확한 물품명세 입력 여부, 규정에 일치되는 HS(HTSUS) 코드 입력 여부, 품목분류와 관련된 예규(Ruling) 신청 여부, 샘플 분석 등의 절차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등
 - 과세가격에 관련된 질문
: 관세평가 관련 규정에 합치되는 가격신고 여부, 과세가격에 대해 예규(Ruling) 신청 여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여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의 적정성 여부 등
 - 원산지/원산지 표시 등/수입쿼터 관련 질문
: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 원산지 및 각종 표시 대상 물품에 적절한 표시의무 준수 여부, 수입물품의 원재료 · 생산자 등의 여부, 수입쿼터 수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관련 질문
: 수입물품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 · 저작권 여부, US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또는 법원의 수입금지 등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기타 섬유 및 의류 수입자 관련 질문 등
-

주: 법률적 또는 통관절차상의 효력은 없으나 수입자가 수입시 의무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고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크리스트

다) 사전고지(Prior Disclosure)¹⁰²⁾

사전고지는 수입자 등이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 관세당국 등이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관세당국 등에 해당 사항을 알리는 절차로, 벌칙 등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다.

101)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http://www.tradenavi.or.kr>)

102)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http://www.tradenavi.or.kr>)

미국 수입물품과 관련된 당사자(수입자, 제조자, 수출자, 송하인, 통관대리인 등)는 관세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¹⁰³⁾을 위반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추가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납부) 위반행위가 발생한 통관항 세관 당국에 제출한다. 위반행위가 여러 통관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CBP는 하나의 항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물품 검사 및 반출

Entry 신고된 화물은 반출이 허가되기 전 미 세관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의 사전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 없이 즉시 반출되거나 검사 대상 물품으로 선별되어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Entry 기재내용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위법성 가능 여부에 따라 고위험 및 저위험 물품으로 선별한다. 고위험 물품의 경우 집중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저위험 물품은 일반검사 대상으로 서류검사에 그친다. 현물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관계법령(예: 식품안전법)에 따른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수량부족 여부, 선적검사 등 법규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세관당국은 검사할 물품 및 수량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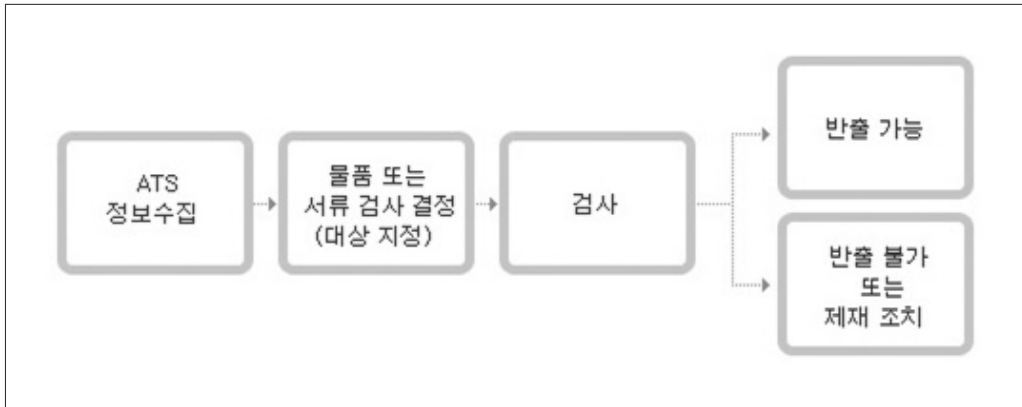
〈표 3-1-6〉 검사 항목

-
- 관세목적의 물품가액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 물품에 원산지 또는 요구되는 화인 또는 라벨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화물에 수입금지된 물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물품이 정확하게 송장에 기입되었는지 여부
 - 물품이 송장상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또는 부족분이 있는지의 여부
 - 화물에 불법적인 마약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103) CBP가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으로 과세사격의 과대 및 과소신고, 물품명세 위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부적정 원산지 및 표기 등

검사 후에는 세관직원이 Entry에 서명함으로써 반출이 허가된다. 반출허가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금액은 관세 및 제 수수료의 예상 납부금액으로 과거 담보조건의 준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결정하고 동의한다. 통상적으로는 관세법인이 Customs Bond를 발행하여 세관에 제공한다.

[그림 3-1-4] 검사 절차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http://www.tradenavi.or.kr>)

가) 지식재산권 규정¹⁰⁴⁾

CBP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자를 규제하며 해당 물품에 대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CBP는 미국 특허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품, 모조품 및 수입제한된 Gray Market¹⁰⁵⁾ 물품의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압수, 몰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불법 복제, 표절, 및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복제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자는 CBP에 상표권 및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¹⁰⁶⁾

104)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http://www.tradenavi.or.kr>)

105) 병행상품 (parallel goods)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제조자의 허가 없이 수입해서 파는 것

106) - 상표권 등록: 상표권자의 인적 사항, 대상물품이 제조 장소, 상표권 사용권자의 인적 사항, 해외에

나) 표시의무(Marking)¹⁰⁷⁾

미국 관세법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원산지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이러한 원산지 등의 표시는 충분히 영구적이며 최종 구매자가 구매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부착되어야 하며, 재포장으로 원산지가 없어질 경우 원래의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술품, 자가사용 수입물품,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지 않는 물품 등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다) 수입금지, 제한, 기타 기관의 요구사항(Special Requirement)¹⁰⁸⁾

특정 물품¹⁰⁹⁾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 및 보안상 이유나 소비자 건강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한다. CBP의 요구사항은 CBP 이외의 미국 정부기관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물품의 포장, 라벨링 등 필요 정보의 제출 및 수입요건의 충족이 요구되고 있다.

라) 통관본드(Customs Bonds)의 제공¹¹⁰⁾

미국은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제세 및 수입요건의 이행을 위한 담보금 성격의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관본드(Customs Bond)는 관세,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으로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려면 반드시 통관본드가 필요하다.

즉, 수입자는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조세 및 각종 비

서 등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 모기업 또는 자회사, 기타 외국 회사의 신원 등
- 저작권 등록: 저작권자의 인적 사항, 진품의 제조국, 외국에서의 명칭(미국과 다른 경우) 등

107)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http://www.tradenavi.or.kr>)

108)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http://www.tradenavi.or.kr>)

109) 농업생산품, 에너지 보존 및 안전이 요구되는 소비재 물품, 전기기기,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의료기기류, 금·은·통화류, 살충제, 독극물 및 위험물질, 직물, 모직 및 모피 물품 등

110)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 2013. 12.

용의 납부를 담보하는 보증서(Bonds)를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보증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입물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보증서에는 매 수입건당 제공되는 일회성 보증서(Single Bond, CBP Form 301)와 수입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 구입하면 유효기간 1년 동안 해당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통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 Term Bond) 등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Continuous Bond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의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보증서 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보증서 주기(1년) 내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합계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보증서 주기마다 검토한다.

Single Bond는 수입빈도가 뜸한 수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가격과 수입세액을 합한 가액에 상당하는 보증서가 필요하다. FDA 등 수입제한품목의 경우 3배 가액 상당의 보증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Single Bond를 구입한 수입자는 1만달러의 ISF Bond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수입자가 본드를 구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수수료는 보증서 가액의 1% 정도이다.¹¹¹⁾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미국 시민인 개인도 될 수 있으나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본드 전문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통관본드는 본드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일정률의 금액¹¹²⁾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본드 구입증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수입건당 필요한 Single Bond는 동 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년용의

111)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여름호, p. 27.

112) 보험회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은 3.5%, 일년용은 1% 정도의 금액이며, 동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Continuous Bond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증서번호가 세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증서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회용에서 일 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관이 아닌 본드를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수입통관을 위해 통관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통관대리인의 본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4) 납세신고(Entry Summary 제출) 및 예정 관세액 납부

납세신고는 관세당국이 세액을 산정하고 수입물품의 통계 및 기타 법령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자 및 그 통관 대리인은 수입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 세관에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제출하고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추정된 관세를 납부(Deposit)한다. 수입자는 세관양식 CBP Form 7501(Consumption Entry), Form 7502(Warehouse Entry) 등을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다.

물품신고(Entry/Immediate Delivery)와 마찬가지로 납세신고(Entry Summary) 역시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최근에는 AMS 및 ABI를 대신하는 새로운 시스템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가 도입되어 납세신고에 이용되고 있다.

5)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

통관단계에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 등 필요한 최소사항만을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하며,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등은 통관 후에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세관은 Entry Summary를 심사하여 세액 확정, 통계작성, 기타 쿼터 등의 제반 규제법령 등과 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6) 정산(Liquidation)

세액의 정산 및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로서 수입자가 개산하여 납부한 관세액(Estimated Duty)과 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Liquidated Duty)을 비교하여 과잉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는 절차이다. 세관은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 과세가격, 관세 등을 검토하고 기타 추가정보를 수집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하여 관세를 정산하고 통관을 완료한다. Liquidation은 보통 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CBP Form 4333A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하다. 다만,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은 정산기간이 최장 10년까지이다.¹¹³⁾

정산에 의해 추가된 관세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고시 이자율이 적용된다. 보통 10개월이나 3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산된 관세라도 최초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오류, 적용법령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관세의 재정산(reliquidation)을 할 수 있다.

미국 세관의 정산 이전에 적용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수입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¹¹⁴⁾

〈표 3-1-7〉 미국의 통관 절차

유형	수입신고(entry)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
의의	담보(customs bond) 제공 및 물품반출	세액 납부(deposit)	관세당국이 심사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서식	CF 3461	CF 7501	CF 4333A 또는 EDI notice
기한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 정재호(2012), p. 26.

4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신고서류는 각종 세관양식,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 포장명세서, 각종 수입허가서 또는 증명서 등이며 미국 내 수입 불가, 지연 또는 기타 제재 가능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송장과 기타 수입 제반 서류를 구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3)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여름호, p. 26.

114) 사후납세신고 정정(PEA: Post Entry Amendment)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된 납세신고서(Revised Entry Summary)와 기존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함께 제출하여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FTA 검증 대응 전략」, 2013. 3, pp. 85~87.)

각 서류는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시 미 세관에 제출된 서류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 또는 필요정보의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이 지연되거나 클레임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¹¹⁵⁾

세관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가. 수입신고(Entry) 서류

수입물품은 미국 통관항 도착 후 15일 이내에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입적하목록(CBP Form 7533), 화물반입신고 및 반출허가신청서(CBP form 3461),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신고인 증빙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상업송장 제출 불가능한 경우의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기타 수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품목에 따라 미국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교통국(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115) 19 U.S.C. 1592 참조

[그림 3-1-7] 화물반입신고 및 반출허가신청서(CBP Form 346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4 Exp. 04-30-2015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 ARRIVAL DATE		2. ELECTED ENTRY DATE		3. ENTRY TYPE CODE/NAME		4. ENTRY NUMBER
5. PORT		6. SINGLE TRANS. BOND		7. BROKER/IMPORTER FILE NUMBER		
		8. CONSIGNEE NUMBER		9. IMPORTER NUMBER		
10. ULTIMATE CONSIGNEE NAME				11. IMPORTER OF RECORD NAME		
12. CARRIER CODE		13. VOYAGE/FLIGHT/TRIP		14. LOCATION OF GOODS-CODE(S)/NAME(S)		
15. VESSEL CODE/NAME						
16. U.S. PORT OF UNLADING		17. MANIFEST NUMBER		18. G.O. NUMBER		19. TOTAL VALUE
20. DESCRIPTION OF MERCHANDISE						
21. IT/BL/AWB CODE	22. IT/BL/AWB NO.	23. MANIFEST QUANTITY	24. H.S. NUMBER	25. COUNTRY OF ORIGIN	26. MANUFACTURER NO.	
27. CERTIFICATION			28. CBP USE ONLY			
I hereby make application for entry/immediate delivery.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bond is sufficient, valid, and current, and that all requirements of 19 CFR Part 142 have been met. SIGNATURE OF APPLICANT			<input type="checkbox"/> OTHER AGENCY ACTION REQUIRED, NAMELY: <input type="checkbox"/> CBP EXAMINATION REQUIRED. <input type="checkbox"/> ENTRY REJECTED, BECAUSE:			
29. BROKER OR OTHER GOVT. AGENCY USE			DELIVERY AUTHORIZED: _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_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4.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자료: CBP

1) 송장(Invoices)

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상거래 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련되고, 수출자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상업송장이 필요하다. 전자통관 시스템인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를 이용하는 수입자 및 중개인은 AII(Automated Invoice Interface)나 EDIFACT(일종의 전자 데이터 교환)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업송장에는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물품 명세, 가격, 할인 금액, 각종 비용 및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물품의 실제 수출자명과 수입자명(송하인과 수하인)을 기재하고 해당 거래의 본질을 송장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관세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무게, 치수, 부피 등이 송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물품 반출에 앞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표 3-1-8〉 미국의 상업송장에 기입해야 할 항목

-
- ① 물품이 도착한 수입항
 - ② 화물의 구매자 및 판매자,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 ③ 자세한 물품 명세(상품명, 품질등급, 기호, 포장내역 등)
 - ④ 화물의 수량, 무게, 부피
 - ⑤ 화물의 가격 및 통화 단위(미국달러, 한국원화 등)
 - ⑥ 물품 원가 이외 화물을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수수료, 포장비용 등)
물품 가격에 포장비용, 내륙운송비용이 포함된 경우 세분화할 필요 없음
 - ⑦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액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 ⑧ 원산지
 - ⑨ 송장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 물품이나 서비스(공제 또는 가산 비용)
-

자료: 코트라 글로벌원도우, CBP A Guide for ommercial Importers.

인보이스와 모든 첨부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표기된 경우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한 건의 수입이 여러 상업송장을 포함하고 있거나 하나의 송장이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송장의 페이지 수는 하단에 1부터 시작하는 번호를 연속적으로 별도 표기한다.

인보이스상의 물품이 운송 중 판매된 경우 수입통관 시에 이러한 거래를 나타내는 기존 송장 원본과 재판매 송장 또는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을 보여주는 판매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선적분에는 별개의 송장이 필요하지만 단일 운송인을 통해 동일한 수하인에게 발송하기 위해 혼적된 화물들일 경우 하나의 송장으로 커버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가격을 나타내는 기존 송장 및 관련 서류들은 해당 송장에 첨부되어야 한다. 단일 주문이나 계약에 의한 분할선적분은 연이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두 통관항에 도착하는 경우 단일 송장으로 커버될 수 있다. 이러한 분할선적분에 대한 송장은 단일 선적분에 의한 송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비하되, 관련된 물품에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¹¹⁶⁾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송장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용¹¹⁷⁾이 송장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내야 한다. 생산지원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내역과 누가 지원한 것인가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무상 또는 임대기준으로 지원되거나 생산지원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송장을 첨부한다. 미 세관은 물품의 관세평가를 위해 생산비용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생산지원을 받은 물품의 인보이스는 제조자나 생산자의 생산비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CBP 규정 제141.89항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송장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특정 정보가 요구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31 U.S.C. 5151(Conversion of currency of foreign countries)에 규정된 환율 이외에는 통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둘 이상의 환율을 가지는 통화를 보유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인증한 경우 송장에 물품대 지급을 위한 환율을 나타낸다. 만약 각종 비용

116) 수량, 가격, 각 분할분과 관련된 기타 송장정보 및 분할 선적분의 운송수

117) 예를 들어, 금형, 공구, 인쇄 플레이트, 도판, 엔지니어링 작업, 설계 및 개발, 재정 지원 등

이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환율이 물품대를 지급하기 위한 환율과 다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환율을 명시한다.

나)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등

물품의 수입 시 상업송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신고일이나 반입신고일(납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한 본드가 제공된다. 견적송장은 상업송장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을 위해 미 세관에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필요정보¹¹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에 19 CFR 141.89에 의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특수송장(Special Invoices)이 요구될 수도 있다.

나. 납세신고(Entry Summary) 서류

수입물품의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납세신고서류는 납세신고서(CBP form 7501)와 수입물품의 반출이 허가된 이후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된 수입신고 관련 서류, 상업송장 등 기타 관세를 산정하고 통계를 수집하거나 수입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들로 구성된다.

118) 수입검사,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

[그림 3-1-8]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rm Approved OMB No. 1851-0022 EXP. 08-31-2014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o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City State Zip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State Zip			
27. Line No.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3.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35. Total Entered Value \$ Total Other Fees \$		CBP USE ONLY		TOTALS	
				A. LIQ CODE	B. Ascertained Duty	37. Duty	
				REASON CODE	C. Ascertained Tax	38. Tax	
					D. Ascertained Other	39. Other	
					E. Ascertained Total	40. Total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I declare that I am th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input type="checkbox"/>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input type="checkbox"/>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41. DECLARANT NAME		TITLE		SIGNATURE		DATE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06/09)							

자료: CBP

다. 서류 보관(Record Keeping)

수입자, 운송인, 대리인 등은 수입 및 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 운송 관련 서류, 환급 관련 서류, 조세 및 수수료 납부 서류 등의 보관의무가 있다. 물품반입신고 및 납세신고 관련 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5 세관의 심사 및 검사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는 필수적이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관세 부과 목적의 수입물품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원산지 표시, 특별한 표기 및 라벨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요구되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수입금지물품(prohibited articles)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수량 등 송장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마약 등 불법 화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물품검사는 농산품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 신청 후, 반출 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혹은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자의 사업장이나 항구 내 검사장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물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필요한 경우 수입물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거나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에서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이 독자적으로 시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여야 하며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청(FDA)나 농무부(USDA)등과 같은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검사

와 샘플 분석을 수행한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표 Ⅲ-8>과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의 6개 검사팀에 의해 실시된다. 참고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차 X-ray 검색비율은 약 2.6% 내외이다.¹¹⁹⁾

세관담당자가 수입물품의 수량 및 중량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정조건하에서 관세가 공제될 수 있다. 또한, 수입자가 최종 정산절차 전에 세관에 부족분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감면될 수도 있다.

물품검사 중 송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기나 중과실, 과실에 따라 해당 물품이 송장에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물품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¹²⁰⁾

물품의 손상과 기능저하로 미국에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품은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화물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경우 세관감독하에 손상이나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한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119)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여름호, p. 26.

120) 19 U.S.C 1592 참조.

〈표 3-1-9〉 수입검사팀 운영현황

검사팀	주요 기능
Merchandise Examination Team (MET)	Import Specialist(수입전문관)가 수행하며 세액, 수입요건, 원산지, 품목분류 및 IPR 등을 심사
Contraband Enforcement Team (A-CET)	불법화물 밀수, 대량과피무기 및 금수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riculture (CBPa)	목재 포장재, 팔레트 및 농산물에 기생하는 병해충 검사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 Team(VACIS)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
Tailgate Exam Team	의심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 검사
FDA Examination Team	수산물,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 담당

자료: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여름호, p. 26.

6 통관 경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통관 경비로는 관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 HMF)가 있다.

MPF는 수입가격에 통상 0.3464%를 부과하지만,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 까지 부과된다. 단, 목록통관물품은 2달러만 납부하고, 2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면제된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 수입물품은 MPF가 철폐되었다.

HMF는 통관항 무역영역을 유지 및 개선하는 엔지니어들(the Army Corps of Engineers)을 위해 사용되며, 해상수입화물에 한해 수입금액의 0.125%가 부과된다. MPF와 같이 상한선은 없다.

그 밖에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점 수수료(Freight Forwarder's Handling Charge) 65달러, 통관회사 수수료(Customshouse Brokerage Fee) 150달러 등이 있다.

7 기타

가. 보세운송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도착항에서 통관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자는 도착항이 아닌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수입 통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고 수입물품은 해당 지역까지 추가 운송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도착항에서 목적하는 지역까지 수입물품은 보세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보세운송절차는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¹²¹⁾ 절차에 따르며 CBP Form 7512(Transportation Entry and Manifest of Goods Subject to CBP Inspection and Permit)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물품은 운송담보하에 목적지까지 보세 운송되며, 도착 후 목적지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정식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 3-1-10〉 보세운송의 종류

종류	내용
즉시 운송 (Immediate Transport, IT)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
운송 및 수출 (Transport & Export, T&E)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 수출
보세창고 인출 및 운송 (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운송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 (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Ex)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

자료: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 2013. 12

121)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나. 미통관 물품(Unentered Goods)

수입물품의 통관항 또는 보세화물의 목적지항에서 도착 후 15일 이내 수입통관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수입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렇듯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운송비, 항만체재비용,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자가 통관할 때 완불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으면 세관은 공매처분하거나 폐기한다. 그러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과 감가상각이 큰 물품,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다.

보관비용, 판매비용, 내국세 수입 또는 기타 세금, 관세, 수수료, 유치권에 대한 금액은 미통관 물품의 판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매잉여수익에 대한 청구는 해당 물품의 판매를 지시한 통관항의 세관장에게 제기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청구는 판매 후 10일 이내에 선하증권 원본과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선하증권의 사본은 오직 선적물품의 일부만 판매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이 아닌 운송인이 미통관물품을 보세창고에 통지하도록 요구된다. 통지가 이루어지면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관리인은 수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의 소재지로 운송하기 위해 미통관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내국세 과세대상 물품이지만 공매에서 판매 시 세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다.

다. 이의신청

미세관은 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등의 정보 오류로 인해 수입자의 신고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 심사를 하게 된다. 수정된 정보를 기초로 부과된 관세로 인해 수입자가 수혜를 받게 될 경우 관세는 부과되고 환급이 이뤄진다. 반면, 수정으로 인해 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관세율이 높아진 사실과 종전의 낮은 관세율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있음을 사전에 통보받

는다. 수입자가 이러한 사전통보에 대해 회신이 없거나 회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수정된 관세에 따라 통관절차가 진행되어 수입업자는 추가 관세에 따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관세납부 후에도 수입자는 이의신청서(CBP form 19)¹²²⁾을 사용하여 정정이나 환급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¹²³⁾ 추가 검토에 대한 요청과 관련, 납부일로부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며 이는 18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거절된 경우 수입자는 이의신청 거부 후 180일 이내에 미국 법원에 소환을 제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세관 소송의 과정은 국제 무역, 법원의 규칙, 기타 관련 법령과 판례에 의거해 결정된다.

122) 19 CFR 174

123) 예: 세관에 FTA 관련 무관세 적용품목임을 이의제기하면 심사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짐

[그림 3-1-10] 이의신청서(CBP Form 1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pproved OMB No. 1651-0017 Exp. 03/31/2016	
PROTEST Pursuant to Sections 514 & 514(a),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CFR Part 174 et. seq. <small>NOTE: If your protest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and you wish to CONTEST the denial, you may do so by bringing a civil action i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mailing of Notice of Denial. You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stitution of an action by writing the Clerk of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e Federal Plaza, New York NY 10007 (212-264-2800).</small>		1. PROTEST NO. (Supplied by CBP)	
		2. DATE RECEIVED (CBP Use Only)	
SECTION I - IMPORTER AND ENTRY IDENTIFICATION			
3. PORT	4. IMPORTER NO.	5. ENTRY DETAILS	
6.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OR OTHER PROTESTING PARTY		PORT CODE	FILED ENTRY NO. CHECK DIGIT DATE OF ENTRY DATE OF LIQUIDATION
7. Is Accelerated Disposition being requested (19 CFR 174.22)?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SECTION II - DETAILED REASONS FOR PROTEST			
8.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of merchandise, set forth, separately: (1) each decision protested, (2) the claim of the protesting party, and (3) the factual material and legal arguments which are believed to support the protest. All such material and arguments should be specific. General statements of conclusions are not sufficient.			
<small>(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small>			
SECTION III - REQUEST FO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CTION ON PREVIOUSLY FILED PROTEST			
Protesting party may request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ion taken on a previously filed protest that is the subject of a pending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and is alleged to involve the same merchandise and the same issues. (See 19 CFR 174.13(a)(7).) To request such disposition, enter in Blocks 8 and 9 the protest number and date of receipt of such previously filed protest.			9. PROTEST NO. OF PREVIOUSLY FILED PROTEST
10. DATE OF RECEIPT			
SECTION IV - SIGNATURE AND MAILING INSTRUCTIONS			
11. NAME AND ADDRESS OF PERSON TO WHOM ANY NOTICE OF APPROVAL OR DENIAL SHOULD BE SENT	12. NAME, ADDRESS, AND CBP IDENTIFICATION NUMBER TO WHICH REFUND SHOULD BE SENT	13. IF FILING AS ATTORNEY OR AGENT, TYPE OR PRINT YOUR NAME, ADDRESS AND IMPORTER NUMBER, IF ANY	
14. SIGNATURE		DATE	
X			
<small>(Optional) SECTION V -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Fill in Item 1 above if this is a separate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small>			
15. MARK BOX CORRESPONDING TO YOUR ANSWER TO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YES N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 Have you made prior request of a port director for a further review of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substantially similar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Have you received a final adverse decision from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or do you have action involving such a claim pending befor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 Have you previously received an advers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CBP or his designee or have you presently pending an application for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16. JUSTIFICATION FOR FURTHER REVIEW UNDER THE CRITERIA IN 19 CFR 174.24 AND 174.25 (Include Applicable Rulings)			
<small>(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small>			
SECTION VI - DECISION (CBP USE ONLY)			
17.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EXPLANATION: <input type="checkbox"/> Approved <input type="checkbox"/> Denied for the reason checked: <input type="checkbox"/> Untimely filed <input type="checkbox"/> Does not meet criteria <input type="checkbox"/> Other, namely			
<small>*When further review only is approved the decision on the protest is suspended, pending issuance of a protest review decision.</small>			
18. PROTEST EXPLANATION: <input type="checkbox"/> Approved <input type="checkbox"/> Rejected as non-protestable <input type="checkbox"/> Denied in full for the reason checked: <input type="checkbox"/> Denied in part for the reason checked: <input type="checkbox"/> Untimely filed <input type="checkbox"/> See attached protest review decision <input type="checkbox"/> Other, namely			
19. TITLE OF CBP OFFICER		20. SIGNATURE AND DATE	
<small>Previous Editions are Obsolete</small>		CBP Form 19 (05/10)	

자료: CBP

라. 한-미 FTA 원산지검증¹²⁴⁾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¹²⁵⁾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FTA 검증은 주로 원산지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거래당사자, HS 품목분류 또는 관세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넓은 의미도 포함된다.¹²⁶⁾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검증 방법은 직접검증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다. 다만,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간접검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세관은 한-미 FTA에 의해 수입되는 상품이 특혜관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 서면질의 또는 사업장 방문조사(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조사의 목적은 원산지 증빙기록의 유지의무에 따라 해당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함이다.

미국 세관당국이 서면정보 요청 또는 서면질의 방식으로 요구한 원산지상품의 증명정보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하지 못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 관련 기록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적발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세관장이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그리고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의 관세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¹²⁷⁾

124)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검증대응전략』, 2013. 3, pp. 74~105.

125) 원산지규정의 충족, 원산지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의 원칙 등

126) FTA 원산지검증은 특혜관세 수혜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

127) 미국 관세법 제1592조(사기, 중과실, 과실에 대한 제재)는 사기, 중과실 또는 과실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통관 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자가 FTA 요건에 맞지 않는 특혜관세를 신청하였거나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¹²⁸⁾ 이를 정정한 경우 해당 특혜관세의 추정만하고 처벌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된 수입통관절차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관세청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한 FTA 검증의 형태로 원산지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수입신고건은 주로 관할세관 차원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건은 주로 관세청 차원에서 수행한다.

서면검증은 미국 세관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통하여 원산지증명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된다. 필요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세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만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상태에서 검증은 종료된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FTA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추가적인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현장검증은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

128) 미국 통관관련 규정상 신속하고 자발적이라 함은 통상 ① 수입자, 수출자(생산자)가 특혜관세의 신청 또는 제시된 원산지증명서가 부정확한 것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정보를 담은 서면의 제시 및 ③ 특혜관세 및 통관수수료의 납부의 요건을 갖출 경우를 의미

[그림 3-1-11]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1. Date of Request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input type="checkbox"/>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input type="checkbox"/>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input type="checkbox"/>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input type="checkbox"/>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input type="checkbox"/>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input type="checkbox"/>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자료: CBP

II. 수출 통관 절차

1 개요

미국 관세청은 수출화물과 관련하여 수출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수출화물이 수출에 대한 허가 및 제재에 대해 규정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AES이다.¹²⁹⁾

과거 미국의 수출신고방식은 SED(Shipper's Export Declaration)에 의한 서면 신고방식이었다. 이러한 서면신고방식하에서는 미국의 수출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이행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SED를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본선이 입항하는 선사의 터미널에 있는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하면, 운송인이 화물을 본선에 적입한 후 본선 출항 후 4일 이내에 SED와 적하목록(manifest)을 해당 관할세관에 일괄 제출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류에 의한 수출신고나 이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방식은 불편하거나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수출통계의 정확한 계산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신고의 전자화가 요구되었다.

2008년 7월 2일부터 모든 화물의 수출정보를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신고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느 때라도 신고할 수 있다.¹³⁰⁾

129)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010. 10, p. 23.

130) 한상현 · 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

수출통관은 모두 무서류로 진행되지만 AES에서 내용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내부업무처리 번호인 ITN(International Transaction Number)이 발행된다. AES에 의해 수리되어 ITN을 취득하지 않는 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ITN이 하나의 수출허가증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AES에 의한 수출신고는 통상 수입통관에서 나타나는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수출신고는 무서류이지만 그 내용의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통과된 것에만 ITN이 발행된다. 또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물품이나 군수물자 등은 AES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고 관리된다.¹³¹⁾

2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

AES는 미국 CBP와 통계청 산하 국제무역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 국무부 산하 군수거래통제국, 기타 관계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수출신고시스템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규칙(FTR: Foreign Trade Regulation)과 수출관련 법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¹³²⁾ AES는 여러 정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선적 자료가 관세청에 전자적으로 신고되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방정부의 중앙시스템이다. 현재 미국 내 모든 항만, 공항, 국경을 경유하는 모든 수출에 대해 적용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다.

AES는 수출거래에 참여하는 수출업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항만당국, 서비스센터, 비선박(NVOCC)운송인, 혼재업자(consolidator)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AES는 제공된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수 관련기관에의 중복신고를 감소시키며, 수출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만 ITN을 발송하기 때문에 수출시에 요구되는 법규준수도의 향상을 확보

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6, p. 451.

131) 정재호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p. 41~42.

132)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010.10, p. 24.

할 수 있다. 수출신고 데이터가 생략되거나 잘못된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수출신고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 종이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비용, 그리고 중복보고에 따른 비용 등의 잠재적인 비용절감을 가져다준다. AES에 송신하는 전자수출정보(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를 통해 집계되는 수출통계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에 도움이 된다.¹³³⁾

AES의 접속방법에는 고유의 AES 프로그램 개발, AES 인증소프트웨어 구입, 유료 AES Service Center 이용, 무료 AESDirect 이용이 있다. AE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향서(letter of intent)¹³⁴⁾를 통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AESDirect의 경우 이미 등록과정에서 의향서 제출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AESDirect는 AES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AES 인증소프트웨어 구입이 중소기업에 자금부담이 되어 통세청이 개발한 무료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이다. AES PcLink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AESDirect에 접속하여 AES로 수출신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¹³⁵⁾


AES에서 SED와 전자수출정보(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는 부정 수출, 허가되지 아니한 목적지나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불법수출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133)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6, pp. 440~442.

134)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세청 및 통세청의 성과요건과 운영기준에 대한 개발, 유지를 준수하기로 하는 약속에 대한 제시이다.


135) 정재호·마정화·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010.10, pp. 31~32.

[그림 3-II-1] AESDirect



AESDirect

True Innovation In Export Automation



Log In

- [AESDirect](#)
- [Certification Quiz](#)

Account Set-up & Management

- [Register New Account](#)
- [Registration Help](#)
- [Re-Activate an Account](#)
- [Terms & Conditions](#)
- [Privacy Policy](#)
- [Privacy Act Statement](#)
- [Account Administration](#)

Vendor Account Set-up

- [Developers Center](#)
- [Register Vendor Account](#)

Training

- [User Guides](#)
- [Sample Shipments](#)
- [Online Training](#)
- [Workshops](#)
- [AES Compliance](#)

Using AESDirect

- [Who to Contact](#)
- [Support Center](#)
- [Browser Support](#)
- [Developers Center](#)
- [News](#)

AESpLink

- [About AESpLink](#)
- [Getting Started](#)
- [Terms & Conditions](#)

Web Automation Services

- [About Web Automation](#)
- [Set up Web Automation](#)

Related Sites

- [Government Sites](#)
- [Partner Sites](#)

AESDirect Newsflash
Exciting Outreach and Education Opportunities

[GET EMAIL UPDATES](#)

Welcome to **AESDirect**

Use AESDirect to file your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to the Automated Export System (AES)

New to AESDirect?	Already Registered?	Need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to Register • Register • Account Administration • Need an E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g In • Take Certification Quiz • SSN Eli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r Guides • Online Training • In-person Training • Export Training Videos

AESDirect Products

AESDirect -- Online Internet Filing System

- FREE -- At No Cost to Users
- Allows users to file EEI one-at-a-time on the Internet
- No software or hardware investment
- Check [Minimum System Requirements](#)

•

AESpLink -- PC-based Filing Software

- FREE -- At No Cost to Users
- A software component of AESDirect
- Allows you to key and save EEI without being connected to the Internet
- Software installs directly to your PC or your Network Server
- Automatically links to a company's AESDirect Filing Account on the Internet
- Two editions of AESpLink are available. Check [About AESpLink](#)

•

AESWebLink and EDI Upload -- Other Ways to Transmit to AESDirect

- FREE -- At No Cost to Users

3 수출신고인¹³⁶⁾

AES를 통하여 전자수출정보(EEI)를 신고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미국 수출자(USPPI), 미국 수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외국의 수입자(FPPI)로부터 위임을 받은 미국 내 대리인이다.

가. 수출자(USPPI: U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수출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매도인, 제조자, 발주자 등을 지칭한다.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 구매를 위하여 미국에 체재하면서 수출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발송하는 외국기업들도 수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¹³⁷⁾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모든 수출정보의 정확성과 기한내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나. 수출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수출자가 수출정보의 신고 시 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한데, 이러한 대리인은 수출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수출주체인 수출자를 대신하여 전자수출신고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기한내 정확하게 수출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대리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¹³⁸⁾

위임받은 대리인이 외국기업의 구매에 의한 수출인 경우 수출관리규칙(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라 수출라이센스의 신청 시에는 수출자가 될 수 있지만 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자가 되지 않는다.¹³⁹⁾

136) 정재호·마정화·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010.10, pp. 31~ 32.

137) 15 CFR §30.3 b(2)

138) 수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에 관한 서류를 수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9) 15 CFR §30.3 b(3)

다. 외국의 수입자(FPPI: Foreign Principal Party in Interest)로부터 위임받은 미국 대리인

외국의 수입자(최종 수하인)가 미국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를 위하여 수출신고를 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외국의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미국 수출자나 그 대리인이 외국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는 외국기업의 구매에 의한 수출로 간주된다.

외국의 수입자가 스스로 미국 대리인에게 수출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은 외국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외국수입자로부터 위임장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미국 수출자에게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 수출자는 외국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출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리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미국 수출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⁴⁰⁾ 위임받은 대리인은 미국 수출자나 기타 관련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AES를 통하여 전자수출정보를 기한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전자수출정보에 관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수출통관절차

가. 수출신고 대상 화물 및 신고가격

미국의 수출신고는 2,500달러 이상의 모든 수출화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인터넷으로 주문되어 수출되는 화물도 포함된다. 특히, 허가대상 물품¹⁴¹⁾의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140) 15 CFR §30.3 e(2)

141) 상무성 및 국무성의 라이선스 필요물품, 약품관리청(DEA)의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품, 특정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물품, 기타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 등

수출신고 시의 신고가격은 미국의 수출자가 외국의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가격에 미국 내륙지점으로부터 선정항까지의 내륙운임, 보험, 기타 제수수료를 추가한 가격이다.¹⁴²⁾

나. 수출신고방법¹⁴³⁾

미국의 수출자나 위임대리인이 수출신고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운용되는 인터넷 경유의 AESDirect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AE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으며, 위임대리인을 이용하여 AES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AES에 제공되는 전자수출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으로 수출거래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 시점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SSN(Social Security Number),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국제사업자번호) 번호 등의 ID를 AES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AES 사용의 허가절차는 원칙적으로 AES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AESDirect의 온라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AES 또는 AESDirect의 신청에 대하여 테스트를 받은 후 상무성 통계국은 테스트에 합격한 신청자에게 증명서(AES의 경우) 및 통지서(AESDirect의 경우)를 발송한다.

다. 수출신고방식

1) 출발 전(predeparture) 신고

미국의 수출신고는 대외무역법 시행규칙 FTR 에 따라 수출 전 신고가 원칙이다. 선박화물의 경우 선적되기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항공기 출발예정 2시간 전, 트

142) 15 CFR §30.6 (17)

143) 한상현 · 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6, p. 446.

럭화물의 경우 트럭이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철도화물은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기 2시간 전, 우편과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수출하기 2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군수품 목록 화물인 USML(United State Munitions List)화물의 경우 항공운송과 트럭화물은 출발 8시간 전까지, 해상운송과 철도화물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AES를 통하여 전자수출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¹⁴⁴⁾

운송수단별 화물정보의 제출기한은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수출허가 대상 화물은 화물정보의 사전제출요건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출발 전에 화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¹⁴⁵⁾

2) 출발 후(post departure) 신고

출발 후 수출신고는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수출자만이 가능한데, 그 신고는 출발 후 10일 이내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발 후 신고 승인을 받은 미국 수출자가 직접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승인을 받은 AES 위임 대리인이 미국수출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대리인이 미국의 수출자를 대신하여 출발 후 신고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출발 후 신고는 수출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¹⁴⁶⁾

3) 신고의 증명

수출자는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대상이라는 증명을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수출선적지시서, 기타 선적서류의 첫 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여 수출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출신고사실은 수출정보가 송신된

144)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6, p. 447.

145)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p. 41~42.

146)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6, pp. 448~449.

대로 수리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출발 후 신고대상이라는 증명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며, 출발 후 신고증명 또는 면제증명은 수출하기 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운송인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신고증명이나 수출신고면제증명을 출항적하 목록에 기재하여 수출항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수출자로부터 이러한 증명자료를 제공받지 않으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¹⁴⁷⁾

라. 운송인의 적하목록 제출

운송인은 완전한 적하목록(manifest) 및 여타 필요로 하는 서류(B/L, AWB, 수출 선적지시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⁴⁸⁾

또한 운송인은 미 세관이 위험도가 높은 물품으로 선별하여 통보한 화물의 검사를 위해 해당 화물을 세관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화물이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세관은 수출운송인에게 국제운송인담보(International Carrier Bond)조건에 따라 화물을 회송시켜 세관에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¹⁴⁹⁾

5 수출에 필요한 서류¹⁵¹⁾

미국의 수출신고는 서면방식으로부터 AES에의 전자신고로 전환을 통하여 문서가 전자화되었다. AES에 송신하는 전자수출정보(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항목에는 모든 신고에 필요한 필수적 항목, 라이선스 물품 등 특정화물의 신고에 필요한 조건부 항목, 그리고 임의신고 항목 등 3가지가 있다.

필수적 항목에는 미국 수출자와 ID, 수출년월일, 최종수하인, 최종목적국, 그리고

147) 정재호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 42.

148) 15 CFR §30.45a)

149)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010. 10, p. 30.

150) http://www.export.gov/logistics/eg_main_018121.asp

운송수단 등의 항목이 있으며, 조건부 항목에는 위임대리인과 ID, 수출라이선스번호 및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등의 항목이 있고, 임의신고 항목에는 봉인번호(Seal Number)와 운송장비번호(컨테이너번호 등)가 있다.¹⁵¹⁾

이러한 미국의 수출신고를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서류들이 있지만, 수출대상국과 수출물품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가. 공통 수출 서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로서, 각국 관세청은 관세평가 시 물품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상업송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송장의 양식, 기재항목, 필요 부수, 사용 언어 및 기타 다른 특징들을 규정해 두고 있다.

2)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견적송장은 수출자가 물품의 선적에 앞서 준비하는 것으로, 배송할 물품, 가격 등 주요 특징을 수입자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판매 제안이나 가격산정 시에도 사용될 수 있다.

3)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일부국가에서 요구되는 영사송장은 수출물품의 명세를 기재하고 송하인, 수하인 및 수출물품의 가격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필요한 경우 미국에 소재한 목적지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151)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6, p. 443.

4) 수출포장명세서(Export Packing List: EPL)

수출포장명세서는 국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EPL에는 수출자, 수입자, 송장번호, 선적일, 운송형태, 운송인 등이 기재되고 수량, 물품 명세, 포장형태, 총중량 및 순중량, 포장 마크, 부피 등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EPL은 CI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미국과 해외 세관원들은 화물을 체크하기 위해 수출포장명세서를 활용한다.

나. 운송 서류

항공화물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way Bill)이 필요하며, 이는 운송인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선박화물의 경우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물품의 소유자와 운송인 간의 계약으로 발급되는 서류이다.

다. 수출규제 준수서류

수출면허(export license)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특정한 양을 특정 지역에 수출하도록 허락하는 정부문서이다. 이 서류는 몇몇 국가의 경우 대부분 혹은 모든 수출에 대해 요구되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복수용도 물품(dual-use article)에 대해서는 상무부 산업안전국(the Department of Commerce'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국방물품(defense articles)은 국무부 국방무역통제국에서, 핵물질은 핵물질통제위원회(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통제물질 및 화학물질은 약사관리청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한다.

도착지통제문서(Destination Control Statement: DCS)는 EAR99(면허가 필요 없는 물건)외에 상무부의 통제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에 포함되는 경우나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¹⁵²⁾에 통제되는 물품의 수출

152)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는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어하는 것으로 미 수출제한법안 22장에 근거를 둔다(위키백과).

에 요구되는 서류이다.¹⁵³⁾

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는 일부국가에서 모든 혹은 특정물품에 대해 필요로 하는 서류이다. 많은 경우 기업 명의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으로 충분하며, 수출자는 수입자, 화물운송인 또는 무역정보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해야 한다.

중동국가들과 같은 일부 국가는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증명하거나 도착국가의 영사관 상무부서에서 공증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정 중동국가들에서는 U.S.-Arab 상공회의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제조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요구되는 부수와 언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에 의해서 요구될 수 있다. NAFTA, 호주, 요르단, 바레인,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¹⁵⁴⁾ 칠레, 이스라엘, 모로코, 싱가포르, 페루, 한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각 협정별로 지정된 양식이 있거나 원산지증명서 형식은 없지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USCIB에서는 현재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자원산지증명서(eCOs)의 발행이 가능하다.

마. 기타 관련 증명서류

수입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안전담보를 면제하여 외국에 일시적인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시수입통관증명서(ATA Carnet)가 사용될 수 있으며, 중량과 품질에 대한 입증에 대해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가 요구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 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적인 검사회사와 계약하여 선적전 검사(Pre-Shipment

153) Export Compliance Introduction, and Exporting Commercial Items: ECCNs and EAR99

154)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Inspections)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고, 표준이하의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고,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떤 국가들은 중고물품에 대해서도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운반 중 화물에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담보하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씨앗, 곡물가루, 건강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과일 및 야채, 의약품 등에 요구되는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생물학적 약제, 식품, 의약품, 의료기구나 가축 약품에 대해 발행되는 무료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위험물로 분류되어 운송인에 의해 특별 취급되기 위해 제출하는 위험물 증명서(Dangerous Goods Certificate), 미 수산청(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이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분석을 행하고 발행하는 수산물증명서(Fisheries Certificate)가 있다.

그 밖에, 수출품이 훈증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훈증증명서(Fumigation Certificate), 중동의 대부분 국가에서 요구되는 할랄증명서¹⁵⁵⁾(Halal Certificate), 산동물과 관련된 제품에 필요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식품에 대해 요구될 수 있는 성분증명서(Ingredients Certificate), 열처리증명서(Phytopsanitary Certificate), 방사능증명서(Radiation Certificate), 중량증명서(Weight Certificate) 등의 서류가 수출 시 필요할 수 있다.

6 미국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¹⁵⁷⁾

가. 개요

미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및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를 두

155) 가금류나 육류가 이슬람법에 따라서 도살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상공회의소와 도착지 국가의 영사관에서 발급한다.

156) 전략물자관리원

고 있다. 동 법률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을 이유로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기술, 또는 미국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의해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부처별 수출규제

미국의 수출통제 권한은 통제목적, 대상품목의 성격 및 대상국에 따라 상무부를 비롯하여,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분할되어 있으며¹⁵⁷⁾ 일부 품목이나 대상국이 부처 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상무부는 군사용과 민수용 겸용의 이중용도(dual use)품목, 국무부는 무기 등 방산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핵 전용물질 및 장비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며, 재무부는 테러지원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 핵무기, 미사일 관련 일부품목은 상무부와 국무부 간에 관할이 겹치는 품목이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부처로는 이중용도(Dual-Use)품목을 규제하는 상무부(DOC/BIS), 방산물자 및 서비스, 기술데이터를 통제하는 국무부 방위무역 관리국(DOS/DDTC), 테러지원국(이란, 리비아, 수단, 쿠바 등) 등 특정국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DOT/OFAC), 핵전용 물질 및 장비를 규제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이 있다.

1) 상무부 산업안보국(DOC/BIS)¹⁵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은 통제기관 중에서 수출관리법규의 1차적인 집행기관으로 관할하는 통제품목이 타 기관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 등 국제체제의 규제이유 외에도 테러방지, 범죄단속, 공급부족, UN제재 등을 이유로

157)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는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국무부의 방위무 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of Trade Control : ODTC),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OFAC),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ttee : NRC)가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4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158) <http://www.bis.doc.gov>

한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CCL(Commerce Control List)에 의해 국제체제(AG,¹⁵⁹⁾ BWC,¹⁶⁰⁾ CWC,¹⁶¹⁾ MTCR¹⁶²⁾의 품목 외에도 독자적인 규제 품목 등 거의 모든 품목을 망라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실시하는 수출통제의 특징은 역외적용에 있다. 즉, 상무부가 시행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의 대외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제3국으로의 재수출도 규제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미국산 품목이 포함된 자사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사전허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재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Dual-Use 품목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무부 소관이지만, 특정 분야의 품목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무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도 재수출 규제로서 관계하는 경우도 있다. 각 부처는 각각 별도의 규제목적에 갖고 별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품목이 여러 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적으로 상무부는 적국거래법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의거해서 특정 국가, 단체, 개인이 미국 국민이나 혹은 미국으로부터의 무역과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집행하고 강제하고 있다.

2)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DOS/DDTC)¹⁶³⁾

상무부가 Dual-Use 품목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무기 관련 품목의 규제는 국무부의 방위무역관리국(DDTC :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이 담당하고 있다.

159) Australia Group(AG)는 생화학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비공식 국제기구

160)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는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할 목적으로 1975년 발효한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

161) Chemical Weapon Convention(CWC)는 1997년 발효한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162)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은 미사일의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1987년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

163) <http://www.pmdtc.org/itar>

USML(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에는 총포, 화기, 탄약, 폭발물, 군함, 특수해군장비, 항공기 및 관련장비, 군사훈련장비, 보호장비, 군용전자장치, 군용보조장비, 군용화학제제, 군용생체고분자, 우주장치, 핵무기, 디자인 및 실험관련 품목, 방향성에너지무기, 잠수함 등의 통제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수출통제를 행사하는 법령 중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국무부가 무기규제에 대한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에 의해 동법을 집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ITAR은 국방관련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수출에 관련한 면허 및 다른 권한의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 단체가 국방관련물자와 서비스를 생산, 수출, 중개하는 경우 미국정부에 등록을 한다.

EAR은 Dual-Use 품목 즉, 민수용도와 군사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ITAR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이나 기술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수용으로부터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ITAR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EAR의 규제내용이 규제리스트인 CCL이나 규정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데 비해, ITAR의 문장은 짧다. 그만큼 DDTC에 의한 해석 재량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DOT/OFAC)¹⁶⁴⁾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테러지원국¹⁶⁵⁾ 등 특정국에 대해 경제 및 무역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금수조치의 경우 전면금수에서 부분금수까지 각각 상대국에 따라 다르며 금융, 자산, 투자, 식품이나 인도적 물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입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금수 대상국별로 규제내용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 결과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품목과 중복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보통 재무부의 금수정책이 우선한다. 또한 재무부의 금수정책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

164) <http://www.treas.gov/ofac/>

165)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수단, 쿠바 등

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인 재수출자에게도 관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원자력규제위원회(NRC)¹⁶⁶⁾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미국기업의 핵물질의 안정적 사용 및 핵 확산방지 활동을 지원하며, 핵원자로 및 핵연료 사이클 시설 및 부품의 수출입 허가를 담당한다.

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의 확산방지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제한 없는 수출이 초래할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UN의 제재조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며,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 Security)이 시행하고 있다.

EAR에서 이중용도(dual use)라는 용어는 상무부 외의 수출통제 정부기관의 통제 품목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군사적·전략적 용도 및 상업적 용도의 이중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국무부 관할의 무기 및 기타 군사적 용도의 통제품목, 에너지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 관련 통제품목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¹⁶⁷⁾

EAR의 규제는 규제대상품목(제품, 기술, 소프트웨어)¹⁶⁸⁾의 이전에 착안한 품목규제와 개인이나 법인의 활동(activities)에 주목한 활동규제의 양면으로 성립되어 있다. 수출·재수출이라고 말한 경우는 주로 품목의 이전에 착안한 것이며, 그와는 별

166) <http://www.nrc.gov/>

167) 상무부가 관할하는 Dual-Use 품목의 규제는 그 대상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방대한 규제체제로 되어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168) 일반에 공개되고 취득이 용이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적자적 형태 및 매체에 포함된 경우는 EAR 적용 대상), 신문 등 일반간행물, 다른 부처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점적으로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은 EAR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도로 활동(activities)에 착안한 규제가 있으며 수출·재수출이라는 행위가 아니고 미국이 규제를 하고자 하는 활동을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EAR의 수출통제 규정의 특징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은 물론 미국 밖에서의 거래 또는 사람의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수출된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수입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도 통제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허가 없이 재수출할 수 있고, 허가대상이라도 다양한 종류의 허가예외(License Exceptions)가 적용되면 허가가 면제된다.

한편, EAR은 수출(exports)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도 수출로 간주(deemed export)하며,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제3국의 외국인에게 미국산 기술을 공개(release)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술이 당해 외국인의 모국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간주(deemed reexport)하여 이를 통제한다.¹⁶⁹⁾

재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중대 위반자는 DPL(Denied Persons List)¹⁷⁰⁾에 게재하여 공표되며 미국산 품목의 취급제한이나 금지 및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 등이 부과, 타사로부터 위반자로 미국산 품목의 거래도 제한된다. 즉, 미국산 품목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 또한 EAR에서 수출은 미국에서 수리한 외국장비의 원래 국가로의 반환, 미국의 자유무역지대(FTZ: Foreign Trade Zone)로부터의 선적 및 민간 기술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포함한다. 미국을 통과하는 화물은 미국영토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수출로 간주되는데, 통과 및 환적에 의해 미국을 경유하는 화물도 통상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EAR이 적용된다. 그리고 EAR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이 외국산 제품을 수출하거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행위(activities)를 금지하며, 미국인과 외국인이 금지명령(Denial orders)를 포함하여 EAR에 의거한 각종 명령으로 금지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암호상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인의 기술

169) EAR은 미국 영토 외에서 미국산 완제품, 또는 미국산 부품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포함된 외국제품을 각각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영토 밖에서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산 기술로 만든 공장 또는 미국산 기술로 만든 주요 설비로 구성된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특정국가로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미 상무부 BIS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BIS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당해 품목의 기술적 특성, 행인지, 최종사용자, 최종용도를 중시한다(전략물자관리원).

170) <http://www.bis.doc.gov/index.php/recent-changes-to-the-denied-persons-list>

적 지원을 통제한다. EAR은 미국 연방법령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Titl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Chapter VII에 Part 730부터 774까지 총 45개 Parts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EAR에는 CCL(Commerce Control List)과 CCC(Commerce Country Chart)가 있으며, CCL에는 ECCN으로 식별되는 품목별로 규제이유를 표시한 기호가 적혀 있다.

〈표 3-II-1〉 EAR 조항 및 내용

조 항	내 용
Part 730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Part 732	EAR 사용단계(Steps for Using the EAR)
Part 734	EAR 범위(Scope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Part 736	일반적 금지사항(General Prohibitions)
Part 738	CCL 개요와 국가차트(Commerce Control List Overview and the Country Chart)
Part 740	허가예외(License Exceptions)
Part 742	통제정책 - CCL 통제(Control Policy - CCL Based Controls)
Part 743	특별보고 요건(Special Reporting Requirements)
Part 744	통제정책: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Control Policy: End-User and End-Use Based)
Part 745	화학무기금지협약 요건(CWC Requirements)
Part 746	금수국과 기타 특별통제(Embargoes & Other Special Controls)
Part 747	특별 이라크 재건 허가(Special Iraq Reconstruction License)
Part 748	신청(식별, 상담 및 허가) 및 신청서류(Application Classification Advisory and License)
Part 750	신청처리, 발부 및/또는 거부(Application Processing Issuance and/or Denial)
Part 752	특별포괄허가(Special Comprehensive License)
Part 754	공급부족 통제(Short Supply Controls)
Part 756	항고(Appeals)
Part 758	수출통관 요건(Export Clearance Requirements)
Part 760	제한적 무역관행 또는 보이콧(Restrictive Trade Practices or Boycotts)

〈표 3-11-1〉의 계속

조 항	내 용
Part 762	기록(Recordkeeping)
Part 764	집행과 보호조치(Enforcement and Protective Measures)
Part 766	행정집행절차(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ceedings)
Part 768	해외조달가능성 결정절차 및 기준(Foreign Availability)
Part 770	해설(Interpretations)
Part 77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of Terms)
Part 774	CCL(The Commerce Control List)

자료: EAR Database (http://www.access.gpo.gov/bis/ear/ear_data.html), 전략물자관리원

라. 수출허가 신청

미국의 수출통제 목록은 크게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수품 목록(USML)과 상무부가 관리하는 통제목록(CCL)으로 나뉘는데 (재)수출 예정품목이 이 리스트들에 포함된 경우 허가예외(LE)가 발견되지 않으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정해진 양식 BIS-748P(Multipurpose Application Form)¹⁷¹⁾를 사용하여 작성·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최종 수하인과 구매자의 서약서(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BIS-711)를 첨부한다. 기타 지역이나 규제 내용에 따라 Import Certificate(IC)나 End-User Certificate, WA(Written Assurance), SSP(Security Safeguard Plans)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허가신청 서류는 모두 워싱턴의 BIS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자의 사전 BIS등록에 의해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DCS (Destination Control Statement)는 미국에서 수출할 때 해당 품목이 미국법에 위반하는 확산(재수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문장으로 인보이스, B/L, AWB, 기타 관련서류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재수출자는 수입품목의 이러한 문장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자격,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최종사용자(end-user)로의 수출에 대한 적절성, 국

171) 미 상무부, 외국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입수할 수 있다.

가안보 관련, 외교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관계 있는 미국 정부부처(즉 국방부, 에너지부, 정보당국, 항공우주국, 국무부)의 검토를 포함한다.

수출허가가 나면 수출이 이행되며, 면허발행당국은 사전적인 점검과 함께 사후증명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수출 후 최소 5년간 관련서류¹⁷²⁾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한 편이라서 수입금지 및 통관대리인 등의 수출대행업무 등이 금지되는 행정제제와 함께 민사와 형사상 벌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172) 허가신청서, 허가서, 증명서, 성명서, 통관 관련 서류, 거래계약서 등

[그림 3-II-2] BIS-711(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FORM BIS-711 FORM APPROVED UNDER OMB CONTROL NO. 0694-0021, 0694-0093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small>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2(c)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as amended, 50 U.S.C. app 2411(c) and its unauthorized disclosure is prohibited by law.</small>		DATE RECEIVED (Leave Blank)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1. ULTIMATE CONSIGNEE			CITY		
ADDRESS LINE 1			COUNTRY		
ADDRESS LINE 2			POSTAL CODE	TELEPHONE OR FAX	
2. DISPOSITION OR USE OF ITEMS BY ULTIMATE CONSIGNEE NAMED IN BLOCK 1 We certify that the items: <i>(left mouse click in the appropriate box below)</i>					
A. <input type="checkbox"/> Will be used by us (as capital equipment)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a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country named in Block 1 and will not be reexported or incorporated into an end product.					
B. <input type="checkbox"/> Will be processed or incorporated by us into the following product (s) _____ to be manufactured in the country named in Block 1 for distribution in _____					
C. <input type="checkbox"/> Will be resol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the country named in Block 1 for use or consumption therein. The specific end-use by my customer will be _____					
D. <input type="checkbox"/> Will be reexporte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to _____					
E. <input type="checkbox"/> Other (describe fully) _____					
<small>NOTE: If BOX (D) is checked, acceptance of this form by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as a supporting document for license applica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an authorization to reexport the items to which the form applies unless specific approval has been obtained from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for such export.</small>					
3. NATURE OF BUSINESS OF ULTIMATE CONSIGNEE NAMED IN BLOCK 1					
A. The nature of our usual business is _____					
B. Our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U.S. exporter is _____ and we have had this business relationship for _____ year(s).					
4. ADDITIONAL INFORMATION					
5. ASSISTANCE IN PREPARING STATEMENT					
STATEMENT OF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small>We certify that all of the facts contained in this statement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we do not know of any additional fact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bove statement. We shall promptly send a supplemental statement to the U.S. Exporter, disclosing any change of facts or intentions set forth in this statement which occurs after the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nd forwarded,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parts 730-774), or by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we will not reexport,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items approved on a license supported by this statement (1) to any country not approved for export as brought to our attention by means of a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or any other means, or(2) to any person if we know that it will result directly or indirectly, in disposition of the items contrary to the representations made in this statement or contrary to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small>					
6. SIGNATURE OF OFFICIAL OF ULTIMATE CONSIGNEE			7. NAME OF PURCHASER		
NAME OF OFFICIAL			SIGNATURE OF PURCHASER		
TITLE OF OFFICIAL			NAME OF OFFICIAL		
DATE (mmmm,dd,yyyy)			TITLE OF OFFICIAL		
CERTIFICATION FOR USE OF U.S. EXPORTER - We certify that no corrections, additions, or alterations were made on this form by us after the form was signed by the (ultimate consignee/purchaser).			DATE (mmmm,dd,yyyy)		
8. NAME OF EXPORTER			SIGNATURE OF PERSON AUTHORIZED TO CERTIFY FOR EXPORTER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TITL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DATE (mmmm,dd,yyyy)	
We acknowledge that the making of any false statements or concealment of any material fact in connection with this statement may result in imprisonment or fine, or both and denial, in whole or in part, of participation in U.S. exports and reexports.					
<small>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average 15 minutes per response plus one minute for recordkeeping, including the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searching existing data sources, gathering and maintaining the data needed, and completing and review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the Director of Administration, Room 3895,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small>			<small>Washington, DC 20230, an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perwork Reduction Project (0694-0021, 0694-0093), Washington, D.C. 20503.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person is obligated to respond to nor shall a person be subject to a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a collect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unless that collection of information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small>		

마.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

미국의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 ECS)을 통해서 일부 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민감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어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ECS에서 감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행정부가 수출면허를 발급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ECS하에서는 3개의 다른 미국 정부부처 즉,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가 수출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2009년에만도 동 부서들은 13만개가 넘는 신청을 처리했고, 2010년에도 상무부만으로 대략 2만건 이상의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ECS의 목적은 단일면허부서(Single Licensing Agency: SLA)를 만들어서 수출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과 면허신청을 조율하는 미국 정부에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며 적시에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¹⁷³⁾

바.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동향¹⁷⁴⁾

2013년 10월 국가안보 및 제조·기술 부문의 수출을 늘리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수출통제 및 규제제도를 완화하였다. 즉, 안보 민감도에 따라 가장 민감한 물품은 군수품 목록(USML)에 남겨두고 덜 민감한 품목을 대거 상무부 통제목록(CCL)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CCL의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USML의 품목¹⁷⁵⁾과 달리 등록의무 요건이 없어졌고 수출허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의 수출단속 특별 요원과 국토안보부 산하 수출단속 조정센터(Export Enforcement Coordination Center)는 수출통제제도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출통제시스템의 경우 과거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세 부서가 서로 다른 전자시

173) export.gov (<http://www.export.gov/>)

174)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상품·산업트렌드, 美 수출통제제도 개정 및 발효, 2013.10.

175) USML 통제 품목의 제조자 등은 수출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매년 새로 등록하고 등록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음

204 제3편 수출입 통관 절차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현재 한 개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수출통제 및 허가 업무를 통일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부서의 수출 통제 및 허가 업무의 정보와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관세청,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할당관세제도 개선 및 여론수렴 확대방안 모색」, 2013.09
-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벽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여름호.
- 백종실,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23호, 2003. 4.
- 산업통상자원부,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함께하는 FTA』, Vol.27, 2014.08
- 송선욱,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 환급제도의 개선방안」, 『무역학회지』, 제30권 제3호, 2005. 6.
- 외교통상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2013.12.
- 원종학 · 김진수,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7.
- 유새별, 「TTIP(미 · EU FTA)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상 동향과 주요 쟁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08 No.10, 2014. 4.
- 유혜정, 「2011년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2012. 4.
- 이상엽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장근호,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1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4.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Ⅰ)』,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전혜원, 「EU · 미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03.
- 정용찬 외, 「2011년 국제방송시장과 수용자 통계 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13.
- 정재호, 박지우, 양지영, 『주요국의 AEO 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
구원, 2014.

정재호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
연구원, 2009, p. 37.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한국조세
연구원, 2009.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 캐나다』, 한국조세연구원, 2013. 11.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 2013. 3.

한상현, 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 6.

CBP,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6.

KOTRA, 「한미 FTA 발효 2년 對美 수출 성과 분석」, 『Global Market Report』 14-
006, KOTRA, 2014. 3

WTO, “Trade Policy Review; United State,” 2012. 11.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foreign

관세청, www.cus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미국 관세청, www.cbp.go.kr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www.bea.gov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hts.usitc.gov/>

씨엘관세정보, www.clhs.co.kr

자본시장연구원, www.kcmi.re.kr

전략물자관리원, <http://www.kosti.or.kr>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통관닷컴, 각국의 관세환급
과 그 유사제도, 2006.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ATA 까르네, www.atacarnet.com

FTA무역종합지원센터, www.okfta.kita.net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globalwindow.org/>

IMF, www.imf.org

OECD, <http://stats.oecd.org>

US Census Bureau

UNCTAD

USTR, www.ustr.gov

US government manual

WTO, www.wto.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www.export.gov

부록

〈부표 1〉 미국 관세청 지역 사무소 및 통관항 코드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1 NORTHEAST REGION	
0101	Portland, Maine
0102	Bangor, Maine
0103	Eastport, Maine
0104	Jackman, Maine
0105	Vanceboro, Maine
0106	Houlton, Maine
0107	Fort Fairfield, Maine
0108	Van Buren, Maine
0109	Madawaska, Maine
0110	Fort Kent, Maine
0111	Bath, Maine
0112	Bar Harbor, Maine
0114	Manchester, New Hampshire
0115	Calais, Maine
0118	Limestone, Maine
0121	Rockland, Maine
0122	Jonesport, Maine
0127	Bridgewater, Maine
0131	Portsmouth, New Hampshire
0132	Belfast, Maine
0152	Searsport, Maine
0181	Lebanon Airport
0182	Manchester Airport
0201	St. Albans, Vermont
0203	Richford, Vermont
0206	Beecher Falls, Vermont
0207	Burlington, Vermont
0209	Derby Line, Vermont
0211	Norton, Vermont
0212	Highgate Springs/Albany, Vermont
0401	Boston, Massachusetts
0402	Springfield, Massachusetts
0403	Worcester, Massachusetts
0404	Gloucester, Massachusetts
0405	New Bedford, Massachusetts
0406	Plymouth, Massachusetts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0407	Fall River, Massachusetts
0408	Salem, Massachusetts
0409	Provincetown, Massachusetts
0410	Bridgeport, Connecticut
0411	Hartford, Connecticut
0412	New Haven, Connecticut
0413	New London, Connecticut
0416	Lawrence, Massachusetts
0417	Logan Airport, Massachusetts
0501	Newport, Rhode Island
0502	Providence, Rhode Island
0503	Mellville, Rhode Island
0601	Bridgeport, Connecticut
0602	Hartford, Connecticut
0603	New Haven, Connecticut
0604	New London, Connecticut
0701	Ogdensburg, New York
0704	Massena, New York
0706	Cape Vincent, New York
0708	Alexandria Bay, New York
0712	Champlain-Rouses Point
0714	Clayton, New York
0715	Trout River, New York
0901	Buffalo-Niagara Falls, New York
0903	Rochester, New York
0904	Oswego, New York
0905	Sodus Point, New York
0906	Syracuse, New York
0907	Utica, New York
0971	TNT Skypak, New York
0972	Swift Sure Courier Services, New York
0977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Rochester, New York
0978	Syracuse International Airport, Syracuse, New York

〈부표 1〉의 계속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0979	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 New York
0981	Binghamton Regional Airport, New York
1101	Philadelphia, Pennsylvania
1102	Chester, Pennsylvania
1103	Wilmington, Delaware
1104	Pittsburgh, Pennsylvania
1105	Paulsboro, New Jersey
1106	Wilkes-Barre/Scranton, Pennsylvania
1107	Camden, New Jersey
1108	Philadelphia International Air, Philadelphia, Pennsylvania
1109	Harrisburg, Pennsylvania
1119	Allentown, Pennsylvania
1171	Harrisburg (UPS) Airport
1181	Allentown-Bethlehem, Pennsylvania
1182	Atlantic City Airport, New Jersey
1183	Trenton/Mercer County Airport, New Jersey
1195	UPS Hub, Philadelphia, Pennsylvania
1301	Annapolis, Maryland
1302	Cambridge, Maryland
1303	Baltimore, Maryland
1304	Crisfield, Maryland
1305	Baltimore-Washington International Airport, Maryland
2 NEW YORK REGION	
1001	New York, New York
1002	Albany, New York
4601	New York/Newark Area, New Jersey
4602	Perth Amboy, New Jersey
4670	UPS, Newark, New Jersey
4671	Federal Express, Newark, New Jersey
4681	Morristown Airport, New Jersey
4701	John F Kennedy Airport, Jamaica, New York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4770	Federal Express Corp., Jamaica, New York
4771	NYACC, Jamaica, New York
4772	DHL Airways, Jamaica, New York
4773	Micom, Jamaica, New York
4774	Air France, Jamaica, New York
4775	Dworkin/Cosell Courier, Jamaica, New York
4776	Swissair (Skyracer), Jamaica, New York
4777	Alitalia (Aliexpress), Jamaica, New York
4778	TNT Skypak, Jamaica, New York
3 NORTH CENTRAL REGION	
3301	Raymond, Montana
3302	Eastport, Idaho
3303	Salt Lake City, Utah
3304	Great Falls, Montana
3305	Butte, Montana
3306	Turner, Montana
3307	Denver, Colorado
3308	Porthill, Idaho
3309	Scoby, Montana
3310	Sweetgrass, Montana
3312	Whitetail, Montana
3316	Piegan, Montana
3317	Opheim, Montana
3318	Roosville, Montana
3319	Morgan, Montana
3321	Whitlash, Montana
3322	Del Bonita, Montana
3323	Wildhorse, Montana
3324	Kalispell, Montana
3325	Willow Creek, Montana
3332	Casper, Wyoming
3377	Great Falls International Airport, Montana
3382	Natrona County International Airport, Casper, Wyoming
3401	Pembina, North Dakota
3402	Noyes, Minnesota
3403	Portal, North Dakota
3404	Neché, North Dakota

〈부표 1〉의 계속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3405	St. John, North Dakota
3406	Northgate, North Dakota
3407	Walhalla, North Dakota
3408	Hannah, North Dakota
3409	Sarles, North Dakota
3410	Ambrose, North Dakota
3411	Fargo International Airport, North Dakota
3413	Antler, North Dakota
3414	Sherwood, North Dakota
3415	Hansboro, North Dakota
3416	Maida, North Dakota
3417	Fortuna, North Dakota
3419	Westhope, North Dakota
3420	Noonan, North Dakota
3421	Carbury, North Dakota
3422	Dunseith, North Dakota
3423	Warroad, Minnesota
3424	Baudette, Minnesota
3425	Pinecreek, Minnesota
3426	Roseau, Minnesota
3427	Grand Forks Airport, Grand Forks, North Dakota
3428	Winnipeg International Airport
3429	Crane Lake, Minnesota
3430	Lancaster, Minnesota
3501	Minneapolis-St. Paul, Minnesota
3502	Sioux Falls, South Dakota
3510	Duluth, Minnesota
3511	Ashland, Wisconsin
3512	Omaha, Nebraska
3513	Des Moines, Iowa
3581	Rochester, Minnesota
3604	International Falls, Minnesota
3613	Grand Portage, Minnesota
3614	Silver Bay, Minnesota
3701	Milwaukee, Wisconsin
3702	Marinette, Wisconsin
3703	Green Bay, Wisconsin
3706	Manitowoc, Wisconsin
3707	Sheboygan, Wisconsin
3708	Racine, Wisconsin
3801	Detroit, Michigan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3802	Port Huron, Michigan
3803	Sault Ste. Marie, Michigan
3804	Saginaw/Bay City, Michigan
3805	Battle Creek, Michigan
3806	Grand Rapids, Michigan
3807	Detroit Metropolitan Airport, Michigan
3808	Escanaba, Michigan
3809	Marquette, Michigan
3814	Algonac, Michigan
3815	Muskegon, Michigan
3816	Grand Haven, Michigan
3818	Rogers City, Michigan
3819	Detour, Michigan
3820	Mackinac Isle, Michigan
3822	South Haven, Michigan
3842	Presque Isle, Michigan
3843	Alpena, Michigan
3844	Ferrysburg, Michigan
3881	Oakland County International Airport, Michigan
3882	Willow Run Airport, Michigan
3901	Chicago, Illinois
3902	Peoria, Illinois
3904	East Chicago, Indiana
3905	Gary, Indiana
3906	O'Hare International Airport
3908	Davenport-Rock Island, Milan, Illinois
3909	Rockford Airport, Rockford, Illinois
3910	Midway International Airport
3981	Waukegan Airport, Waukegan, Illinois
3983	Chicago Executive Airport, Chicago, Illinois
3985	Decatur Airport, Decatur, Illinois
3991	Nippon Courier Hub, Chicago, Illinois
4101	Cleveland, OH
4102	Cincinnati/Northern Kentucky Int'l Airport, Erlanger, KY
4103	Columbus, OH

〈부표 1〉의 계속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4104	Dayton, OH
4105	Toledo/Sandusky, OH
4122	Ashtabula/Conneaut, Ohio
4 SOUTHEAST REGION	
1401	Norfolk, Virginia
1402	Newport News, Virginia
1404	Richmond-Petersburg, Virginia
1406	Cape Charles, Virginia
1407	Reedville, Virginia
1408	Hopewell, Virginia
1409	Charleston, West Virginia
1410	Front Royal, Virginia
1481	New River Valley Airport, Dublin, Virginia
1501	Wilmington, North Carolina
1502	Winston-Salem, North Carolina
1503	Durham, North Carolina
1511	Beaufort-Morehead City, North Carolina
1512	Charlotte, North Carolina
1601	Charleston, South Carolina
1602	Georgetown, South Carolina
1603	Greenville-Spartanburg South Carolina
1604	Columbia, South Carolina
1681	Myrtle Beach International Airport, South Carolina
1701	Brunswick, Georgia
1703	Savannah, Georgia
1704	Atlanta, Georgia
1801	Tampa, Florida
1803	Jacksonville, Florida
1805	Fernandina Beach, Florida
1806	Carrabelle, Florida
1807	Boca Grande, Florida
1808	Orlando, Florida
1809	Orlando Sanford Airport, Sanford, Florida
1814	St. Petersburg, Florida
1816	Port Canaveral, Florida
1817	Apalachicola, Florida
1818	Panama City, Florida
1819	Pensacola, Florida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1820	Port St. Joe, Florida
1821	Port Manatee, Florida
1822	Fort Myers, Florida
1883	Sarasota Bradenton Airport, Sarasota, Florida
1884	Daytona Beach International Airport, Daytona Beach, Florida
1885	Melbourne Airport, Florida
1886	Ocala Regional Airport, Florida
1887	Leesburg Regional Airport, Florida
1888	Orlando Executive Airport, Florida
1889	St Augustine Airport Ufa
1899	Tampa Cartage Control
4901	Aguadilla, Puerto Rico
4904	Fajardo, Puerto Rico
4905	Guanica, Puerto Rico
4906	Humacao, Puerto Rico
4907	Mayaguez, Puerto Rico
4908	Ponce, Puerto Rico
4909	San Juan, Puerto Rico
4911	Jobos, Puerto Rico
4912	Guayanilla, Puerto Rico
4913	San Juan International Airport, Puerto Rico
4978	Luis Munoz International Airport, Puerto Rico
4979	Rafael Hernandez Airport, Puerto Rico
5101	Charlotte Amalie, Virgin Islands
5102	Cruz Bay, Virgin Islands
5103	Coral Bay, Virgin Islands
5104	Christiansted, Virgin Islands
5105	Frederiksted, Virgin Islands
5107	St Croix
5201	Miami, Florida
5202	Key West, Florida
5203	Port Everglades, Florida
5204	West Palm Beach, Florida
5205	Fort Pierce, Florida
5206	Miami International Airport, Miami, Florida
5208	Charlotte Amalie, Virgin Islands

〈부표 1〉의 계속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5210	Fort Lauderdale International Airport, Fort Lauderdale, Florida
5272	Miami International Airport, Cargo Facilities Services Inc., Miami, Florida
5295	UPS Miami International Airport
5296	DHL Worldwide Express
5297	Fedex Courier Hub Miami
5401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5402	Alexandria, Virginia
5 SOUTH CENTRAL REGION	
1901	Mobile, Alabama
1902	Gulfport, Mississippi
1903	Pascagoula, Mississippi
1904	Birmingham, Alabama
1905	Apalachicola, Florida
1906	Carrabelle, Florida
1907	Panama City, Florida
1908	Pensacola, Florida
1909	Port St. Joe, Florida
1910	Huntsville, Alabama
1951	Gulfport Border Patrol
1952	Mobile Border Patrol
2001	Morgan City, Louisiana
2002	New Orleans, Louisiana
2003	Little Rock, Arkansas
2004	Baton Rouge, Louisiana
2006	Memphis, Tennessee
2007	Nashville, Tennessee
2008	Chattanooga, Tennessee
2010	Gramercy, Louisiana
2011	Greenville, Mississippi
2015	Vicksburg, Mississippi (Includes Jackson Municipal Airport)
2016	Knoxville, Tennessee
2017	Lake Charles, Louisiana
2018	Shreveport/Bossier City, Louisiana
2082	Tri City User Fee Airport, Tennessee
2083	Arkansas Aeroplex, Tennessee
2084	Rogers Municipal Airport
2095	Fedex Courier, Memphis Tennessee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6 SOUTHWEST REGION	
2101	Port Arthur, Texas
2102	Sabine, Texas
2103	Orange, Texas
2104	Beaumont, Texas
2301	Brownsville, Texas
2302	Del Rio, Texas
2303	Eagle Pass, Texas
2304	Laredo, Texas
2305	Hidalgo, Texas
2307	Rio Grande City, Texas
2309	Progreso, Texas
2310	Roma, Texas
2381	Edinburg International Use Fee Airport, Edinburg, Texas
2402	El Paso, Texas
2403	Presidio, Texas
2404	Fabens, Texas
2406	Columbus, New Mexico
2407	Albuquerque, New Mexico
2408	Santa Teresa, New Mexico
2479	El Paso International Airport, New Mexico
2481	Santa Teresa Airport, New Mexico
2601	Douglas, Arizona
2602	Lukeville, Arizona
2603	Naco, Arizona
2604	Nogales, Arizona
2605	Phoenix, Arizona
2606	Sasabe, Arizona
2608	San Luis, Arizona
2609	Tucson, Arizona
2698	Nogales International Airport, Nogales, Texas
5301	Houston, Texas
5306	Texas City, Texas
5309	Houston Geo. Bush Intercontinental
5310	Galveston, Texas
5311	Freeport, Texas
5312	Corpus Christi, Texas
5313	Ort Lavaca, Texas
5501	Dallas/Ft Worth Airport, Texas

〈부표 1〉의 계속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5502	Amarillo, Texas
5503	Lubbock, Texas
5504	Oklahoma City, Oklahoma
5505	Tulsa, Oklahoma
5506	Austin, Texas
5507	San Antonio, Texas
5578	San Antonio International Airport, San Antonio, Texas
5579	Austin-Bergstrom International Airport
5582	Midland International Airport, Midland, Texas
5583	Fort Worth Alliance Airport
5584	Addison Airport, Addison, Texas
5588	Dallas Love Field (DAL)
7 PACIFIC REGION	
2501	San Diego, California
2502	Andrade, California
2503	Calexico, California
2504	San Ysidro, California
2505	Tecate, California
2506	Otay Mesa, California
2507	Calexico-East, California
2704	Los Angeles, California
2707	Port San Luis Harbor, California
2709	Long Beach, California
2711	El Segundo, California
2712	Ventura, California
2713	Port Hueneme, California
2715	Capitan, California
2719	Morro Bay, California
2720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os Angeles, California
2721	Ontario International Airport, Ontario, California
2722	Las Vegas, Nevada
2775	TNT Express Worldwide, Los Angeles, California
2776	International Bonded Couriers, Los Angeles, California
2779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os Angeles, California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2782	San Bernardino U.F. Airport, San Bernardino, California
2783	Southern California Logistics Airport, Victorville, California
2785	March Inland Airport, Riverside, California
2786	Meadows Field Airport, Bakersfield, California
2801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San Francisco, California
2802	Eureka, California
2803	Fresno, California
2805	Monterey, California
2809	San Francisco, California
2810	Stockton, California
2811	Oakland, California
2812	Richmond, California
2813	Alameda, California
2815	Crockett, California
2827	Selby, California
2828	San Joaquin River, California
2829	San Pablo Bay, California
2830	Carquinez Strait, California
2831	Suisin Bay, California
2833	Reno, Nevada
2834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San Francisco, California
2835	Sacramento International Airport, Sacramento, California
2870	DHL Worldwide Express, San Francisco, California
2901	Astoria, Oregon
2902	Newport, Oregon
2903	Coos Bay, Oregon
2904	Portland, Oregon
2905	Longview, Washington
2907	Boise, Idaho
2908	Vancouver, Washington
2909	Kalama, Washington
2910	Portland International Airport, Portland, Washington
2982	Rogue Valley/Medford Airport, Medford, Oregon

〈부표 1〉의 계속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2991	Federal Express Courier, Portland, Oregon
3001	Seattle, Washington
3002	Tacoma, Washington
3003	Aberdeen, Washington
3004	Blaine, Washington
3005	Bellingham, Washington
3006	Everett, Washington
3007	Port Angeles, Washington
3008	Port Townsend, Washington
3009	Sumas, Washington
3010	Anacortes, Washington
3011	Nighthawk, Washington
3012	Danville, Washington
3013	Ferry, Washington
3014	Friday Harbor, Washington
3015	Boundary, Washington
3016	Laurier, Washington
3017	Point Roberts, Washington
3018	Kenmore Air Harbor, Washington
3019	Oroville, Washington
3020	Frontier, Washington
3021	South Bend-Raymond, Washington
3022	Spokane, Washington
3023	Lynden, Washington
3025	Metaline Falls
3026	Olympia, Washington
3027	Neah Bay, Washington
3029	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Seattle, Washington
3071	U.P.S., Seattle, Washington
3072	Avion Brokers @ SEATAC, Seatac, Washington
3073	DHL Worldwide Express, Seatac, Washington
3074	Airborne Express @SEATAC, Seatac, Washington
3077	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Seatac, Washington
3078	Spokane International Airport, Spokane, Washington

<i>District/Port Codes</i>	
<i>Code</i>	<i>Port</i>
3081	Yakima Air Terminal, Yakima, Washington
3082	Grant County Airport, Moses Lake, Washington
3095	UPS Courier Hub, Seatac, Washington
3101	Juneau, Alaska
3102	Ketchikan, Alaska
3103	Skagway, Alaska
3104	Alcan, Alaska
3105	Wrangell, Alaska
3106	Dalton Cache, Alaska
3107	Valdez, Alaska
3111	Fairbanks, Alaska
3112	Petersburg, Alaska
3115	Sitka, Alaska
3124	Pelican, Alaska
3126	Anchorage, Alaska
3127	Kodiak, Alaska
3181	St Paul Airport, Anchorage, Alaska
3195	Federal Express Courier, Anchorage, Alaska
3196	UPS Courier Hub, Anchorage, Alaska
3201	Honolulu, Hawaii
3202	Hilo, Hawaii
3203	Kahului, Hawaii
3204	Nawiliwili-Port Allen, Hawaii
3205	Honolulu Airport, Honolulu, Hawaii
3206	Kona, Hawaii
3207	Guam Int'l Airport, Tamuning, Guam
3211	Saipan Int'l Airport,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3212	Tinian Int'l Airport,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3213	Rota,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자료: 미국 관세청

〈부표 2〉 미국의 관세 규정 목차

〈19 CFR Chapter I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PART 0 — TRANSFERRED OR DELEGATED AUTHORITY

PART 1 — 3 [Reserved]

PART 4 — VESSELS IN FOREIGN AND DOMESTIC TRADES

PART 7 — CUSTOMS RELATIONS WITH INSULAR POSSESSIONS AND
GUANTANAMO BAY NAVAL STATION

PART 10 — ARTICLES CONDITIONALLY FREE, SUBJECT TO A REDUCED
RATE, ETC.

PART 11 — PACKING AND STAMPING; MARKING

PART 12 — SPECIAL CLASSES OF MERCHANDISE

PART 18 — TRANSPORTATION IN BOND AND MERCHANDISE IN TRANSIT

PART 19 — CUSTOMS WAREHOUSES, CONTAINER STATIONS AND
CONTROL OF MERCHANDISE THEREIN

PART 24 — CUSTOMS FINANCIAL AND ACCOUNTING PROCEDURE

PART 54 — CERTAIN IMPORTATIONS TEMPORARILY FREE OF DUTY

PART 101 — GENERAL PROVISIONS

PART 102 — RULES OF ORIGIN

PART 103 — AVAILABILITY OF INFORMATION

PART 111 — CUSTOMS BROKERS

PART 112 — CARRIERS, CARTMEN, AND LIGHTERMEN

PART 113 — CUSTOMS BONDS

PART 114 — CARNETS

PART 115 — CARGO CONTAINER AND ROAD VEHICLE CERTIFICATION
PURSUANT TO INTERNATIONAL CUSTOMS CONVENTIONS

- PART 118 — CENTRALIZED EXAMINATION STATIONS
- PART 122 — AIR COMMERCE REGULATIONS
- PART 123 — CBP RELATIONS WITH CANADA AND MEXICO
- PART 125 — CARTAGE AND LIGHTERAGE OF MERCHANDISE
- PART 127 — GENERAL ORDER, UNCLAIMED, AND ABANDONED
MERCHANDISE
- PART 128 — EXPRESS CONSIGNMENTS
- PART 132 — QUOTAS
- PART 133 — TRADEMARKS, TRADE NAMES, AND COPYRIGHTS
- PART 134 — COUNTRY OF ORIGIN MARKING
- PART 135 — 140 [Reserved]
- PART 141 — ENTRY OF MERCHANDISE
- PART 142 — ENTRY PROCESS
- PART 143 — SPECIAL ENTRY PROCEDURES
- PART 144 — WAREHOUSE AND REWAREHOUSE ENTRIES AND
WITHDRAWALS
- PART 145 — MAIL IMPORTATIONS
- PART 146 — FOREIGN TRADE ZONES
- PART 147 — TRADE FAIRS
- PART 148 — PERSONAL DECLARATIONS AND EXEMPTIONS
- PART 149 — IMPORTER SECURITY FILING
- PART 151 — EXAMINATION, SAMPLING, AND TESTING OF MERCHANDISE
- PART 152 — CLASSIFICATION AND APPRAISEMENT OF MERCHANDISE
- PART 158 — RELIEF FROM DUTIES ON MERCHANDISE LOST, DAMAGED,
ABANDONED, OR EXPORTED
- PART 159 — LIQUIDATION OF DUTIES
- PART 161 — GENERAL ENFORCEMENT PROVISIONS
- PART 162 — INSPECTION, SEARCH, AND SEIZURE

- PART 163 — RECORDKEEPING
- PART 171 —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 PART 172 — CLAIMS FOR LIQUIDATED DAMAGES; PENALTIES SECURED
BY BONDS
- PART 173 — ADMINISTRATIVE REVIEW IN GENERAL
- PART 174 — PROTESTS
- PART 175 — PETITIONS BY DOMESTIC INTERESTED PARTIES
- PART 176 — PROCEEDINGS IN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PART 177 — ADMINISTRATIVE RULINGS
- PART 178 — APPROVAL OF INFORMATION COLLECTION REQUIREMENTS
- PART 181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PART 191 — DRAWBACK
- PART 192 — EXPORT CONTROL
- PART 193 — 199 [Reserved]

〈USC : Title 19 — CUSTOMS DUTIES〉

- CHAPTER 1 — COLLECTION DISTRICTS, PORTS, AND OFFICERS
(§§1 - 70)
- CHAPTER 1A — FOREIGN TRADE ZONES (§§81a - 81u)
- CHAPTER 2 — THE TARIFF COMMISSION (§§91, 92 - 107)
- CHAPTER 3 — THE TARIFF AND RELATED PROVISIONS (§§121 - 580)
- CHAPTER 4 — TARIFF ACT OF 1930 (§§1202 - 1683g)
- CHAPTER 5 — SMUGGLING (§§1701 - 1711)
- CHAPTER 6 — TRADE FAIR PROGRAM (§§1751 - 1756)
- CHAPTER 7 — TRADE EXPANSION PROGRAM (§§1801 - 1991)
- CHAPTER 8 — AUTOMOTIVE PRODUCTS (§§2001 - 2033)
- CHAPTER 9 —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2051 – 2052)

- CHAPTER 10 — CUSTOMS SERVICE (§§2071 – 2083)
- CHAPTER 11 — IMPORTATION OF PRE-COLUMBIAN MONUMENTAL OR ARCHITECTURAL SCULPTURE OR MURALS (§§2091 – 2095)
- CHAPTER 12 — TRADE ACT OF 1974 (§§2101 – 2497b)
- CHAPTER 13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2501 – 2582)
- CHAPTER 14 —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2601 – 2613)
- CHAPTER 15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2701 – 2707)
- CHAPTER 16 — WINE TRADE (§§2801 – 2806)
- CHAPTER 17 —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2901 – 2906)
- CHAPTER 18 — IMPLEMENTATION OF HARMONIZED TARIFF SCHEDULE (§§3001 – 3012)
- CHAPTER 19 — TELECOMMUNICATIONS TRADE (§§3101 – 3111)
- CHAPTER 20 — ANDean TRADE PREFERENCE (§§3201 – 3206)
- CHAPTER 21 — NORTH AMERICAN FREE TRADE (§§3301 – 3473)
- CHAPTER 22 —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3501 – 3624)
- CHAPTER 23 — EXTENSION OF CERTAIN TRADE BENEFITS TO SUB-SAHARAN AFRICA (§§3701 – 3741)
- CHAPTER 24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3801 – 3813)
- CHAPTER 25 — CLEAN DIAMOND TRADE (§§3901 – 3913)
- CHAPTER 26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4001 – 4112)

〈부표 3〉 해외 CBP 사무소

외국의 U.S. 미국 관세청 사무소 위치와 주소	구분
Brussels, Belgium CBP Attaché U.S.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27 Blvd. Du Regent 1000 Brussels 011-32-2-508-2770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Ottawa, Canada CBP Attaché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P.O. Box 866 station B Ottawa, Ontario K1P 5T1 Tel: 613-688-5496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Hong Kong CBP Representative 11/F., St. John's Building 33 Garden Road, Central Hong Kong Tel: 011-852-2230-5100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가 현재 대기중
Rome, Italy CBP Representative American Embassy Via Veneto 119/A 00187 Rome Tel: 011-39-06-4674-2475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Tokyo, Japan CBP Representative American Embassy 10-5, Akasaka 1-Chome Minato-ku Tokyo 107-8420 Japan Tel: 011-813-3224-5433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Mexico City, Mexico CBP Attaché American Embassy Paseo de la Reforma 305 Colonia Cuauhtemoc Mexico City, D.F., Mexico C.P. 06500 Tel: 011-52-55-5080-2000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부표 3〉의 계속

외국의 U.S. 미국 관세청 사무소 위치와 주소	구분
New Delhi, India CBP Representative 24 Kasturba Gandhi Marg. New Delhi 110021 India Tel: 011-91-11-2331-0080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 Panama City, Panama CBP Representative American Embassy Calle 38 & Avenida Balboa Panama City, Panama Tel: 011-507-225-7562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가 현재 대기중
Singapore CBP Representative American Embassy 27 Napier Road Singapore 258508 Tel: 011-65-476-9020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Pretoria, South Africa ICE Attaché American Embassy 877 Pertorius Arcadia, Pretoria 001 Tel: 011-27-12-342-8062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Bangkok, Thailand CBP Representative Sindhorn Building 130-1332 Wireless Road Tower 2, 12th Floor Bangkok 10330 Tel: 011-66-2-205-5015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가 현재 대기중
London, United Kingdom CBP Representative American Embassy 24/31 Grosvenor Square London, W1A 1AE Tel: 011-44-207-894-0070	2006년 5월 1일 까지 CBP Attach, 대표자, 국제업무 전문가, 기술고문을 파견

〈저자약력〉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김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 4급

주요국의 통관제도

- 미국 편 -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 쇄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50-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

